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문화·예술·체육활동을 중심으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문화·예술·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연구기관 :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문화·예술·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연구진

책임연구원 : 박종운(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공동연구원 :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보조기구센터장)

소준영(부천대학교 교수)

배용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이 훈(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한민규(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 김남진(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기획실장)

최성운(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정책교육팀장)

목 차

1. 실태조사의 개요	1
가. 필요성 및 목적	1
1) 필요성	1
2) 목적	1
나. 기대효과	2
다. 수행방법	2
2. 국내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및 정당한 편의의 기준	5
가. 정당한 편의의 의미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5
2) 국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9
3) 국내외 관련 법률에서의 정당한 사유	12
나. 정당한 편의의 기준	18
1) 미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18
2) 호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33
3) 독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49
4) 장애인권리협약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59
5) 일본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64
6) 한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66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정도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분석	84
가. 조사표 개발 및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84
1) 실태조사의 목표	84
2) 실태조사표 개발	84
3) 초점집단면접 결과	85
4) 실태조사표 종류별 조사항목	91
5)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91

나. 실태조사 결과	95
1) 실태조사 결과 분석방법	95
2) 정당한 편의의 이행결과 분석	96
3)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112
4) 소결	116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117
가. 법·제도 개선방안	117
1) 관련 법률 개선방안	117
2) 제도적 개선방안	140
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기준 제안	148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 문제점 및 기준 제안	148
2) 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안	155
5. 결론	174

참고문헌

부록 1. 실태조사표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적용 범위에 따른 대상시설 목록

부록 3.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정당한 편의 용어 설명

표 목 차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당한 편의 정의 비교	7
<표 2>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예외 사유와 편의증진법의 완화기준비교	16
<표 3> ADA의 공공시설 및 서비스	18
<표 4>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제4조 접근요소와 공간	28
<표 5>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집회공간의 기준	29
<표 6> 미국 연방접근성 표준기준의 집회공간에서의 휠체어 좌석 수	30
<표 7>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도서관 기준	30
<표 8>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체육시설 편의시설 기준	32
<표 9> 호주의 장애차별법 전문	34
<표 10> 호주의 장애차별법의 장애인차별금지 조항	34
<표 11> 호주 표준에서의 집회시설 추가정보 사항	43
<표 12> 호주 표준에서의 도서관 추가정보 사항	45
<표 13> 호주 표준에서의 접근과 아동을 위한 설계	46
<표 14> 호주 표준에서의 접근로에 대한 일반적요건 -신축공사	46
<표 15> 호주 표준에서의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	47
<표 16> 호주 표준에서의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부록)	47
<표 17> 호주 표준에서의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정보 사항	48
<표 18>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에서의 정당한 편의	54
<표 19> 독일 공업표준에서의 공공건물 접근성 기준	58
<표 20>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총칙	67
<표 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67
<표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69
<표 2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육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	71
<표 24> 대상시설별 조사항목	91
<표 25> 대상시설 리스트	93
<표 26> 문예회관의 평가항목	96
<표 27> 문예회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97
<표 28> 문예회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98
<표 29> 도서관의 평가항목	99

<표 30> 도서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100
<표 31> 도서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101
<표 32> 박물관의 평가항목	102
<표 33> 박물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102
<표 34> 박물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104
<표 35> 미술관의 평가항목	105
<표 36> 미술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106
<표 37> 미술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107
<표 38> 체육시설의 평가항목(의무)	108
<표 39> 체육시설의 대상시설별 이행률(의무)	109
<표 40>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의무)	109
<표 41> 체육시설의 평가항목(권장)	110
<표 42> 체육시설의 대상시설별 이행률(권장)	111
<표 43>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권장)	112
<표 44> 대상시설별 이행률 비교	113
<표 45>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 비교	114
<표 46> 문화·예술·체육시설 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	122
<표 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131
<표 48> 의사소통·정보접근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법률개정안	133
<표 49> 연령별 인터넷 여가활동 참여율	133
<표 50> 미국의 장애인지원 프로그램 사례	144
<표 51> 한국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제도개선 방향	145
<표 5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 비교	149
<표 53> 문화·예술·체육시설의 단계적 적용 범위	153
<표 54>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	156
<표 55>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	159
<표 56> 문예회관의 정당한 편의 비교	163
<표 57> 도서관의 정당한 편의 비교	165
<표 58>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당한 편의 비교	167
<표 59>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비교	169
<표 60> 대상 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안	17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흐름도	4
[그림 2] 체육관 사용 관련 ADA 규정 구조	31
[그림 3]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보장 규정	33
[그림 4] 국내 여가 환경의 변화	140

1. 실태조사의 개요

가.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2008. 4. 11.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행 등 7개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제공의 경우 2009. 4. 11. 부터 차별의 각 영역별로 그 제공의무의 주체와 구체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히, 2010년도는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문화·예술 향유권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시행 되는 원년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를 점검하고, 의무이행 기관에 그 구체적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무이행 기관과 장애 당사자에게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2) 목적

- 금년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상황 실태조사
-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정당한 편의 제공 점검지표 연구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0. 4. 11.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분야 적용 대상 사업자(피조사기관) 파악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2. 4. 11.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피조사기관) 파악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분야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 해설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분야 관련 규정의 입법적 불비 상황 파악 및 개선안 제안
-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분야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법제 연구

나. 기대효과

- 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 적용 대상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전달함으로써 실질적 개선 효과 달성
- 고용, 교육, 건축물, 교통시설 등 다른 활동 분야의 정당한 편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현행 법률 및 정책의 개선 등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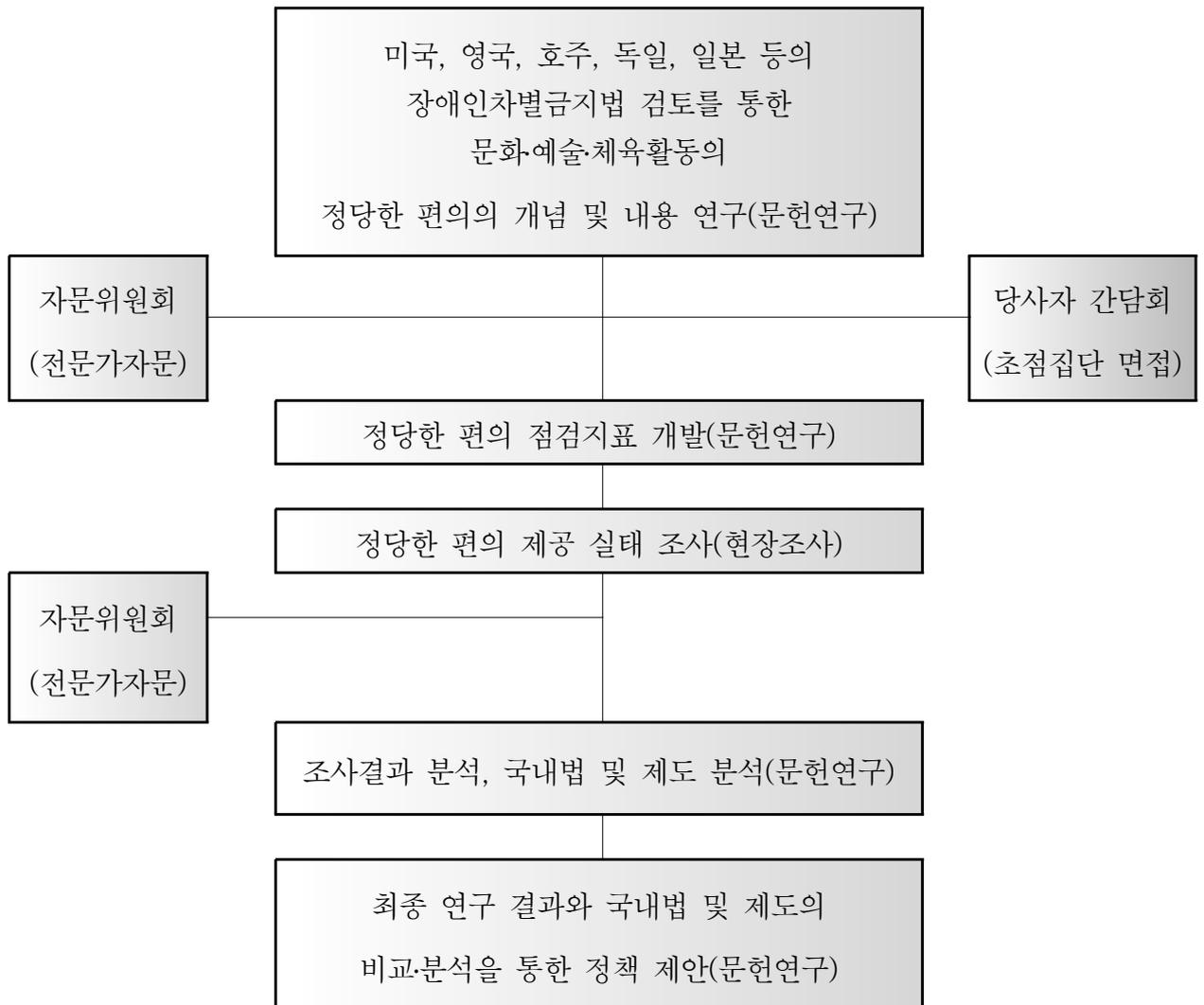
다. 수행방법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정당한 편의 내용 연구(문헌연구)
-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정당한 편의는 문화·예술 활동 영역의 정당한 편의, 체육활동 영역의 정당한 편의, 그리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정당한 편의로 구분하여 연구함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의 영역과 체육활동의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경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외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서 모두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도 별도로 구성하였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안을 만든 법제위원을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정당한 편의 내용 연구 결과에 대한 자문(전

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 및 초점집단 면접을 거쳐 현장 조사를 위한 실태 점검 지표 개발(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초점집단 면접)
- 정당한 편의 이행 상황 실태조사(현장조사)
 - 대상시설 선정 : 대상시설 종류 및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선정
 - 대상시설 섭외 : 선정된 대상시설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일정 협의를 함. 조사를 거부할 경우 비슷한 종류의 대상시설을 재선정하여 진행함
 - 현장조사 : 개발된 지표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 진행함
- 조사결과 및 국내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제안 및 정당한 편의 기준 제안

□ 연구 흐름도



[그림 1] 연구흐름도

2. 국내외 법률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및 정당한 편의의 기준

가. 정당한 편의의 의미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정당한 편의는 영어의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석이며 번역이다. 이 용어는 그동안 '합리적 배려', '합리적 편의' 등으로 번역이 되어 왔다.

가장 가까운 일례로 2008년 12월에 비준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¹⁾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합리적 편의”로 번역하고 있다.²⁾ 반면에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reasonable accommodation”을 “정당한 편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번역을 따르고 있다.³⁾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의 합리적 편의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즉각적인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대부분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적용되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제공되지 않거나 거부된 경우는 차별적 상황으로 간주되고 즉각적인 조치 의무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합리적 편의를 과감하게 정당한 편의로 정의한다. 이것은

1) 장애인에 대한 권리 협약(외교통상부)

제2조 정의

3.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2)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국가인권위원회, p.27

3)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2007, 한국DPI

4)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초안을 만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내의 법제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배려'가 아니라 '편의'이며, '합리적'이 아니라 '정당한'으로 정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정당한 편의'가 배려나 동정에 의해 베풀어지는 편의가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며,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⁵⁾

합리적 배려라는 용어의 이면에는 시설주나 사용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의미가 다분히 함축되어 있으며, 시설주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그것을 배려의 차원에서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계는 '합리적 배려'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정당한 편의'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⁶⁾

정당한 편의는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 번역 내용에 비해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과 인권적 관점을 보다 잘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⁷⁾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를 "reasonable accommodation"이 아닌 "legitimate accommod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편의가 비상식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다'라는 말은 시설주·사용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시설주 등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해야 하며, 장애인은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편의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설주등의 입장이 아닌 차별받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제4조(차별행위)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는 첫째,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고, 둘째,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이다. 첫 번째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과 관한 것이고, 둘째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5) 배용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와 실천과제"(2009)

6) 배용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와 실천과제"(2009)

7) 박종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2007, 국가인권위원회

8)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07, 국가인권위원회.

반면에 2007년 3월에 서명식을 가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정당한 편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는,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도록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의 번역)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정당한 편의'를 상황별 필요한 곳에 과도한 부담 없이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경 및 조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당한 편의'라 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¹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정부대표들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사용주와 시설주의 입장이 보다 고려되어 있다.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이라는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의 의미를 보다 사용주와 시설주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 비교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	제4조(차별행위)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정의 3.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9)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한국 DPI

10)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200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의를 바탕으로 정당한 편의를 규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정당한 편의는 시설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정당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정도 및 유형 그리고 특성을 고려해서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이다.

다섯째, 정당한 편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간접 차별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평등'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위한 조치로 간접 차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있다.¹²⁾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경쟁할 수 없는 현실에 기초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보고, 정당한 편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³⁾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시기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유형, 정도,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어야 한다.

11) 배용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와 실천과제"(2009)

1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09.

1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정당한 편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지침에는 위의 정의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다.
- 정당한 편의는 해당 편의제공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직무 수행 등과 무관하게 장애인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¹⁴⁾

2) 국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가)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국의 경우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에서는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s)에 대해 고용과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2008년도에 개정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에서도 역시 고용 부분에만 정당한 편의를 정의하고 있다.

미국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 USDOJ)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도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과 유사하다. 미국 법무부는 정당한 편의를 고용과 관계하여 정의하고 있다.¹⁵⁾

반면에 법무부의 공정한 주택법(The Fair Housing Act)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고용이 아닌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⁶⁾

□ 정당한 편의는 공공 사용 공간 및 일상공간을 포함하여 주거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칙, 정책, 실천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변경, 예외 또는 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칙, 정책, 실천 및 서비스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효력을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기에,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을 대우하는 것은 장애인의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정한 주택법(The Fair Housing Act)은 장애인이 주거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 편의제공이 필요할 때, 규칙, 정책, 실천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14)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008.

15) <http://www.ewin.com/articles/rsnabl.htm>

16) <http://www.hud.gov/offices/fheo/library/hud DOJstatement.pdf>

17) 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 change, exception, or adjustment to a rule, policy, practice, or service that may be necessary f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to have an equal opportunity to use and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의 고용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가 업무나 직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었다면, 「공정한 주택법」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주거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규칙, 정책, 실천 및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편의는 단순히 물리적인 조치나 인적 서비스가 아닌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조정과 변경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률에서의 정당한 편의

영국의 경우 1995년도에 제정된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에서 고용주와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¹⁸⁾ 영국의 「장애차별법」이 기대하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조정을 고용주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차별법」은 시설이나 서비스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편의제공에 있어서 각각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서비스 제공자마다 가장 현실적인 제공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적절한 조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회원가입과 고객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큰 문자 인쇄물 사용
- 카세트나 MP3를 통한 음성녹음 메뉴 제공 또는 큰 활자 제공
- 큰 버튼이 부착된 전화기 제공
- 화재경보를 들을 수 없는 고객을 위한 휴대용 진동 알람기 제공
- 낮은 안내데스크가 없을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낮은 접수대 제공
- 장애인식훈련과정을 통한 직원 교육

영국은 2006년도에 제정된 「평등법」(Equality Act)을 2010년도에 개정하였다. 「장애차별법」은 이 평등법에 흡수되었으며, 평등법은 연령, 장애, 성적 지향, 혼인, 인종, 종교나 신념, 성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enjoy a dwelling, including public and common use spaces. Since rules, policies, practices, and services may have a different effect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on other persons, trea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ly the same as others will sometimes deny them an equal opportunity to use and enjoy a dwelling. The Act makes it unlawful to refuse to make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rules, policies, practices, or services when such accommodations may be necessary to affo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 equal opportunity to use and enjoy a dwelling.

18)

<http://www.tourismnortheast.co.uk/site/business-toolkit/raising-quality/access-in-tourism/understand-the-dda>

이 평등법에서는 '정당한 편의' 대신에 '적절한 조정'(reasonable adjustme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 EU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지침

EU지침 제5조(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장애인과 관련된 평등대우의 원칙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고용에 접근·참여·승진하거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안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만 이러한 조치가 사용자에게 비례적이지 않은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담은 해당 가맹국가의 장애정책에 관한 제도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조치에 의해 충분히 구제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적인 것이 된다”¹⁹⁾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지침은 고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체육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참조할 수는 있으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에 대해서는 참조하기 어렵다.

라) 일본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일본의 경우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서 정당한 편의를 합리적 배려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²⁰⁾

□ 제1편 총칙

제2장 정의

3. 합리적 배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별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 특성 등을 고려한 필요하고 적절한 설비, 도구, 서비스 등의 창출, 변경 및 조정이며, 특정한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²¹⁾

19) 장애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보건복지부, 2009), p.49

20) <http://www.dpi-japan.org/problem/kinshi.html>

21) 障害をもつ人が、障害をもたない人と平等に人権及び基本的自由を享有し又は行使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障害をもつ人の性別や障害の種類や程度などの特性等を考慮した必要かつ適切な設備・道具・サービス

일본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안」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의 성별,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일치하며, 변경과 조정이 포함된 점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별히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협약의 영향을 깊게 받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권리 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불균형이나 과도한 부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마) 호주와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호주의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 BGG)에는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3) 국내의 관련 법률에서의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금지)에 의한 차별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한 편의의 제공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차별의 예외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의 의무의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타의에 의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제공자의 의지와 무관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편의 의무를 면해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되는 가치²²⁾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남용될 경우 실질적인 정당한 편의 제공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최소화될수록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는 최대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의 경우에는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균형하거나 부당한 부담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 내에서 그 기

等における創出、変更及び調整であって、特定の場合に必要とされるものである。

22) 문화재나 예술품의 보존과 같은 가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보다 우선되는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준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 기업이나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자원, 편의시설의 특성 및 비용 등 사업의 운영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²³⁾ 따라서 불균형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편의제공자에게 주어질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점진적인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²⁴⁾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안」 역시 불균형 또는 과중한 부담임을 입증할 경우 합리적 배려를 하지 않더라도 차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²⁵⁾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은 과도한 부담을 네 가지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①필요한 편의제공의 종류와 비용, ②편의제공과 관련된 시설물의 재정 상태, 그 시설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원의 숫자, 비용 및 재원에 미치는 효과, 그러한 편의가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 ③사업체의 전반적 자원, 사업 규모, 시설의 수·유형·위치, ④직원의 구조와 기능을 포함한 사업운영 형태, 해당 사업체 시설의 지리적 위치 또는 행정·재정적 관계가 그것이다.²⁶⁾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다섯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①해당조치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효과를 방지하는 정도, ②해당 조치의 실행가능성, ③해당 조치를 하는 데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및 기타 비용, 그에 따른 사업 활동의 저해 정도, ④사용자의 재정 및 기타 자원의 규모, ⑤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금전적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이용 가능성 등이다.²⁷⁾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정당한 편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하더라도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는 상황적 조건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를 제

23)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4)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1편 총칙

제3장 차별금지

3. 차별의 추정

③합리적인 배려가 부족할 경우 불균형 또는 과중한 부담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26) 장애인고용차별예방가이드, 2008, 한국고용촉진공단.

27) 장애인고용차별예방가이드, 2008, 한국고용촉진공단.

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또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상식적이라 함은 그 사회의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를 의미하나, 다만,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사고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동반되며, ②객관적이라 함은 논리적이며, 증명 가능한 수단을 동반해야 함을 의미하고, ③합리적이라 함은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는 자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 모두의 권리가 동등한 수준에서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조장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²⁸⁾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다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의 이유로 차선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최선의 편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정도·성별·특성에 맞게 제공하되,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³⁰⁾

첫째,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이다. 지체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둘째, 편의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되는 경우란 사용자 등 편의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편의의 제공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대상시설 등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대상 시설이 노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기존의 대상시설을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하기 전에는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28) 차별판단지침, 2008, 국가인권위원회.

29) 차별판단지침, 2008, 국가인권위원회.

3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09.

넷째, 사용주와 시설주가 다를 경우 시설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용주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사용주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가 없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하면, 시설주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다섯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한 경우이다.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건물의 경우, 여기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여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여섯째,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해당 편의가 제공되더라도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 완화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을 완화하고 있다.

□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7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적용 완화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예외사유와 편의증진법의 완화 기준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예외 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완화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 편의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되는 경우 ● <u>대상시설 등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u> ● 사용주와 시설주가 다를 경우 시설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용주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u>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한 경우</u> ●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u> ●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 적용 완화가 적절한 경우 ● <u>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u> ●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가운데 '구조 변경 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완화 기준 가운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장애 유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와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없는 경우'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무관한 조항이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사용주와 시설주가 다른 경우'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편의시설이 설치만이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까지

요구하기에 제공자가 자칫 과도한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지침』(2008)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³¹⁾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를 완화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적절한 편의가 없어서 제공을 못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며, 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둘 다 법에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로서 작용이 되며, 후자와 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이 마련되는 즉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주와 사용주가 다를 경우 시설주와 사용주 모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용주에게만 의무를 부여할 경우 시설주의 거부로 인해 편의제공의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부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법원이나 차별시정기관에서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실제로 정당한 편의를 제한할 요소가 많다고 하겠다.

31)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008.

나. 정당한 편의의 기준

1) 미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의 정당한 편의 기준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중 정당한 편의에 관계있는 조항은 제1장(고용)의 제101조 정의, 102조(차별)과 제3장의 시설 단체가 제공하는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101조(정의), 제302조(공공편의시설에 의한 차별금지), 제303조(공공편의시설과 상업시설물의 신축과 변경)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와 관계있는 제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제3장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표 3> ADA의 공공시설 및 서비스

조 항	내 용
101조 정의	(7) 공공편의시설 — 다음의 민간 시설들은 그 운영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본 절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시설로 간주된다. (C) 영화관, 연극장, 연주회장, 경기장 기타 또는 오락시설 (H) 박물관, 도서관, 화랑 기타 공중 전시 또는 수집시설 (L) 체육관, 온천장, 볼링장, 골프장 기타 체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제 302조 공공편의시설에 의한 차별금지	(a) 원칙 — 누구든지 공공시설 장소 내의 물건,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편의제공을 전면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여 동 시설장소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운영자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B) 완전한 배치 — 물건,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편의제공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적절하며, 가장 완전하게 배치하여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 항	내 용
<p>제 302조 공공편의시설에 의한 차별금지</p>	<p>(2) 특정적 금지</p> <p>(A) 차별 — (a)항의 목적을 위하여 차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p> <p>(i)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집단을 물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또는 시설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향유로부터 배제하거나 배재할 우려가 있는 자격 기준을 과하거나 적용하는 것. 다만 그러한 기준이 물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또는 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ii) 장애인에게 물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또는 편의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정책, 실행 또는 절차의 상당한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을 하지 않는 것. 다만, 그 주체가 그러한 변경이 그 물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또는 편의시설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iii) 보조물이나 보조서비스의 결여로 인하여 장애인이 서비스로부터 제외 또는 거부되거나 격리, 기타 다른 방법으로 비장애인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다만,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 특전, 이익 또는 시설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을 그 주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iv) 건축 상의 장애물, 기존 시설에 있어서 구조적인 성질을 갖는 통신장애물, 인원수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존 운송수단과 철도 승객 차량에 있어서의 장벽 등이 즉시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것</p> <p>(v) (iv)항에 의한 장벽을 즉시 제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대체방법으로 그 물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또는 시설을 사용가능토록 하지 않는 것.</p>

조 항	내 용
제 303조 공공편의시설과 상업시설물의 신축과 변경	<p>(a) 적용요건 — (b)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공시설 및 상업적 시설물에 적용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 302조 (a) 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은 차례로 포함된다.</p> <p>(1) 이 법 제정일로부터 30개월 이후에 최초의 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계 및 건축을 장애인이 즉시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다만 본 제Ⅲ부의 규정의 위탁으로 제시 또는 구체화된 표준에 맞추어 본 (a)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구조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임을 어떤 주체가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2) 어떤 설립체를 위하여 또는 그 설립체의 사용을 위하여 어떤 시설 또는 그 일부가 사용 가능성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변경된 부분을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는 장애인이 즉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 주요기능을 포함하는 그 시설구역의 사용 가능성이나 접근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변경을 시작함에 있어서 변경된 구역 내에서 제공되는 목욕실, 전화, 음료수에 이르는 길의 변경이 비용과 범위(법무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의한)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변경에 대하여 균형상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 그 주체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그 변경된 구역과 그 변경된 구역 내에서 제공되는 목욕실, 전화, 음료수에 이르는 길이 장애인이 즉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p> <p>(b) 승강기 — (a)항의 규정은 3층 이하의 시설물이나 매층당 면적이 3,000평방피트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승강기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건물이 쇼핑센터, 쇼핑몰 또는 보건보호를 제공하는 전문 사무소인 경우와 법무장관이 특정범주의 시설물은 그 시설의 사용을 근거로 하여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강력한 인권법으로서 미국의 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미국사회를 만든 목적과 의도로 제정된 법률이다. (김정현, 2002, p.12)

제 3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가 제공 또는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다. 모든 공공시설의 신축, 개축에 대한 장애인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설의 장애물을 쉽게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해야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체적인 제공방법으로 서비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1조(정의)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중 문화·예술·체육시설은 영화관, 극장, 연주회장, 경기장 또는 오락시설, 박물관, 도서관, 화랑 또는 기타 공중 전시 및 수집시설과 체육관, 온천장, 볼링장, 골프장 기타 체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시설 장소내의 물품, 서비스, 시설, 편의를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동 시설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운영자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의 내용에는 참여의 거절, 불평등한 이익 향유, 분리된 편의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용이하게 제거 가능한 기존 시설의 건축상 또는 통신상의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

(1) 문화·예술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미국의 장애인 정책의 특징으로는 크게 '지방분권적 특성', '민간운영기관에 의한 서비스 전달',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 강조' 등으로 나뉘며, 이는 미국 사회보장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보장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접근 평등', '기회평등', '편의증진' 원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특유의 능력주의와 자립 자조 정신, 더 나아가서는 복지 정책에 있어 '작은 정부' 지향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사회의 주된 이슈는 모든 사회 전반적 활동에서의 '차별금지'이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다양한 관점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991년에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민간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케네디센터(John F. Kennedy Center)나 스미스소니언 뮤지엄(Smithsonian Museums)등과 같은 국립 문화·예술시설들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사회적 불평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이 전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시설에서는 여전히 예산이나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때, 그렇게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³²⁾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 ADA)은 특별히 문화·예술활동을 특정지어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동과 편의제공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명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은 제2조 사실인정과 목적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사실인정과 목적

(a) 사실인정

의회는 다음의 것들을 인정한다.

- (1) 사회의 모든 영역에 완전한 참여라는 인간의 권리는 장애인에게도 동일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차별로 인해 완전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장애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장애가 있었던 사람 역시 이런 차별을 받는다.
- (2) 역사적으로, 사회는 장애인을 도외시 하거나 멀리하는 성향이 있으며, 약간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그와 같은 유형의 차별은 계속하여 심각하고 막중하게 사회문제화 되었다.
-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고용, 주택, 공공시설, 교육, 교통망, 통신, 레크리에이션, 수용 시설, 건강서비스, 투표, 공공서비스의 이용의 중대한 분야에 지속하고 있다.
- (4) 인종, 피부색, 성, 출신국가, 종교, 연령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과는 다르게, 신체 장애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은 차별의 구제를 하는 법적 의뢰가 없었다.
- (5) 장애인은 노골적이고도 의도적 배제, 건축물, 교통망, 통신에서 장애물로 인한 차별, 과보호의 규칙과 정책, 기존에 있던 시설들과 관습의 수정실패, 배타적인 자격요건, 격리,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수혜혜택, 직업 등에서 대체로 열세한 기회를 갖고 있

32) 이 내용은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2005)”의 내용 중 pp105-107의 내용을 요약하여 발췌한 글임.

는 등 계속하여 여러 가지 차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 (6) 인구센서스, 전국여론조사 등 기타 연구에서, 장애인이 한 집단에서 이 사회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극심한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7)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적합한 목표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기회평등, 완전참여, 자립생활, 경제자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 (8)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차별과 편견의 계속적 존재는 장애인이 공평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권리와 우리의 자유사회가 합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기회모색 권리를 거절하는 것이며, 의존과 비생산성을 낳게 하는 결과, 미국은 몇 십억 달러를 없애 버리는 상황에 직면했었다.

(b) 목 적

이 법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1) 장애인에 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확실하고 종합적인 국가의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다.
- (2) 장애인의 차별에 대응하는 명확하고 강도 있고 지속성 있는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 (3) 이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에서 확립된 기준을 실시한 뒤에 장애인을 대신해 미국연방정부가 주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4) 장애인이 매일 경험하는 차별의 주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의 수정 제14조를 시행토록 하며, 상행위를 규제하는 권한 등 의회의 권한에 호소한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은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기회평등, 완전참여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장애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불합리한 제약에 대한 차별철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내용은 공공시설, 레크리에이션,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징이 국가 면적이 넓음으로 인한 이동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동에 대한 자세한 지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국가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법조문의 목차 중 제2장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장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부제(A)-차별에 대한 금지와 그 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제201조 정의

제202조 차별

제203조 시행

제204조 규칙

제205조 발효일자

부제(B)-공공사업체가 제공하는 공공교통기관에서 차별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

제1부

항공기 또는 특정한 철도운영외의 공공교통

제221조 정의

제222조 고정된 노선체제를 운영하는 공공사업체

제223조 고정된 노선서비스를 보충해 주는 병설교통기구

제224조 수요에 상응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공공사업체

제225조 리프트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 곳에서의 임시적인 구제

제226조 새로운 시설

제227조 기존시설의 개수(改修)

제228조 기존시설의 공공교통

제229조 규칙

제230조 출입로에 대한 잠정적 필요조건

제231조 발효일자

제2부

도시간 철도와 출퇴근용 철도에 의한 공공교통

제241조 정의

제242조 도시간 철도와 출퇴근용 철도에서 차별로 여겨지는 사항

제243조 출입로 기준에 대한 기준과의 일치

제244조 규칙

제245조 출입로에 대한 임시요구사항

제246조 발효일자

제3장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제301조 정의

제302조 공공편의시설에서 차별금지

제303조 공공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축 및 개수

제304조 민간사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교통 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

제305조 연구조사

제305조 규칙

제307조 개별적 클럽과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

제308조 시행

제309조 시험과 연수

제310조 발효일자

이상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 이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에 대하여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에서는 이동과 시설 접근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체육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중 체육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은 이 법 제2장(공공서비스)의 제202조(차별), 제3장(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제301조(정의), 제302조(공공편의시설에 의한 차별금지)라 할 수 있다.

□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1990)

제2장 공공서비스

제202조 차별

이장의 규정에 따라 자질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 그 장애를 이유로 해서 공공사업체의 서비스 사업계획 또는 활동에 대해 참가 혹은 혜택수여를 부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어떤 공동사업체도 자질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서비스

제301조 정의

(7) 공공시설: 다음의 민간시설은 그 운영이 상업적으로 향하여지더라도 본 절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한다.

(C) 영화관, 연극장, 연주회장, 경기장 기타 또는 연예장소

(L) 체육관, 온천장, 볼링장, 골프장 기타 운동 또는 레크리에이션 장소

제302조 공공시설에서의 차별금지

(a) 원칙: 누구든지 공공시설 장소 내의 물건,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편의제공을 전면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여 동 시설 장소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운영자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은 장애인들이 체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방법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³³⁾ 이러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2장이 공공서비스 분야로서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자질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 그 장애를 이유로 해서 공공사업체의 서비스 사업계획 또는 활동에 대해 참가 혹은 혜택수여를 부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고 어떤 공공사업체도 자질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트레이닝 센터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에는 그들이 탈 수 있는 이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3) Karen P. Depauw & Susan J. Gavron, Disability Sport, pp16, 2004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제3장에서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시설 포함)과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공공시설 장소내의 물건,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편의제공을 전면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여 동 시설 장소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운영자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장애인들이 학교나 대학 체육관, 지역의 공원, 경기장,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림픽 훈련센터인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전국에 있는 다른 훈련시설과 경기시설도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에 따라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스포츠 대회 운영자들은 부분적으로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식당, 관람석, 개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은 건축물을 신·개축하는데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기본적 평등권을 규정했다면,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은 그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행적 법률이다. 특히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 ADAAG)를 통해 건물과 시설의 내·외부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명기하여 신·개축되는 모든 건물의 장애인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³⁴⁾

나)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ADAAG)의 정당한 편의 기준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빌딩과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기본사항은 제4조 접근요소와 공간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본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특별요구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조 접근요소와 공간 : 범위와 기술요구 (ACCESSIBLE ELEMENTS AND SPACES: SCOPE AND TECHNICAL REQUIREMENTS)는 각 건물의 상태에 따른 최소 요구와

34) 대한장애인체육회, 실내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이용 가능환경 평가 및 모델개발, 2008, pp326-327

그에 따라 최소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건물의 기능 및 상태에 따른 4.1최소한 요구는 6개로 구분되며 4.1.1 적용, 4.1.2 접근가능한 대지와 외부시설:신축, 4.1.3 접근가능한 건물:신축, 4.1.5 접근가능한 건물:추가, 4.1.6 접근가능한 건물:개조, 4.1.7 접근가능한 건물 : 역사보존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시설별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최소한 기준항목은 4.2 공간확보에서부터 4.37 벤치까지이며 총 36 항목으로 아래와 같다.

<표 4>ADA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4조 접근요소와 공간

공간확보와 도달범위	접근로	돌출물
바닥표면과 재질	주차장과 보행준	연석경사로
경사로	계단	승강기
리프트	창문	문
출입문	식수대	대변기
화장실칸막이	소변기	세면대와 거울
욕조	샤워칸막이	화장실
욕실과 샤워실	싱크	수납공간
조작기계	손잡이	경보
감지기	안내판	전화기
좌석과 테이블	집회장소	자동인출기
탈의실 및 라커룸	사우나실	벤치

특별요구사항은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의료시설, 비즈니스·상업과 시민, 도서관, 접근 가능한 숙박, 교통시설, 사법·입법시설, 유치·교정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구분되어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접근관련 기준은 국내와 다르게 각 건물의 건축상태와 환경에 따라 구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준항목은 국내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맨 앞장에는 장애인의 공간확보와 도달범위 등을 제시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준항목으로만 제시하기 어려운 시설들은 별도로 특별 요구사항에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화·예술·체육시설과 관련된 법은 제4조의 접근 요소와 공간의 36개의 기준항목이며 이에 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시설의 특별요구사항이 포함된다.

(1) 문화·예술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문화·예술시설의 종류는 공연장·영화관, 전시장·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 공연장·영화관과 전시장·박물관은 기준항목 36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만 별도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공연장·영화관

법의 기준은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 Accessibility Guidelines : ADAAG)에 특별하게 분류되기 보다는 제4조의 접근 요소와 공간 36개의 기준 항목을 준수하게 되어있다.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 Accessibility Guidelines : ADAAG)에서는 관람장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기준항목의 하나인 4.33 집회장소(Assembly Area)에서 관람장에 대한 그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장벽법 접근성 가이드라인'(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 ABAAG)에서도 관람장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 Accessibility Guidelines : ADAAG) 제8장 802지침 특별한 실, 공간과 요소에서 다루고 있다.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에는 휠체어 좌석 수, 휠체어공간의 크기, 휠체어 배치방식, 바닥, 공연공간(무대)의 접근, 청취시스템의 위치와 타입의 세부항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과 '건축장벽법 접근성 가이드라인'(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 ABAAG)은 휠체어 공간과 관람시선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5>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집회공간 기준

휠체어 좌석 수	휠체어공간의 크기	휠체어 배치방식
바닥	공연공간(무대)의 접근	청취시스템의 위치와 타입

또한 '연방접근성표준기준'(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에는 집회 공간에 대해 정의를 "공중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종교적, 오락적,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이거나 여흥적인 목적으로, 혹은 음식과 음료의 소비를 위해 모인 오십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 있다. 그 종류에는 공원, 경기장, 미술관, 관람석, 볼링장, 교회, 법정, 드라이브인 극장, 테니스장, 도서관, 식당, 선술집, 방송국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어떤 특별한 공연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집회공간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기준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회공간에 총 좌석의 수 4개 이상부터는 휠체어 장애인 접근 가능한 좌석수가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300개 이상부터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휠체어 공간을 비어두도록 되어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좌석의 배치는 입장료의 차이와 휠체어 등의 관람 시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통로 상에 위치하도록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청취시스템의 기능이 고정된 관람석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무대나 연주자로부터 반경 15m(5ft) 내에 위치하도록 되어있다. 15m 내에 관람석이 위치하여야 배우의 얼굴 표정과 다른 사소한 몸동작과 수화 통역사의 수화를 쉽게 볼 수 있다.

<표 6> 미국 연방접근성 표준기준의 집회공간에서의 휠체어 좌석 수

전체 좌석 수	휠체어 좌석 수
4-24	1
26-50	2
51-300	4
301-500	6
500 초과	100 좌석수 당 1좌석 추가

(나) 도서관

도서관은 제4조의 접근요소와 공간의 36개 항목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실 제8조를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독서실 및 열람실, 대출장소, 카드 목록과 잡지진열, 서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 도서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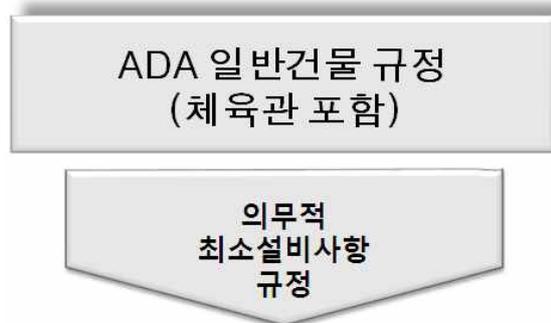
독서실 및 열람실 서가	대출장소	카드목록과 잡지진열
-----------------	------	------------

세부적으로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된 좌석과 테이블 및 개인열람실 중 5%는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대출장소는 시민시설의 접수대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서고는 4.3의 접근로와 서고의 간격인 1065mm(42in)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체육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총론과 개념 정의, 설비 사항별 규정, 시설유형별 설비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 체육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15조 여가시설 (Recreation Facility)내에 규정되어 있다. 단 여가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수영장, 놀이터, 낚시시설, 선착장, 골프장, 볼링장, 사격장, 체력단련장에 한하여 제시되어 있으나, 일반 체육관의 경우 기타 건물에 준하여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설비사항별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공간 확보	접근로	바닥표면과 재질	주차장	보행램프	계단 및 통로	승강기
리프트	창문	출입문	현관	식수대	탈의실	화장실
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대	창고	핸드레일	경보음
감지기	안내판	전화	테이블	회의실	사우나실	좌석, 작업대

[그림 2] 체육관 사용 관련 ADA법 규정 구조

체육관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기준은 체육관 내에서의 구체적 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지만 체육관 역시 모든 건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시설 내의 이동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체육관 내부에서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활동은 그것과 관련된 실제 운영 프로그램, 기구, 지도자에 관련된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반면,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한도는 건물 내외에서의 접근성과 이동성, 편의시설의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반 체육관외에 특별한 접근성과 이동성에 대한 별도의 추가 규정이 필요한 체육시설의 경우, 제15조 여가시설 조항에서 따로 제시하고 있다. 여가시설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수영장, 볼링장, 낚시시설, 선착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사격장 등의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제4조에서 규정된 최소 편의시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접근 및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가시설의 설치 기준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축하거나 개조하는 시설은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 4조의 36가지의 기준사항과 특별요구사항의 규칙(15조 여가시설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다.

15조 여가시설은 총 8개로 구분되며 그중 15.1 놀이기구(amusement ride)와 15.6 놀이터(Play Area)를 제외한 체육시설은 6개이다. 체육시설은 15.2 보트시설(Boating Facilities), 15.3 낚시 부두 및 선착장(Fishing Pier and Platforms), 15.4 골프(Golf), 15.5 미니골프(Miniature Golf), 15.7 운동장비와 기계, 볼링레인, 사격시설 (Exercise Equipment and Machine, Bowling Lanes and Shooting Facilities)과 15.8 수영장, 걷는 수영장, 스파(Swimming Pools, Wading Pools, and Spas)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체육시설 편의시설 기준

구 분	기본항목
보트시설	접근로, 보트(최소수), 다양한 타입의 배를 분산, 부두와 탑승로
낚시 부두 및 선착장	접근, 난간, 지상공간, 동작공간
골프	접근로-골프코스, 접근로-골프연습장, 공치는 바닥, 골프연습장 공치는 지면, 그늘집, 골프카트로
미니골프	접근가능한 홀, 접근가능한 경로
운동장비와 기계, 볼링레인, 사격시설	운동장비와 기계, 볼링레인, 사격시설
수영장, 걷는 수영장, 스파	수영장, 걷는풀, 스파, 이동형수중리프트, 입수경사로, 이동벽, 입수계단



[그림 3]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보장 규정

미국의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은 법적 세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 추가적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은 당연한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예; 같은 도시 내, 팀)에 참여하는 방법 또한 ADA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초점은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능력에 따라 개인을 통합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체육행사와 체육대회에 더욱 광범위하게 통합과 참여를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과정'보다 더욱 상처 받기 쉬운 일이다.³⁵⁾

2) 호주의 정당한 편의 기준

가) 호주 「장애차별법」에서의 정당한 편의 기준

호주의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 DDA)중 정당한 편의와 밀접한 관련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은 이 법 제 3조(목적), 제 4조(정의), 제 5조 (장애인 차별), 제 23조 (구내(premises) 이용 및 접근), 제 24조 (재화, 용역 및 시설)이라 할 수 있다.

35) Karen P. Depauw & Susan J. Gavron, Disability Sport, pp17, 2004

□ 제1장 전문

<표 9> 호주의 장애차별법 전문

조 항	내 용
제3조 (목적)	본 법은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a) 다음 각 목의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i) 직장, 수용 시설, 교육, 구내 접근, 단체, 스포츠 (ii) 재화, 용역, 시설, 토지의 제공
제5조 (장애인차별)	(1) 본 법에서, 어떤 사람(이하 “차별행위자(discriminator)”라 한다)이, 동일 환경에서 또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하 “피해자 (aggrieved person)”라 한다)의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2) 제 (1)항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환경이라 함은 장애인이 다른 편의 (accommodation)이나 용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장 장애인의 차별금지

<표 10> 호주의 장애차별법 장애인차별금지 조항

조 항	내 용
제 1 절 직장에서의 차별	제15조 고용 차별 (2) 고용주, 고용주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자의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승진, 이직, 훈련 기회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혜택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 (4) 제(1)항 제(b)호나 제(2)항 제 (c)호는, 특별한 고용에 있어서 과거의 훈련과 자질, 경험을 고려하여 볼 때, 또는 이미 고용주에 의해 고용 되었다면, 근로자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로 인해 다음 각 호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a) 특별한 고용 고유의 조건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그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용역이나 시설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고용주에게 부당한 고충을 주는 경우.
	제17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1) 고용주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그 계약직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c) 고용주와 계약으로 체결된 업무와 관련된 혜택에 계약직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

조 항		내 용
제2절 기타 영역에서 차별	제 23조 (구내 (premises) 이용 및 접근)	<p>(1)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 일반 대중이 출입하거나 이용(유·무료를 불문한다) 할 수 있는 구내에의 접근 또는 이용을 거절</p> <p>(b) 그러한 구내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정한 조건</p> <p>(c) 그러한 구내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p> <p>(d) 일반 대중이 이용(유·무료를 불문한다)할 수 있는 구내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p> <p>(e)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정한 조건</p> <p>(f) 구내에서 퇴거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p> <p>(2) 본 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구내 접근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할 수 있다:</p> <p>(a) 구내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거나 건축된 경우 및</p> <p>(b)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구내를 변경하는 것이 그 접근을 제공해야 할 사람에게 부당한 고충을 주는 경우.</p>
	제24조 (재화 구역 및 시설)	<p>1) 재화나 용역을 제공(유·무료를 불문한다)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나 시설이용의 거절</p> <p>(b)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나 시설 이용의 허용을 위해 정한 조건</p> <p>(c)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나 시설 이용의 허용을 위해 정한 방법</p> <p>(2) 본 조항은 장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고충을 주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있다.</p>

호주의 「장애차별법」(DDA)은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제정 이후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법률로써, 건물의 접근, 교육, 고용,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장애차별법」(DDA)은 7개 분야로 분류되며 그중 상당한 편의와 관련된 항목은 제1장 전문과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이다.

제1장은 전문으로 법에서 해석되는 용어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장애차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조(목적)은 차별금지에 대한 대상이 2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직장, 수용시설, 교육, 구내(premises)³⁶⁾ 접근, 단체, 스포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재화, 용역, 시설, 토지의 차별을 금지하여 건물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제5조(장애인 차별)는 모든 사람이 동일 환경에서 또는 유사한 환경³⁷⁾에서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덜 호의적으로 대우 받는 것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간접차별과 더불어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 보조자, 그리고 보조건 등의 사용방해 혹은 금지도 포함된다.

제2장에서는 각 영역별 장애인 차별금지하고 있는데, 고용, 물품·서비스·시설영역, 숙박시설, 그 외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제하고 있다.

제2절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중 제23조 건물과 주변 환경의 이용 및 접근에서는 장애인이나 동반자가 비장애인과 같은 접근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그 부지를 떠나도록 요구하거나 편의시설 이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과 주변환경 자체가 장애인의 접근을 불가할 정도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와 장애인 접근을 위해 건물을 개조할 때 고층이 초래되는 경우 법에서 언급한 차별을 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4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나 동반자의 장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의 운동은 장애인이나 동반자의 장애로 인하여 운동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다.

(1) 문화·예술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호주의 「장애차별법」(DDA)은 앞서 살펴본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이 미국의 넓은 국토로

36) 구내(premises)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a) 구조물, 건물, 항공기, 차량, 선박

(b) 장소(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c) 구내의 부분(제(a)호와 제(b)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구내를 포함한다).

37) 장애인이 다른 편의(accommodation)나 용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해 이동에 대한 세밀한 법 규정을 제정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넓은 호주의 국토에 비하여 법 규정에 이동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장애인차별 넘어 희롱의 범위도 장애인차별에 포함되어 있어 좀 더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선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⁸⁾

□ 제3조 목적

본 법은 다음 각호를 목적으로 한다;

(a) 다음 각 목의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i) 직장, 수용시설, 교육, 구내 접근, 단체, 운동;

(ii) 재화, 용역, 시설, 토지의 제공;

(iii) 기존의 법;

(iv) 연방법과 프로그램의 운영;

(b) 법 앞에서 지역공동체 주민들과 동등한 장애인의 권리보장

(c) 지역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원칙의 수립

위의 목적에서 보면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i) 직장, 수용시설, 교육, 구내 접근, 단체, 운동; (ii) 재화, 용역, 시설, 토지의 제공;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내 접근, 용역이라는 두 측면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항목에 대하여 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구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구조물, 건물, 항공기, 차량, 선박;

(b) 장소(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c) 구내의 부분 제(a)호와 제(b)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구내를 포함한다).

38) 외국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pp311-312.

□ 용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a) 금융, 보험, 퇴직연금과 보조금, 대부, 신용 대부나 자금의 제공과 관련된 용역;
- (b) 오락, 레크리에이션, 기분 전환과 관련된 용역;
- (c) 운송이나 여행과 관련된 용역;
- (d) 전기 통신과 관련된 용역;
- (e) 전문직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
- (f) 정부, 정부 기관, 지방 정부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

이상에서 보면, 호주의 「장애차별법」(DDA)은 특별히 특정 영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는 모든 문화·예술활동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연계수단이나 방법 등까지도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 국민법」(ADA)보다 세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편의제공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3조 구내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일반 대중이 출입하거나 이용(유·무료를 불문한다) 할 수 있는 구내에의 접근 또는 이용을 거절;
- (b) 그러한 구내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정한 조건;
- (c) 그러한 구내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
- (d) 일반 대중이 이용(유·무료를 불문한다)할 수 있는 구내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

- (e)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정한 조건;
- (f) 구내에서 퇴거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

(2) 본 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구내 접근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있다;

- (a) 구내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거나 건축된 경우; 및
- (b)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구내를 변경하는 것이 그 접근을 제공해야 할 사람에게 부당한 고충을 주는 경우.

이 제23조는 모든 공공시설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 연구 분야인 문화·예술분야의 모든 시설은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4조는 재화, 용역 및 시설의 차별금지를 통한 편의제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1) 재화나 용역을 제공(유·무료를 불문한다)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나 시설이용의 거절;
- (b)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나 시설 이용의 허용을 정한 조건;
- (c) 재화나 용역의 제공 또는 시설을 위한 이용을 위한 방법.

(2) 본 조항은 장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고충을 주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시설의 이용과 그 이용에 수반되는 각종 용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23조와 제24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용에 의해서

제공하는 사람이 운영자가 부당한 고충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주의 「장애차별법」(DDA)에서는 희롱에 관한 법조항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차별을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나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사례로 보여 진다.

□ 제39조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희롱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운영(유·무료를 불문한다)하는 사람이 장애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람을 희롱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본다:

- (a)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를 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 (b) 장애를 가진 사람.

□ 제40조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희롱 - 장애인 측근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운영(유·무료를 불문한다)하는 사람이 장애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람을 희롱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본다;

- (a)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를 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 (b) 장애인 측근자를 가진 사람;

따라서 이 희롱과 관련된 법은 장애인 본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동해하는 측근자들까지 보호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호자 동행에 있어서 보다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행자 또는 보조자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하는 좋은 법 규정으로 보인다.

(2) 체육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호주의 「장애차별법」(DDA) 중 체육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은 이 법 제1장(전문)의 제3조(목적)와 제4조(정의), 제2장(장애인 차별 금지) 제1절(직장에서

의 차별) 제15조(고용차별)와 제2절(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제28조(스포츠)라 할 수 있다.

□ 장애차별법(DDA, 1992)

제1장 전문

제3조 목적

본 법은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a) 다음의 각 목의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i) 직장, 수용시설, 교육, 구내 접근, 단체, 스포츠

제4조 정의

(1) 본 법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측근자(associate)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 한다:

(a) 배우자;

(b)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

(c) 친척;

(d) 보호자;

(e) 사업,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서 관련을 가진 자

제2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2절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제28조 스포츠

(1)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별 할 수 있다.

(a) 스포츠 활동에서 합당하게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b)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기량의 능력을 근거로 서로를 비교하여 합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c) 스포츠 활동이 오직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호주의 「장애차별법」(DDA)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와 독일의 「장애인평등법」(BGG)와는 달리 스포츠에서의 차별금지를 법조항으로 직접 두고 있다. 이는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 호주의 「장애차별법」(DDA)은 모두 7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전문으로서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정의 관련조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법의 목적의 각 목에서 스포츠를 명시함으로써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의 관련조항에서도 측근자의 범주에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에서 관련자까지를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다.

체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제2절(기타영역에서의 차별) 제28조(스포츠)이다. 이 조 제(1)항은 “장애나 그 측근자의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 “스포츠 활동이라는 말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관리나 지도 활동이 포함 된다”고 광의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어떠한 장애인도 공공 체육프로그램의 참여나 서비스의 향유에서 배제를 금지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학교나 대학체육관, 체육공원, 체육센터, 경기장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 언급한 스포츠 관련 관리나 지도 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인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장애와 손상에 대한 지식, 특정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장애별로 알맞은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또한 법에 명시된 특정한 차별 인정사례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물리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체육행사와 체육대회에 더욱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다.

나) 호주표준(AS : Australian Standards)에서의 정당한 편의 기준

(1) 문화·예술 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호주의 문화·예술시설의 기준은 “호주기준 1428. 접근과 이동을 위한 설계”를 기준을 근거로 하고 특수형태의 건물 내 접근 요건에 대한 추가정보인 집회시설, 도서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연장과 영화관

공연장과 영화관은 집회시설의 기준이 적용되며 집회실의 종류는 강당, 극장, 영화관, 운동장, 교회, 법정, 회의실로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

집회시설은 “호주표준 1428.1의 접근성에 대한 일반적 요건-신축공사”에서 규정된 내용 중 집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15. 다중이용시설의 좌석 부분과 16. 청력증폭시설”이며 “11. 화재방지시스템”과 “17. 조명”은 국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강화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좌석은 강당 내 접근성, 표면(경사도), 공간요건(휠체어 공간 크기, 복도 및 회전폭)을 규정하고 있다. “17. 조명”은 내부조명의 안전이동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사회자의 입놀림과 통역자의 몸짓언어가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표준 1428.2의 부록”의 특수형태의 건물 중 집회시설의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1> 호주 표준에서의 집회시설 추가정보 사항

구 분	설 치 기 준
입구	이동의 연결 통로는 모든 시설 및 주차장(공간 확보)과 연결되어야 한다.
문과 문간	문 양쪽 활동 공간에 유의한다. 문턱의 수평 층계참이 중요하다. 잡기 힘들게 폭 들어간 문고리는 피한다.
복도와 현관	서고간 통로는 6항(활동공간)의 공간 및 통행 공간 참조한다. - 정지되어 있는 휠체어 한 대와 탄 사람이 필요한 최소공간은 80-130cm 이다. - 휠체어의 180도 회전을 위한 활동공간은 진로 방향에서는 207cm 이상 154cm 이상의 폭이어야 한다.

구 분	설 치 기 준
위생시설	<p>이성의 보호자가 동반되는 곳에서는 공용화장실을 추천한다.</p> <p>이성의 이용자 화장실과 교차하여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15항).</p> <p>유아용 변기 및 기저귀 교환 시설 필요하다</p> <p>표지나 심볼을 설치한다.</p>
가구 (거리 및 정원 가구 포함)	<p>책과 복사기는 그림과 같이 공동사용범위에 둔다.(그림23)</p> <p>카운터 높이는 그림과 같이 둔다. (24항)</p>
실내조절 장치, 전화, 우체국	<p>적어도 1개의우체통 (31항), 유료전화기 (30.1항)는 바닥층에 있어야 한다.</p>
조명	<p>전반적 진입로에는 조명시설을 한다. 통로 및 보도, 계단, 경사로는 150lx, 화장실 및 탈의실은 200lx, 주방용 조리대는 250lx, 일반전시장은 200-300lx, 전화는 200lx 로 한다.</p>
표지 및 신호	<p>접수대는 입구에서 보이는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p> <p>접근가능한 시설물 표시도 해놓아야 한다.</p> <p>보청장치가 있으면 표시해 놓아야 한다. (17항).</p> <p>비상자명종을 설치하여야 한다.(18항)</p> <p>표지판 및 시간표는 책과 복사기의 그림과 같이 공동구역에 설치한다. (17항)</p>

(나) 도서관

도서관은 일반적 내용을 제외하면 복도와 현관 항목 중 서고 간 통로에서 휠체어 기본 활동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구에서는 카운터와 작업대의 높이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12> 호주 표준에서의 도서관 추가정보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입구	모든 입구에서 건물 내 사무실과 기타관리실(화장실, 전화, 식당, 회의실, 도서실, 지원시설)등으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문과 문간	문 양쪽 활동 공간에 유의한다. 문턱의 수평 층계참이 중요하다. 잡기 힘들게 폭 들어간 문고리는 피한다.
복도와 현관	서고간 통로는 휠체어 기본 활동공간에 따른다.
위생시설	이성의 보호자가 동반되는 곳에서는 공용화장실을 추천한다. 이성의 이용자 화장실과 교차하여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15항). 유아용 변기 및 기저귀 교환 시설 필요하다 표지나 심볼을 설치한다.
가구 (거리 및 정원 가구 포함)	모든 카운터의 1층의 높이 기준(24항). (낮은 카운터를 만들면 가능함)문서 작성대를 설치한다(24.1항)
실내조절 장치, 전화, 우체국	무대나 연단의 스피커나 기타시설의 작동장치는 앉은 사람이 닿아야 한다(26항). 보청시설을 설치한다. (21항)
표지 및 신호	접수대는 입구에서 보이는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접근가능한 시설물 표시도 해놓아야 한다. 보청장치가 있으면 표시해 놓아야 한다. (17항). 비상자명종을 설치하여야 한다.(18항)
주차	차에서 내려 휠체어로 로비까지 접근가능한 공간이 설치 되어야 한다.
바닥면	보수가 거의 필요치 않는 바닥면을 설치한다.
추가주의사항	대중식당과 모임장소에는 방문객을 위해서도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한다.

(2) 체육 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호주 표준국에서 제정한 '호주표준'(AS : Australian Standards, 2001)은 1993년 3월에 발효된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에 의거 작성되었다. 그중 "1428. 접근과 이동을 위한 설계" 사항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제1부	접근로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 신축공사
제2부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제1부의 최소요건보다 더 나은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강된 접근요건)
제3부	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
제4부	촉지(시각장애인 또는 약시인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

<표13> 호주 표준에서의 접근과 아동을 위한 설계

제 1부는 접근로에 대한 일반적 요건-신규 건축 공사에 규정하고 있다. 설계자나 이용자들에게 개인주택 공사를 제외한 신축공사 시 장애인 접근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기술하고 있는 이규정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접근로나 회전공간, 일관된 연계시설, 보행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호주 표준 1428.1"에 의해 신축 공사에용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14> 호주 표준에서의 접근로에 대한 일반적 요건-신축공사

보도, 경사로, 참	손잡이와 난간 손잡이	현관출입문 및 활동공간
리프트	계단	위생시설
화재방지시설	상시 접근로의 표면	주차시설
청력 증폭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좌석	조명

부록에는 A. 난간의 예, B. 통로, 경사로, 참의 접근모서리, C. 상시 접근로 현관의 활동공간, D. 조도시설, E. 샤워장 및 칸막이, 샤워시설의 활동공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제2부는 건축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나 기구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1부의 최소 요건 보다 더 나은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보강된 접근 요건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표준 1428.2"에 의해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록에는 부엌 및 세탁, 특수형태의 건물 내 접근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 계단 전등의 인지기가 포함되어 있다.

<표15> 호주 표준에서의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

활동공간	연결 접근통로 보도	경사로 및 경사로참
손잡이	출입구와 문	리프트
계단	주차장시설	위생시설
심볼	표지판	경고판
조명	음향수준	청력증강-청각시스템
팔 닿는 범위	제어장치	가구 및 비품
강당 및 집회장소	조망범위	거리시설물
개찰구	자동판매기	전화
우체통	횡단보도	

<표 16> 호주 표준에서의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부록)

접근로, 경사로 및 참	계단	손잡이
위생시설	도달범위	제어장치
가구 및 비품	음수대	자동판매기
기타항목		

제3부는 지체장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접근·이동할 수 있도록 빌딩 및 시설을 설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다.

제4부는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호준표준에는 대부분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편의시설 외에 특수형태의 건물에 대한 부분은 “호주표준 1428.2”의 부록 B에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시설은 주택, 숙박시설, 상용건물, 상점과 쇼핑센터, 식음료시설, 집회시설, 공장 및 창고, 서비스장소, 교육시설, 도서관, 대중교통터미널 및 여객시설, 거리(쇼핑몰 포함), 레크리에이션이다. 그중 문화예술체육시설과 관련된 항목은 집회시설(강당, 극장, 영화관, 운동장, 교회, 법정, 회의실), 10번 도서관과 13번 레크리에이션시설(레저센터, 체육관, 수영장)로 분류되어 있고 입구, 문과 문간, 복도와 현관, 위생시설, 가구, 실내조절장치, 전화, 우체통, 조명, 표지 및 신호, 주차, 바닥면 등의 항목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레크리에이션시설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레크리에이션시설의 종류는 레저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다. 그중 샤워실·라커룸, 수영장, 체육관 등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17> 호주 표준에서의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정보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입구	연결통로로 모든 입구에서부터 건물, 사무실, 관리실, 로비, 리셉션, 승강기, 라커룸, 화장실, 전화, 체육실, 수영장, 응급실, 탁아소, 시식실, 직원실 등으로 통하여야 한다.
문과 문간	문 양쪽 활동 공간에 유의한다. 문턱의 수평 층계참이 중요하다. 잡기 힘들게 꼭 들어간 문고리는 피한다.
복도와 현관	현관 내 휠체어의 통행 및 회전 공간이 배려되어야 한다. (활동공간 참조)
위생시설	대중 록커룸의 샤워장과 화장실 외에 남녀공용샤워장과 화장실을 별도로 두길 권장한다. 이성의 보호자가 동반되는 곳에서는 공용화장실을 추천한다. 이성의 이용자 화장실과 교차하여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15항) 유아용 변기 및 기저귀 교환 시설 필요하다 표지나 심볼을 설치한다.
가구 (거리 및 정원 가구 포함)	모든 카운터의 1층의 높이 기준(24항). 문서 작성대 설치(24.1항) 대문과 출구(28항 참조) 식탁과 주변 공간(24.1항) 셀프 서비스 식당은 공동 사용범위(23항)
실내조절 장치, 전화, 우체국	유료전화(30.1항)
조명	전반적 진입로에는 조명시설을 한다.
표지 및 신호	접수대는 입구에서 보이는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접근가능한 시설물 표시도 해놓아야 한다. 보청장치가 있으면 표시해 놓아야 한다. (17항). 비상자명종을 설치하여야 한다.(18항)
주차	주차장에서 건물입구까지 통하는 공간 설치한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출입구까지 통하는 공간이 설치되어 한다.

구분	주요 내용
바닥면	<p>마루바닥은 젖었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p> <p>바닥의 표시를 해서 다른 곳으로 통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p> <p>카펫은 낮고 정전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p> <p>촉지지표 표시설치(18.1항)</p>
추가주의사항	<p>수치료 수영장이 있는 곳에는 “호주표준 3979”참조.</p> <p>고정식, 이동식 수영장 호이스트 및 샤워 옷장 의자를 모든 수영장에 비치되어야 한다.</p> <p>체육관에는 휠체어에서 기구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해야한다.</p>

3) 독일의 정당한 편의 기준

가)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³⁹⁾ 2002 : BGG)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기준

(1)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기준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률 이름이 “장애인 평등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이 법의 목적을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결(自決)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다.

독일 「장애인평등법」(BGG)의 목적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의 제거와 예방”은 차별적 요소에 대한 장벽제거를 통하여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한 차별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보다 발전 형태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법에서 나타나는 장벽제거는 제1장 4조에 있으며 제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9) Equal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t

- 장벽제거(Barrierefreiheit)란 건축적 시설들 및 기타의 시설들, 교통수단, 기술적 이용시설, 정보작업체계, 음향적 및 시각적 정보원(情報源) 및 커뮤니케이션시설, 기타 생활영역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 접근(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바로 제4조가 문화·예술활동의 차별행위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포괄적인 법조문으로 볼 수 있다. 이 4조에 의거 제5조에서는 이러한 “장벽제거”에 대한 목표합의 사항을 5항에 걸쳐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벽제거”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평등과 장벽제거에 관한 의무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각 조의 장벽제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장. 평등과 장벽제거에 관한 의무

제7조 공공기관들에 의한 불이익금지

제1항

연방행정기관의 사무소 및 기타 기관들 그리고 연방과 직접 관련되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公團), 재단(財團)은 각각의 책임영역 범주 내에서 동법 제1조의 영역에서 거론된 목표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며 대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사항은 주(州)행정기관 및 주(州)행정기관과 직접관련이 있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公團), 재단(財團)에도 적용된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불이익의 경감과 제거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허락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실제적 실현을 위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제2항

동제1항 의미에서의 공공기관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이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이란 불가피한 이유 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우하고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동등한 참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침해받음을 의미한다.

제3항

다른 법률들 특히 사회법전 제9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금지들은 변화 없이 유효하다.

□ 제8조 건축과 교통영역에서의 장벽제거

제1항

민간부문의 신축(新築) 시, 연방과 직접 관련되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公團), 재단(財團)을 포함하여 연방의 대규모 개축(改築) 및 증축(增築) 시에는 공인된 기술 규정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장벽제거에 관한 요구가 공인된 기술 규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공인 기술 규정과 다른 형태로 장벽제거가 될 수도 있다. 주법률(州法律)의 규정들, 특히 건축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2항

기타의 건축 및 다른 시설들, 공공도로, 주차장, 도로, 공공교통시설 및 공공대인 교통축진수단 등은 연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외의 주법률(州法律)의 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 제9조 수화 및 다른 의사소통지원들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제1항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행정절차에서 각 법률들의 인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동법 제2항의 법 규정에 따라 동법 제7조제1항제1문의 공공기관들과 독일수화, 음성(音聲)이 동반되는 수화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지원들을 통해 의사소통 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들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만큼 수화통역사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지원을 통해 의사소통을 보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연방정부의 내무부는 노동 및 사회질서부와 합의하여 연방 상원(Bundesrat)의 동의 없이 다음 사항들에 관한 법시행령을 결정한다.

1. 수화통역사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지원들의 준비에 대한 청구의 원인 및 범위
2.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수화통역사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지원 준비의 종류와 방법
3. 수화통역사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지원들의 필요경비 보상과 지불에 관한 원칙
4. 어떤 의사소통형태를 동조(同條) 제1호의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지원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 제10조 정보 및 출판물의 구성

제1항

동법 제7조제1항제1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문서정보, 일반보수(報酬), 공법적 계약, 출판 등에 있어서 사람의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전맹인(全盲人) 및 저시력 장애인들은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동제2항에 의거 법 규정에 따라 정보, 공법적 계약 및 출판물들에 대해 추가적 비용 없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항

연방 내무부는 연방 노동 및 사회질서부와 합의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전맹인 및 저시력 장애인들이 동제1항의 서류들에 대해 어떤 원인에서, 어떤 종류 및 방법으로 접근성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해 법 규정을 결정한다.

□ 11조 정보기술의 장벽제거

제1항

동법 제7조제1항제1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인터넷구현 및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기술의 수단으로 표현되는 그래픽적 프로그램외관 등을 동 제2항 규정에 맞게 기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연방 내무부는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와 합의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적, 재정적 및 행정조직적 가능성을 결정한다.

1. 동(同)규정에 해당되는 장애인그룹
2. 적용될 기술표준 및 적용시점
3. 적용될 행정적 정보들의 영역 및 종류

제2항

연방정부는 영리적 인터넷사이트 제공자들과 정보기술의 수단으로 표현되는 그래픽 프로그램외관 제공자들이 제품을 동법 제5조에 따른 목표합의를 통해 동 제1항의 적절한 표준에 따라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

이상에서 보면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행위와 정당한 편의제공처럼 특정영역을 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을 규정함으로써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 보여 진다.

(2) 체육활동의 정당한 편의 기준

「장애인 평등법」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이 일반 규정들로서 제4조 장벽제거 조항에 “장벽제거란 건축적 시설들 및 기타의 시설들, 교통수단, 기술적 이용시설, 정보작업체계, 음향적 및 시각적 정보원 및 커뮤니케이션시설, 기타 생활영역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 접근(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이나 경기장, 레크리에이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체육시설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에는 그들이 탈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구현 및 제공 등 정보기술체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의사소통을 원할 하게 해 줄 수 있는 음향적 및 시각적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제2장 평등과 장벽제거에 관한 의무는 제4조 장벽제거 조항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한 내용으로서 제7조가 공공기관들에 의한 불이익 금지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연방 및 주 행정기관 체육관련 법인단체, 공단, 재단 등은 제1조 법의 목적에서 거론된 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목표를 증진시켜야 하며, 계획단계에서 고려해야한다. 이 말은 어떠한 개인도 공공 체육프로그램 참여나 서비스의 향유에서 배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불평등도 강요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8조는 건축과 교통영역에 있어서의 장벽제거 조항이다. 제1항은 공공체육시설의 증, 개축 시에는 공인된 기술규정에 따라 접근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장의 경우 관람석에는 장애인들을 고려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이 방해받을 수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전국의 모든 공공 체육시설, 훈련 시설, 경기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평등법」(BGG)은 이러한 건축물을 개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기타 시설로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공공도로들을 포장해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쉽게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하고 접근권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수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적절한 대중교통 이동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장애인평등법」(BGG)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수화나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나 출판물에 대해 추가적 비용 없이 지각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권리,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평등법」(IBGG)중 정당한 편의와 밀접한 관련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은 이 법 제 1조(목적), 제 4조(장애물제거), 제 5조 (장애물 제거를 위한 공동목표합의), 제 8조(건축과 교통영역에서의 장애물 제거)라 할 수 있다.

<표 18>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에서의 정당한 편의

조 항	내 용
제1조 (목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를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 생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로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장애물제거)	건축시설들, 기타의 시설들, 교통수단, 기술적 이용시설, 정보작업체계, 음향적 및 시각적 정보원 및 커뮤니케이션 시설, 기타 생활영역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제5조 장애물 제거를 위한 공동목표합의	제1항에는 특별한 법적 혹은 시행령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공인된 단체들과 사업주 혹은 다양한 산업영역의 사업주연합들 사이에 개별 사안(事案)적 및 공간적 조직활동영역을 위한 장애물제거 창출에 관한 목표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공인된 단체는 목표합의에 관한 협상의 시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장애물제거 창출에 관한 목표합의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합의상대 결정, 기타 유효한 영역 및 유효기간에 관한 특별규정 2.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 및 이용 요구 충족을 위해 제4조 의미에서의 생활영역들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소조건에 관한 규정 3. 결정된 최소조건 충족을 위한 시점 및 시간계획 이 뿐만 아니라 목표합의는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한 위약금협약을 포함한다.
제8조 건축과 교통 영역에서의 장애물 제거	제1항에 '민간부분의 신축 시, 연방과 직접 관련되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公團), 재단(財團)을 포함하여 연방의 대규모 개축(改築) 및 증축(增築) 시에는 공인된 기술규정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들에 관하여 만일 장벽제거에 관한 요구들이 다른 해결방안으로 동등하게 실현될 수 있다면 규정과 다를 수 있다. 주법률(州法律)의 규정들, 특히 건축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2항에는 '기타의 건축 및 다른 시설들, 공공도로, 주차장, 도로, 공공교통시설 및 공공대인교통수단 등은 연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외의 주법률(州法律)의 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장애인평등법」(BGG)의 목적은 제1조에 국가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주체적인 생활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윤석진,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외국법제연구, p.78)

제4조의 장애물제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 등의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 등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8조의 건축과 교통영역의 장애물 제거는 신축건물이나 대규모의 재건축 및 증축 건물들(최소한 1백만 유로 이상이 소유되는)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게 되어 있다. 민간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의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동조 1항에는 “평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해결책으로 장애물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공법상 기관 및 재단은 이들 시설물에서 통상의 기술규정에 상응하여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항에서는 제1항에 예시하고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도로, 광장과 길, 공공의 여객운수에 있어서 공적으로 수용된 교통시설과 운수수단은 연방의 법률규정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장애인평등법」(BGG)의 주요내용 중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사회생활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장애인평등법(BGG)

제1장 일반 규정들

제1조 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특별한 욕구들이 고려되어진다.

제4조 장벽제거

장벽제거란 건축적 시설들 및 기타의 시설들, 교통수단, 기술적 이용시설, 정보작업체계, 음향적 및 시각적 정보원 및 커뮤니케이션시설, 기타 생활영역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 접근(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제2장. 평등과 장벽제거에 관한 의무

제7조 공공기관들에 의한 불이익금지

제1항

연방행정기관의 사무소 및 기타 기관들 그리고 연방과 직접 관련되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 재단은 각각의 책임영역 범주 내에서 동법 제1조의 영역에서 거론된 목표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며 대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사항은 주 행정기관 및 주 행정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 재단에도 적용된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불이익의 경감과 제거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허락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실제적 실현을 위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제2항

동 제1항 의미에서의 공공기관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이익하게 해서는 안된다. 불이익이란 불가피한 이유 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우하고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동등한 참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침해받음을 의미한다.

제3항

다른 법률들 특히 사회법전 제9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금지들은 변화 없이 유효하다.

제8조 건축과 교통영역에서의 장벽제거

제1항

민간부문의 신축 시, 연방과 직접 관련되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 재단을 포함하여 연방의 대규모 개축 및 증축 시에는 공인된 기술규정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들에 관하여 만일 장벽제거에 관한 요구들이 다른 해결방안으로 동등하게 실현될 수 있다면 규정으로부터 다를 수 있다. 주 법률의 규정들, 특히 건축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2항

기타의 건축 및 다른 시설들, 공공도로, 주차장, 도로, 공공교통시설 및 공공대인교통촉진 수단 등은 연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나) 독일의 공업 표준(DIN)⁴⁰⁾의 정당한 편의 기준

독일의 구체적인 접근성에 대한 법률은 공업표준(DIN)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건축적인 조치라 불리며, "독일공업표준 18024" 1장의 설계기초인 가로, 주차장 및 보도와 "18024"의 2절의 설계기초인 공공시설, "독일공업표준 18025-1"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 "독일공업표준 18025-2"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 그리고 별도로 장애인을 주거로 나뉘인다(강병근, 각국의 편의시설 법규집(독일), 보건복지부, 1999, p4). 이법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통, 빌딩, 주택 연방청에서 발간한 연구에서는 '지침(direkt) 56'⁴¹⁾을 근거로 기준을 제안한다. '지침 56'에는 철도역·버스·정류장·인터체인지, 공공거리환경, 공공건물로 구분된다. 그중 공공건물은 레스토랑, 스포츠와 레저 시설, 문화 및 의료 시설, 기관, 쇼핑센터 및 교육 기관 등이 있으며 공공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장비를 제공하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0)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 독일공업표준

41) Direkt 56/2001 : Improving Transport at the Local Authority Level - Computerized surveying and assessment of barriers at existing or new buildings, transport facilities and environment in the public domain.

<표 19> 독일 공업표준에서의 공공건물 접근성 기준

항목	설명	관련 기준	세부기준
출입구	건물에 적어도 하나의 단차가 없는 입구	독일공업표준 18024-2	
접근성	모든 공공 장소의 배리어 프리 접근성	독일공업표준 18024-2	모든 높은 또는 낮은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 계단 뿐만 아니라 경사로 또는 리프트에 의해 되어야 하며 통로는 문과 회랑이 충분히 넓어야 한다.
정보 및 길찾기 시스템	다양한 기능이나 사용 분야 예; •서비스 시설 •출구 •인포메이션데스크 •화장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 (장애인용화장실 또는 특수 입출구)	지침 55	section 3.4.2.
시각장애인용 안내 시스템	단차, 계단, 장애물과 색채로 대비한다.	독일공업표준 18024-1	
공공화장실	공공에게 이용하는 건물의 접근할수 있는 화장실	독일공업표준 18024-2	cf. section 3.5.4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장애인에게 입구에서 하나 이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		cf. section 3.2.4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레스토랑,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시설, 호텔)	최소 1 % (≥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 최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1 % (≥ 1 실)	독일공업표준 18024-2	

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당한 편의 기준⁴²⁾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RPD)은 2006년도에 UN총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비준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힘 있는 활동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각 조항별로 제출된 의장안에 대하여 각국 정부대표와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장애인연맹 및 장애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고 이를 각 조항별 조정자가 취합하여 완성된 조문을 발표하면 동 조문에 대하여 국가들이 만장일치 또는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성안되었으며,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각 당사국과 장애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 끝에 2006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약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⁴³⁾

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체 내용 중 본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운데 사회·경제·문화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어)항⁴⁴⁾ 및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 (커)항⁴⁵⁾, 제2조 정의 가운데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정의, 비차별과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그리고 접근성을 천명하고 있는 제3조 일반 원칙⁴⁶⁾, 제5조 평등과 비차별, 제9조 접근성,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

42) 이후 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조항은 외교통상부가 번역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본문을 인용함.

43) 국가인권위원회(2007),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p5.

44)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45)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46)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근권,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등이다.

□ 제5조 평등과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배경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획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소외·배제·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뿌리 깊은 편견과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동 조항은 그러한 장애차별의 특수성에 기하여 본 협약의 일반원칙에도 언급되어 있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조항으로 다시 정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여타의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그러한 내용들을 차용하여 동 조항의 내용이 구성되었다.⁴⁷⁾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47) 국가인권위원회(2007), 앞의 책 p39.

□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제9조 접근성은 건물, 도로, 교통 등 실내·외 모든 시설에 해당이 되며, 정보 및 의사소통 등 정보접근도 포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접근성 기준이나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 이행을 감시할 것, 민간 영역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등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할 것, 점자 및 읽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을 부착할 것, 안내인·낭독자 등 현장 지원을 할 것, 정보 접근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보조를 촉진

할 것,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와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고안·개발·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이행해야 하며, 장애를 가진 국민에게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접근성 정책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물리적 환경의 개선보다는 정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것이 협약의 특징이다. 특히 국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읽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부착하며, 새로운 정보 및 기술에 대응하는 등 빠르게 변해가는 통신환경 등을 고려한 내용들도 보인다.

□ 제19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19조의 목표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그밖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에 접근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19조의 정당한 편의는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하는 것,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표현 방법을 인정할 것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화, 점자 그리고 확장된 대체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방식·형식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확장된 대체 의사소통을 제공한다는 것과 의사소통의 모든 가능한 수단·방식·형식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관계된 정당한 편의는 개개인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수단도, 형식도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을 수용하고 촉진하는 것이 가장 큰 정당한 편의라고 할 수 있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동 조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모든 국가들의 공감을 얻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참여와 문화생활 참여는 별도로 두되 두 가지 주제는 같은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동 조항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광과 아동의 놀이에 대한 권리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조항에 반영되었다.⁴⁸⁾

지금까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위의 협약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유 인식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도 문화와 예술이라는 용어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언급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확대된 개념에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에 의거하면, 제3조(정의) 10항에 있는 “문화·예술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는 개별적인 활동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필요한 전반적인 용역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내용에는 접근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법은 제2장 차별금지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장애인권리협약에서와 같이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에서 접근되지 않을 경우 제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일본의 정당한 편의 기준⁴⁹⁾

일본의 경우 아직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서는 정당한 편의⁵⁰⁾의 기준에 대해 제2편 각칙의 매 장마다 다루고 있으며,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 있는 정당한

48) 국가인권위원회(2007), 앞의 책 pp150-151.

49) 일본의 경우는 아직 법률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므로 국외 법률 검토에서 제일 나중에 다루었다.

50) 일본의 법안에서는 ‘합리적 배려’로 되어 있으나 법안 본문을 인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편의로 통일되게 표기한다.

한 편의는 중 제2장(이용 및 이동에 대한 접근), 제3장(의사소통·정보전달), 제4장(서비스)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

제2장(이용 및 이동에 대한 접근)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간주되며, 이때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이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경, 조정,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며, 신속한 정보제공과 인적지원도 포함하고 있다.⁵¹⁾

제3장(의사소통·정보전달)에서는 정보제공자가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정보전달을 거부·제한·별도의 조건 추가하는 경우,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의 채택의 거부·제한·별도의 조건 추가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자의 동행을 거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중립적인 규제와 기준을 적용하지만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편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사람⁵²⁾이 의사소통·정보전달의 경우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경이나 조정을 해야 하며,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변경이나 조정을 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불균형이나 과중한 부담의 경우에도 정당한 편의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⁵³⁾

51) 제2장(이용 및 이동에 대한 접근) 3, 합리적인 배려 의무

이용 시설 또는 이동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변경이나 조정, 및 그 유지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실제적인 변경이나 조정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 제공, 인적 지원도 포함한다.

52) 이 경우 특정한 사람은 이 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를 지닌 대상자를 의미한다.

53) 제3장(의사소통·정보전달)

2. 의사소통·정보전달에 있어서 차별

의사소통·정보전달에 대한 접근에 대한 차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의사소통·정보전달의 상대방이 장애에 따라 의사소통·정보전달을 거부 또는 제한하거나 조건을 추가하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②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선택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채택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제한하거나 이에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③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선택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필요한 지원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을 거부하고, 또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규정된 사항의 형식으로 장애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규제와 기준의 적용 또는 취급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3의 합리적인 배려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3, 합리적인 배려 의무

- ① 특정한 사람과 의사소통·정보전달하는 경우 상대방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선택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정보전달하는 데 필요한 변경이나 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
- ② 불특정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보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이나 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

제4장(서비스)는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며,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인의 동반 참석을 승낙해야 하고, 보조기기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운영, 정책 또는 절차가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그 불이익을 제거해야 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⁵⁴⁾

6) 한국의 정당한 편의 기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은 제1조(목적), 제4조(차별행위),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차별금지)와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12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3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은 ①의 상대방 또는 ② 정보 제공자인 경우 불균형 또는 과중한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배려의 의무는 피할 수 없다.

54) 제4장(서비스)

3. 합리적인 배려 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제시하는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 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한다.
- ②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의 동반 참석을 승낙한다.
- ③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보조 기기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한다.
- ④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운영, 정책 또는 절차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 ④ 기타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배려를 한다.

□ 제1장 총칙

<표 20>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총칙

조 항	내 용
제 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차별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2장 차별금지

<표 2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 항	내 용
제1절 고용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8조 (시설물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항		내 용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p>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11></p> <p>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p>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조 항		내 용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p>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시행령

<표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조 항		내 용
법 제1절 고용에 따른 시행령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p>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법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시행령	제12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p>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제13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 내용 및 설치기준)	<p>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p>

조 항		내 용
법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p>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p> <p>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p>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p>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p>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p> <p>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p>

□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 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 [제16조 제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표 2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체육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 필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 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 1조 (목적)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장애인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로 한다는 큰 전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 4조(차별행위)는 정당한 편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의 차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차별금지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부분의 18조 시설물 접근·이용에 규정되어 있다. 18조에는 '① 시설물 및 이동 등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편의증진법 등에 있는 이동과 접근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에 대한 배려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는 수동휠체어나 목발 등을 기준으로만 이동과 접근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보조기구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제21조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를 정하고 있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예술사업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1호), 체육관련 행위자(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2호)등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4조와 제 25조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1조, 12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대상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정당한 편의 대상은 시행령 12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정되고 있어, 2008년에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도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현재는 정당한 편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건물 공사 범위가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정되고 있고 이보다 더 빈번하게 작업하는 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건물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공사 후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하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대수선, 리모델링, 인테리어 역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건물 공사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체육분야는 별도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 12조에서는 시설물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최소 기준에 대한 내용이어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시행령 제 15조에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 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시행령 제 16조에 1항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편의시설은 공통필수와 실내시설인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실외시설의 야외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통편의시설은 매개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으며, 내부공간은 별도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은 별도로 입수보조시설과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보조기구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실외시설은 세부적인 편의시설보다는 진입과 접근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좀 더 다양한 시설별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등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행사 7일 전에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문화·예술관련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에 나타나는 포괄적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독일 「장애인평등법」(BGG)에 나타나는 다양한 포용성에 비춰보면 시스템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포괄적으로 여가활동이라고 할 때, 이 여가활동중 하나인 관광활동에 대해 Yau, Mackercher & Packer(2004)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관광행동과정을 가진다고 밝혀내었다.⁵⁵⁾

이를 보면

- 1단계 : 개인적 단계-장애 상황을 인정하는 단계
- 2단계 : 지역 내 생활에 자신의 역할을 재설정 - 미래의 여행에 대한 탐구
- 3단계 : 안전한 여행을 위한 정보의 탐색 및 전략수립
- 4단계 : 여행기간 동안 보상과 타협전략이 필요
- 5단계 : 여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향후 여행에 대한 계획

이상의 단계는 문화·예술활동의 과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조항만으로 이를 정의하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활동전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경험 후 향후 계획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중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내용을 고찰을 할 때, 관광활동의 3단계에서 필요한 사회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총칙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면,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제3조(정의) 제10호만을 문화·예술사업자의 전부로 다룰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관람 및 참여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등 포괄적인 내용인 관광과 여가로 확장하여 고려할 때, 시스템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

5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광연구소(2008),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접근성 조사와 전략방안, pp67-69.

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관련 일련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제1장 총칙에 나타나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위의 총칙에서 나타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거나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에 관람·청취·시청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들

을 위해서는 정보, 시설물, 이동 및 교통수단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편의제공자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활동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접근이란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포괄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제반 측면의 접근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5년)이 제정된 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 통신시설,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중 문화예술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종류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종류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건축 관련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어 업무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편의시설은 크게 ① 주출입구 등 매개시설, ② 복도, 계단 등 내부시설, ③ 화장실 등 위생시설, ④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⑤ 관람석, 열람석 등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며 대상시설에 따라 어떤 항목은 의무사항으로 어떤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의무사항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권장사항은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물은 편의시설을 최소화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만 설치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운동시설의 경우 샤워실, 탈의실은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

문에 대부분의 운동시설의 탈의실, 샤워실은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는 실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편의시설의 기본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21개 항목으로 분류되고 세부 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대상시설에 따라 최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이용이 필요한 부분에도 의무항목이 제외된 부분이 있어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이 건물 내외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의무 항목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항목으로 구분은 장애인 접근에 어려움을 제공한다.

편의시설이 아닌 설비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는 제16조(시설 이용상의 편의제공)과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서 정하고 있다.

- 제16조(시설 이용 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들을 정해주고 있다.

□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1.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처럼 시행령에 의하면 편의시설 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로서 전시장 및 동·식물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밖의 문화·예술시설(관람시설 및 도서관 등)과 체육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당한 편의 기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전면개정)에서는 제31조 (편의제공 등)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해주고 있다.⁵⁶⁾ 그러나 편의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편의의 내용에 대해서만 정해주고 있다.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등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와는 큰 관계가 없다.

56)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축 관련 법률의 정당한 편의 기준

(1) 건축법

건축법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 있는 부분은 시행령 제7장 건축물 설비 등의 제 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규정되어 있다.

(2)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의 목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내용은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건축법에 비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만 접근을 권리로써 보기보다는 배려로써 보는 측면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제18조와 19조와 상충된다.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2조(기본이념)의 1항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문화·예술관련 법률의 정당한 편의 기준

(1)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조(목적)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2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에는 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의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3장의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의 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접근성에 대한 요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법의 목적은 1조에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 관련된 사항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3) 「지방문화진흥법」

이법의 목적은 1조에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4조(시설기준)가 있지만 시설⁵⁷⁾과 면적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 접근과 이용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없다.

(4) 「도서관법」

도서관법 중 장애인의 접근에 대해서는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의 43조(도서관의 책무) 3항에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의 자료(제3조 관련)에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주로

57)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이용하는 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09년도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항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시각장애인들의 도서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법에는 장애인을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측면에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소극적인 도서관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청소년 활동진흥법」

이법은 제1조(목적)에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기준과 허가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련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17조에 1항에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시설기준은 여성가족부령에 정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안전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청소년 장애인 이용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다. 수련시설 허가인 12조에도 시설기준과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요구 하고 있는 정도이다. 시행규칙 별표2에는 수련시설의 시설 기준이 있지만 공통기준과 각 시설별 기준을 상세하게 제안하고 있으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체육시설 관련법의 정당한 편의 기준

(1) 「국민체육진흥법」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조항은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의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는 상충되지 않지만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의 3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는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장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부분에도 장애인 체육관련 항목은 포함되지 않다. 그중 제6조(학교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을 위해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학생들의 체육시설 이용 등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6조의 2항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5조(전문체육시설)와 제7조(직장체육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정당한 접근성에 대해 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을 위한 운동장과 체육관 등으로 장애인들이 훈련받고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다.

직장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기준이 없어 고용된 장애인이 차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직장체육시설도 개방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체육활동에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규칙의 별표 1은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1종 공인경기장, 바닥면적, 바닥과 천장의 높이, 관람석 수, 스탠드면적, 면적, 수영장규격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에 대한 이용기준이 없으므로 추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의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은 지역의 시군구와 읍면동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의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도 공통기준,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작업 및 카누작업, 빙상작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추가하여야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에도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는 체육공간이 있지만 생활체육공간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은 갖추고 있지 않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정도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분석

가. 조사표 개발 및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1) 실태조사의 목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이행에 따라 2010년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일부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었다. 이번 이행상황 실태조사의 목적은 ① 대상시설의 법적 기준 이행여부 파악 ②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개발 기초자료 제공 ③대상시설에 정당한 편의 홍보 이다.

2) 실태조사표 개발

앞서 언급한 실태조사의 목표 3가지 중 1, 2번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표를 구성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표를 참고를 하여 실태조사표를 개발하였고, 초점집단면접을 거쳐 각 연구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면접에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2인, 목발 사용자 1인, 청각장애인 1인, 시각장애인 2인이 참여하여 문화·예술·체육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 가운데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과 개발된 실태조사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표에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로 제21조, 제24조, 제25조는 법률의 각 조항 및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나열하여 실태조사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해당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강화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인증기준」⁵⁸⁾을 일부 적용하여,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사용으로 달라진 시설물 접근을 위한 세부기준을 포함시켰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문화·예술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 미술관,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100개 시설로서 각 대상시설의 공간 사용용도에 따라 공연·관람시설(문화·예술기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4가지 종류의 실태조사표를 만들었다.

또 실태조사 목표 ②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각 대상시설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나 조사원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었다.

3) 초점집단면접 결과

가) 초점집단 면담의 목적

초점집단 면담의 목적은 개발된 실태조사표를 당사자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표에 정당한 편의에 구체적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담아내기 위한 것이다.

나) 초점집단 면담의 구성

지체(전동휠체어 사용자 2명, 목발 사용자 1명), 청각(수화사용자 1명), 시각(전맹 1명, 저시력 1명)의 장애영역별로 구성하여 각 장애 영역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58)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부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공원, 건물 등을 인증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인증기준이다.

다) 초점집단 면담의 결과

(1) 장애영역별 결과

(가) 지체장애

지체장애 영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 된 것은 시설물의 접근과 이동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우선 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으며, 개발된 실태조사표에서 셔틀버스 등 이동권에 대한 부분의 추가를 요청하여 실태조사표에 이 부분을 반영 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편의시설은 도서관의 열람석, 공연장의 관람석, 매표소, 샤워 및 탈의실 수영장 입수시설이었으며, 개발된 실태조사표에 이미 반영이 되었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나) 청각장애

청각장애 영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의사소통과 비상시 대피시설에 대한 것이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면대면 서비스로서 수화통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는데 통신중계서비스나 화상전화를 통한 수화통역은 면대면 서비스인 수화통역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태조사표에서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 었다. 하지만 통신중계서비스와 화상전화를 통한 수화통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 도 있어, 이 부분은 기존의 실태조사표를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또 비상시 대피시설로 경광등이 얘기되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경광등이 소 화전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소화전에 설치된 경광 등은 비상시 대피로를 안내할 수 없으므로 사고지점에서 대피로까지 연속적인 경광 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지금의 실태조사표는 설치 유무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주었다.

그러나 비상시 피난설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해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 어,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설치해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피난설비의 연속적인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어려웠다.

(다) 시각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이동과 정보 접근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동에 대해서는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가 되지 않은 곳 보다 잘못 설치된 곳이 많아 이동에 혼돈을 주고 있으며 이동에 대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아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실태조사 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보접근과 관련해서는 예매 등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웹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어렵고, 목자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대체수단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이에 대한 항목은 이미 실태조사지에 있어서 실태조사지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대상시설별 결과

(가) 문예회관의 시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매표소와 관람석으로 초점집단 면접에서 논의 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 실태조사표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실태조사표의 수정은 거의 없었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에 대해 법에는 없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실태조사표에 포함시켰다. 주로 논의된 매표소와 관람석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표소 : 지체장애인의 경우 매표소의 구조(높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 미확보)로 이용이 어려웠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젊은 층은 필담도 괜찮지만 30대 이상의 경우 건청인과의 문장력 차이로 인해 필담으로 한계가 있음으로 수화통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대부분이 인터넷 예매를 이용함으로 웹접근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관람석 : 지체장애인의 경우 관람석 이용에 불편한 점은 휠체어사용자 관람석의 경우, 활동보조인과 함께 동석 할 수 없고 좌석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휠체어사용자 관람석은 의자가 아예 없는 형태가 아닌, 이동식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활동보조인 또는 동행하는 사람이 같이 앉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로 좌석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연장의 경우 비상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장애인 대피에 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며, 이동동선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연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청각장애인은 보청시스템과 자막의 요구가 많았고, 시각장애인은 자막해설, 화면해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도서관에서 주로 논의 된 것은 자료실 및 열람실로 지체장애인은 편의시설,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지체장애인이 주로 논의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태조사표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실태조사표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으나, 정보 접근을 위한 설비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자료실 및 열람석 :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지체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면 불편함이 없다고 하였고 청각장애인은 책을 대출을 하는 안내데스크에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도서관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도서를 대출하고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도서관 사서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필담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이 꼭 필요하고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신중계서비스는 수화통역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각장애의 경우 의견이 둘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시각장애인실 또는 점자도서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는 일반 공공도서관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자의 주장은 전맹인 시각장애인이 주로 지지하였고 후자의 주장은 저시력인 시각장애인이 주로 지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두 가지 의견을 다 받아들여 점자도서관의 확대와 일반 공공 도서관의 정보접근성의 보장 모두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일

반 공공 도서관에도 확대기,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점자 도서관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일반 공공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의 안내가 가능한 사서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장애영역의 경우는 별도의 장애인 열람실을 운영하는 것은 도서관의 본질(원하는 책을 원하는 자리에서 읽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매표소와 전시관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매표소의 경우 문예회관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전시관에 대한 것으로는 전시물 안내에 대한 정보 접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 되었는데, 이 역시 대부분 실태조사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 매표소 : 박물관, 미술관의 매표소는 문예회관과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 지체장애인은 매표소의 구조,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 시각장애인은 인터넷의 웹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전시관 : 전시관을 관람하는데 있어 지체장애인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의 비치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가이드의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PDA와 같은 기기의 제공과 유물 해설사, 큐레이터 등이 설명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화통역 또는 문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은 일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를 요구하였고, 오디오 가이드의 내용이 전시물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부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유물의 모형을 만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시물에 대한 점자안내책자 점자도록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 체육시설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의 경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 시각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으면 일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배치가 실태조사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망원경이나 전광판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안내 데스크 및 접수대 : 청각장애인은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설 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접수를 하는데 있어 수화통역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 체육관 : 체육관에서 갖춰야 할 체육 용품에는 좌식배구 지지대와 골볼 골대가 있다. 지체장애인이 자주 즐기는 대표적인 운동은 보치아이며, 보치아 공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은 운동경기에서 소리 알리는 사인(운동경기에서 출발을 알리는 호각소리 또는 총소리, 파울을 알리는 호각 소리 등)에 대해 인지할 수 없으므로 시각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수영장 : 지체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탈의실, 샤워실 자체가 접근이 되지 않고, 특히 샤워장에서 수영장 가는 통로가 계단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수영장 입수시설이 거의 대부분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어 입수할 때나 나올 때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인은 체육관과 마찬가지로 소리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 시각표시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습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단 보청시스템(FM보청기)와 개인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4) 실태조사표 종류별 조사항목

실태조사표의 구체적인 항목 및 종류별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 대상시설별 조사항목

분 류	항 목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 임산부 휴게 시설, 웹접근성,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제공, 수화통역(통신중계), 보청기기, 화상전화기, 보조인력배치
박물관, 미술관(전시장)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매표소, 접수대
문예회관(공연장)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관람석, 매표소, FM송수신기, 무대단상 접근
도서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열람석, 접수대,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복사기
체육시설	샤워실, 탈의실, 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5)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2010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시설은 약 1천 4백여 곳⁵⁹⁾ 중 100곳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대상시설의 수는 전체 대상시설의 수의 약 7%로 전반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상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 선정에 원칙이 필요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실태조사 대상시설 100곳을 선정하였다.

59)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0 공공체육시설시설행황

□ 기준1 : 공공이용시설로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쉬운 곳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제25조는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제외하고 공공이용시설로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쉬운 곳으로 다음과 같이 종류를 한정하였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 문예회관
-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도서관
-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 미술관, 국공립 대학 박물관 :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박물관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

□ 기준2 : 연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

기준1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로서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쉬운 곳을 선정하기 위해 원칙1에 의해 선정된 시설종류에서 연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을 선정하였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연이용자 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시설의 규모 및 수영장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시설을 선정하였다.

□ 기준3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설의 종류별 비율과 지역을 고려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총수에 대한 시설 종류별 비율과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시설 종류별 비율은 도서관 40%, 박물관 25%, 체육시설 20%, 문예회관 11%, 미술관 4%임
- 16개 시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경기,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모두 포함
- 비율과 지역을 고려하여, 도서관은 한 지역당 평균 2~3개, 박물관, 체육시설, 문예회관, 미술관은 한 지역당 평균 1~2개를 선정

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된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5> 대상시설 리스트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계
개소수	16	42	18	10	14	100
서울	예술의 전당 음악당,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강북정보 문화센터,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국립중앙 박물관	서울시립 미술관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10
부산	부산문화 회관	부산시립시민 도서관, 부산시립구포 도서관, 부산시립반송 도서관	부산시립 박물관	부산시립 미술관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	7
대구	대구문화 예술회관	대구중앙도서관, 대구남부도서관, 대구동부도서관	국립대구 박물관		올림픽기념 대구국민 생활관	6
인천	인천문화 예술회관	인천중앙도서관,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	인천시립 박물관		계산국민 체육센터	6
광주	광주문화 예술회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 문화회관	국립광주 박물관	광주시립 미술관	빛고을노인 건강타운 체육관	6
대전	대전문화 예술의 전당	한밭도서관, 테미도서관	국립중앙 과학관	대전시립 미술관	올림픽기념 대전국민 생활관	6
울산		울산중앙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장생포 고래박물관		동천 국민체육 센터	5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계
경기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도립중앙 도서관, 경기도립과천 도서관, 용인시도서관, 수원선경도서관, 수원영통도서관	지도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8
충청북도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시립도서관, 청주북부도서관	국립청주 박물관 한국고예관		청주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	6
충청남도	천안여성 시민 문화회관	충남평생교육원			천안국민 체육센터, 류관순 체육관	4
경상북도	구미문화 예술회관	경북도립구미 도서관 구미시립도서관	국립경주 박물관		포항 국민체육 센터	5
경상남도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국립김해 박물관 국립김해 박물관 가야누리	경남도립 미술관	김해동부 스포츠센터	7
전라북도	전주덕진 문화회관	전주시립금암 도서관, 전주시립삼천 도서관, 전주시립송천 도서관	국립전주 박물관 국립전주 박물관 체험관	전북도립 미술관	전북도립장 애인복지관 체육관	8
전라남도	목포문화 예술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목포 자연사 박물관	전남도립 옥과미술관		4
강원도	춘천문화 예술회관	춘천평생교육 정보관, 강릉평생교육 정보관, 춘천시립도서관	춘천시립 박물관	강릉미술관		6
제주도	제주 문예회관	제주도서관, 탐라도서관	국립제주 박물관	제주현대 미술관	제주국민 체육센터	6

나.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방법

- 대상시설의 종류별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시설의 종류(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 적정, 부적정, 미이행, 해당없음의 4단계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 적정 : 기준에 적정한 정당한 편의⁶⁰⁾를 제공
 - 부적정 : 기준에 부적정한 정당한 편의(이용은 가능하나 편의증진법 기준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를 제공
 - 미이행 :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미이행
 - 해당없음 :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세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경우. 또는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나 부설 주차장의 수가 10면을 넘지 않을 경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실태조사 대상시설 종류별 평가는 전체 정당한 편의 평가항목 수에 대한 적정 항목 수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 문예회관 = 적정으로 평가된 정당한 편의 항목 수/40(전체 정당한편의 평가 항목 수)*100
 - 도서관 = 적정으로 평가된 정당한 편의 항목 수/38(전체 정당한 편의 평가 항목 수)*100
 - 박물관 = 적정으로 평가된 정당한 편의 항목 수/43(전체 정당한 편의 평가 항목 수)*100
 - 미술관 = 적정으로 평가된 정당한 편의 항목 수/43(전체 정당한 편의 평가 항목 수)*100
 - 체육시설(의무⁶¹⁾) = 적정으로 평가된 정당한 편의 항목 수/27(전체 정당한 편의 평가 항목 수)*100
 - 체육시설(권장포함⁶²⁾) = 적정으로 평가된 정당한 편의 항목 수/50(전체 정당한 편의 평가 항목 수)*100

60) 정당한 편의 가운데 편의시설의 경우 부적정 설치 사례가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여 바르게 설치된 경우를 적정으로 하였으며, 편의시설이 아닌 그 외의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것을 적정 설치로 보았다.

6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만을 포함시켜 평가함

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은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소변기로서 이 의무시설만 가지고 분석한 결과 변

□ 정당한 편의의 종류는 분류1과 분류2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분류 1은 정당한 편의의 대 분류를 의미한다.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분류 2는 분류 1의 세부 항목을 의미한다. 접근로에는 유효폭, 기울기, 보차도분리와 같은 세부항목이 들어 있다. 따라서 분류 1은 대항목, 분류 2는 분류 1의 세부항목이다.

□ 또 정당한 편의의 종류 평가는 전체 실태조사 대상시설 수에 대한 적정 대상시설 수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 접근로 = 적정으로 평가된 실태조사 대상시설 수/전체 실태조사 대상시설 수*1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적정으로 평가된 실태조사 대상시설 수/전체 실태조사 대상시설 수*100

2) 정당한 편의의 이행결과 분석

가) 대상시설별 정당한 편의 이행상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문예회관

문예회관의 전체 평가항목 수는 40개로 다음 표와 같다.

<표 26> 문예회관의 평가항목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경보 및 피난	관람석					
유효폭	기울기	보차도분리	바닥마감	설치비율	주차면	높이차이	유효폭	유효폭	높이차이	제거	승강시설	장애인용승강기	조작버튼높이	유효면적	점자표지판	음성안내	남녀별도설치	출입문유효폭	유효면적	대변기손잡이	대변기측면공간	세면대	비상경보등	설치비율	유효면적

별력이 없어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세면대, 샤워실, 탈의실, 관람석, 열람석을 포함시켜 평가함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⁶³⁾													문화 예술시설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음성 통역	자막 제공	보청기	화상 전화기	안내인 ⁶⁴⁾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화면 해설 및 자막 해설	망원경	인쇄 물음 성변 환출 력기	무대 단상 접근	보조 인력

<표 27>을 보면, 40개의 항목 중 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8.2개로 45.5%로 나타났고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5.9개로 14.8%였다. 또 미이행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5개로 37.5%로 나타났다.

부적정 역시 미이행에 해당됨으로 문예시설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률은 45.5%로 볼 수 있다.

<표 27> 문예회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구분	항목 수	백분율(%)
적정	18.2	45.5
부적정	5.9	14.8
미이행	15	37.5
해당없음	0.9	2.2
계	40	100

문예회관에서 적정으로 평가된 정당한 편의의 항목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편의시설과 관련된 항목이다. 관람석이 90.6%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층간이동이 87.5%로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층간이동이 높은 이행률을 보인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에서 공연장의 관람석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계단 및 승강시설은 권장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강기가 없는 문예회관도 적정으로 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63)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었음

64) 안내인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말하며, 보조인력은 해당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을 제외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말함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복도도 각각 78.1%, 75%, 71.9%, 78.1%의 높은 적정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장애인용화장실, 경보 및 피난설비는 40%대의 낮은 적정 이행률을 보였는데 장애인용화장실이 남녀공용이거나 세부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정으로 평가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고 경보 및 피난설비는 설치가 되지 않아 미이행으로 평가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15개의 평가 항목에서 적정 이행이 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항목이 11개로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이행되는 곳이 있는 4개의 항목도 이행률이 6.3%, 12.5%로 매우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보조인력인 배치로 이행률 62.5%로 가장 높으나 대상시설에서 직원 중에 한명이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보조인력에 대한 기준이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28> 문예회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분류 1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경보 및 피난	관람석				
	유효 폭	기울기	보차도 분리	바닥 마감	설치 비율	주차 면적				높이 차이	유효 폭	유효 폭	높이 차이 제거	승강 시설	장애인 용 승강기	조작 버튼 높이	유효 면적	점자 표지 판	음성 안내			남녀 별도 설치	출입문 유효 폭	유효 면적	대변기 손잡이
적정 이행률 (%)	100	438	688	100	813	688	438	100	938	625	875	75	438	875	688	75	563	938	375	375	25	25	438	938	875
	78.1				75		71.9		78.1		87.5		70					45.8					43.8		90.6

분류 1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문화예술 시설	
분류 2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음성 통역	자막 제공	보청기	화상 전화기	안내인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화면 해설 및 자막 해설	망원경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무대 단상 접근	보조 인력
적정이행률 (%)	6.3	0	0	0	0	12.5	0	0	0	0	0	0	0	37.5	62.5
	1.4													50	

(2) 도서관

도서관의 전체 평가 항목 수는 38개로 다음 표와 같다

<표 29> 도서관의 평가항목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열람석					
유효폭	기울기	보차도 분리	바닥 마감	설치 비율	주차면	높이 차이	유효폭	유효폭	높이 차이 제거	승강 시설	장애 이용 승강기	조작 버튼 높이	유효면적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남녀 별도 설치	출입문 유효폭	유효면적	대변기 손잡이	대변기 측면 공간	세면대	높이	하부 공간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문화예술 시설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통신 중계	음성 통역	보청기	화상 전화기	안내인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	확대경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점자 프린터	보조 인력	

위의 38개의 항목 중 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8개로 47.2%로 나타났고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6.8개로 17.9%였다. 또 미이행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2.3개로 32.3%로 나타났다.

부적정 역시 미이행에 해당됨으로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률은 47.2%로 볼 수 있다.

<표 30> 도서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구분	항목 수	백분율(%)
적정	18.0	47.2
부적정	6.8	17.9
미이행	12.3	32.3
해당없음	1.0	2.6
계	38.0	100.0

도서관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편의시설이 아닌 정당한 편의가 높은 적정 이행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하위 항목 중 하나인 확대경의 경우 적정 이행률이 71.4%로 총 42곳의 도서관 중 약 30곳에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대경을 제외하고 도서관도 문예회관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가 적정 이행률의 상위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적정 이행률을 보이는 것은 복도로 도서관 42곳 중 38곳이 적정하게 설치되었고 다음으로 높은 적정 이행률을 보인 것이 승강시설로 도서관 42곳 중 34곳이 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강기의 세부항목의 적정 이행률은 58.1%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층간이동은 가능하나, 설치된 승강기의 약 40%는 이용이 어렵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로 높은 적정 이행률을 보인 것은 열람실로 42곳 중 37곳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적정 이행률 88.1%인 열람석이다. 열람석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열람석 상부 높이 0.7~0.9m, 하부 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시설이 상부 높이는 만족하였으나 일부 도서관 열람석이 하부 높이가 낮아 이행률이 88.1%를 나타냈다.

주출입구, 접근로가 각각 76.2%, 73.8%로 그 뒤를 이어 높은 적정 이행률을 보였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적정 이행률이 45%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용화장실이 공용으로 설치되거나 대변기칸 유효면적, 손잡이 등이 잘못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의 적정 이행률은 14.7%로 6개 정도의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지만 이는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의 하위 항목 중 1가지라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아래 항목을 모두 제공하는 도서관은 없었다.

<표 31> 도서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분류 1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열람석				
	유효 폭	기울기	보차도 분리	바닥마감	설치비율	주차면	높이차이	유효 폭	유효 폭	높이차이 제거		승강기 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 버튼 높이	유효면적	점자표지판	음성안내	남녀별도 설치	출입문 유효 폭	유효면적	대변기 손잡이	대변기 측면 공간	세면대	높이
적정이행률 (%)	90.5	47.6	59.6	97.6	73.8	38.1	52.4	100	95.2	88.1	81	81	24	61.9	76.2	69	57.1	69	35.7	45.2	33.3	33.3	97.6	78.5
	73.8				56		76.2		91.7		81	58.1				45.6				88.1				

분류 1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문화 예술 시설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통신 중계	음성 통역	보청기	화상 전화기	안내인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	확대경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점자 프린터	
적정이행률 (%)	35.7	0	7.1	0	23.8	4.8	0	0	0	14.3	71.4	11.9	21.4	40.5
	14.7													40.5

(3) 박물관

박물관의 전체 평가 항목의 수는 42개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 박물관의 평가항목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유효폭	기울기	보차도 분리	바닥 마감	설치 비율	주차면	높이 차이	높이 차이 제거	유효폭	유효폭	높이 차이 제거	승강 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 버튼 높이	유효 면적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남녀 별도 설치	출입문 유효폭	유효 면적	대변기 손잡이	대변기 측면 공간	세면대	점자 블록 재질	승강기 점형블록	화장실 점형블록	계단 점형블록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문화예술회관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중계	음성 통역	보청기	화상 전화기	안내인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전시물 점자 안내	전시물 확대 활자 제공	전시물 음성 안내	전시물 점자 표기	확대경	망원경	보조 인력 배치											

위의 43개의 항목 중 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7.3개로 41.4%로 나타났고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6.6개로 15.6%였다. 또 미이행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6.2개로 38.5%로 나타났다.

부적정 역시 미이행에 해당됨으로 박물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률은 41.4%로 볼 수 있다.

<표 33> 박물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구분	항목 수	백분율(%)
적정	17.3	41.4
부적정	6.6	15.6
미이행	16.2	38.5
해당없음	1.9	4.5
계	43	100

박물관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항목은 접근로로 실태조사 대상시설 18곳 중 16곳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복도로 두 항목 모두 실태조사 대상시설 18곳 중 14곳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역시 문예회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의 정당한 편의가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제외한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에 관한 정당한 편의는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에서도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은 낮은 이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재질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정으로 처리된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용 화장실과 점자블록은 조사대상시설 18곳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실제 이행률은 각각 48.1%, 52.8%로 8곳, 9곳 정도만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항목도 동일한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시설 18곳 중 13곳이 설치되어 있으나 약 9곳만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 중 가장 높은 적정율을 보인 것은 보조인력의 배치이나 앞서 문예회관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직원 중 1명이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수준으로 여기고 있어 박물관 관람, 박물관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은 2.2%로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국립박물관에서 유물 점자안내책자, 유물의 모형을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전시체험관, 수화통역 등이 제공되는 등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가 조금씩 시도 되고 있었다.

<표 34> 박물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분류 1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유효폭	기울기	보차도 분리	바닥마감	설치비율	주차면	높이차이	유효폭	유효폭	높이차이 제거	승강기 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 버튼 높이	유효면적	점자표지판	음성안내	남녀별도 설치	출입문 유효폭	유도면적	대변기 손잡이	대변기 측면공간	세면대	점자블록 재질	승강기 점형블록	화장실 점형블록	계단 점형블록
분류 2	100	61.1	94.4	100	94.4	66.7	55.6	100	100	61.1	72.2	72.2	0	61.1	66.7	44.4	50	100	22.2	27.7	27.7	61.1	50	61.1	61.1	38.9
	적정이행률 (%)		88.9		80.6		77.8		80.6		72.2		48.9				48.1					52.8				

분류 1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문화 예술 시설
분류 2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중계	음성 통역	보청기	화상 전화기	안내인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전시물 안내	전시물 확대 활자 제공	전시물 음성 안내	전시물 점자 표기	확대경	명원경	보조 인력 배치
적정이행률 (%)	16.7	0	5.6	0	5.6	0	0	0	0	5.6	0	0	0	0	0	55.6
	2.2															55.6

(4) 미술관

미술관은 공간 사용 용도가 박물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의 수는 박물관과 동일한 42개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5> 미술관의 평가항목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이용 화장실				점자블록										
유효	기울기	보차도	바닥마감	설치비	주차면	높이차이	높이차이	유효폭	유효폭	높이차이	높이차이	승강기	장애이용	조작버튼	유효면적	점자표지	음성안내	남녀별도	출입문	유효면적	대변기	대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승강기	화장실	계단점
폭		분리	감	올	이	이	제거			제거	제거	시설	승강기	높이	판	내	설치	설치	유효폭	적	손잡이	공간	재질	블록	블록	블록	블록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문화 예술 시설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음성 통역	보청기	화상 전화기	화상 안내인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전시물 점자 안내	전시물 확대 활자 제공	전시물 음성 안내 표기	전시물 확대경	망원경	보조 인력 배치

위의 42개의 항목 중 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5.4개로 36.7%로 나타났고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8.2개로 19.5%였다. 또 미이행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7.2개로 41%로 나타났다.

미술관이 앞서 분석한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의 경우 미이행 항목의 비율보다 적정 이행의 항목의 비율이 높았으나, 미술관의 경우 적정 이행 항목의 비율이 미이행 항목의 비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부적정 역시 미이행에 해당됨으로 박물관에서 미이행 항목의 비율은 60.5%, 적정 이행 항목의 비율은 36.7%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률은 36.7%로 볼 수 있다.

<표36> 미술관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구분	항목 수	백분율(%)
적정	15.4	36.7
부적정	8.2	19.5
미이행	17.2	41
해당없음	1.2	2.9
계	42	100

미술관에서 가장 높은 적정 이행률을 보이는 항목은 복도로 실태조사 대상시설 10 곳 중 9곳이 적정으로 평가되어 90%의 이행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접근로, 주출입구가 80%의 이행률을 보였고 주출입구가 그 뒤를 이어 70%의 적정 이행률을 나타냈다.

미술관은 앞서 분석한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항목이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이 낮게 파악되었다. 미술관이 다른 대상시설 보다 적정 이행률을 크게 낮은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낮은 이행률이 미술관의 전체 이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에서는 웹접근성과 보조인력 배치를 제외한 아무런 정당한 편의도 제공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인력 배치의 경우도 앞선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직원이 도와 줄 수 있다는 정도로 미술관에서 작품설명을 해주는 큐레이터와 같은 미술 작품 감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배치는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미술관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분류 1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유효	기울기	보차도	바닥마감	설치비	주차면				높이차이	유효	유효	높이차이	승강기	장애인용	조작버튼	유효			점자표지	음성안내	남녀별도	출입문	유효	대변기	대변기
분류 2	유효	기울기	보차도	바닥마감	설치비	주차면	높이차이	유효	유효	높이차이	승강기	장애인용	조작버튼	유효	점자표지	음성안내	남녀별도	출입문	유효	대변기	대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승강기	화장실	계단점형
적정 이행률 (%)	100	60	90	70	40	40	40	100	100	80	80	70	0	70	70	50	40	80	70	40	20	20	10	40	50	30
	80				40		70	90		80	52				45				32.5							

분류 1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문화 예술 시설
분류 2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음성 통역	보청기	화상 전화기	안내인	점자 안내 책자	확대 활자 안내 책자	전사물	전사물	전사물	전사물	확대경	맹원경	보조 인력 배치
적정 이행률 (%)	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0
	1.3															60

나) 체육시설(의무)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이행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만을 평가한 것과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까지 포함시켜 평가한 것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의무시설만을 포함시킨 평가항목은 총 26개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8> 체육시설의 평가항목(의무)

접근로				주출입구		복도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체육 시설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유	기	보	바	높	유	유	높	웹	FM	수	음	보	화	자	장	점	확	전	확	망	프	체	입	좌	골	효	울	차	닥	이	효	효	이	접	보	화	성	청	상	막	애	자	대	광	대	원	로	육	수	식	볼	폭	기	도	마	차	폭	폭	이	근	청	통	통	기	전	제	인	활	판	경	경	그	지	시	배	골			분	감	이			차	성	기	역	역	화	공	공	내	자	음			램	도	설	구	대			리		제			이		기	통	역	기			가	안	성			운	자	및	지						거			제		계	신	통				가	내	안			영	보	조	주									거			중	계				능	내	내				인	력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효	울	차	닥	이	효	효	이	접	보	화	성	청	상	막	애	자	대	광	대	원	로	육	수	식	볼	폭	기	도	마	차	폭	폭	이	근	청	통	통	기	전	제	인	활	판	경	경	그	지	시	배	골			분	감	이			차	성	기	역	역	화	공	공	내	자	음			램	도	설	구	대			리		제			이		기	통	역	기			가	안	성			운	자	및	지						거			제		계	신	통				가	내	안			영	보	조	주									거			중	계				능	내	내				인	력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폭	기	도	마	차	폭	폭	이	근	청	통	통	기	전	제	인	활	판	경	경	그	지	시	배	골			분	감	이			차	성	기	역	역	화	공	공	내	자	음			램	도	설	구	대			리		제			이		기	통	역	기			가	안	성			운	자	및	지						거			제		계	신	통				가	내	안			영	보	조	주									거			중	계				능	내	내				인	력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분	감	이			차	성	기	역	역	화	공	공	내	자	음			램	도	설	구	대			리		제			이		기	통	역	기			가	안	성			운	자	및	지						거			제		계	신	통				가	내	안			영	보	조	주									거			중	계				능	내	내				인	력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리		제			이		기	통	역	기			가	안	성			운	자	및	지						거			제		계	신	통				가	내	안			영	보	조	주									거			중	계				능	내	내				인	력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거			제		계	신	통				가	내	안			영	보	조	주									거			중	계				능	내	내				인	력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거			중	계				능	내	내				인	력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계					한	인					배																			안						치																			내																									인																																																																																																																																																																																										
															안						치																			내																									인																																																																																																																																																																																																																			
															내																									인																																																																																																																																																																																																																																												
															인																																																																																																																																																																																																																																																																					

위의 26개의 항목 중 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7.4개로 28.3%로 나타났고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4개로 5.5%였다. 또 미이행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6.8개로 64.6%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은 전체 항목 중 적정 이행률을 보이는 항목이 30%에도 미치지 않아 실태조사 대상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중 가장 낮은 적정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시설 역시 다른 실태조사 대상시설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과 관련된 이행률이 높고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 항목의 이행률은 낮다. 거기다 편의시설의 평가 항목의 비율은 낮은 반면, 편의시설 이외의 정당한 편의 평가 항목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의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체육시설에서 미이행 항목의 비율은 64.6%, 적정 이행 항목의 비율은 28.3%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률은 28.3%로 볼 수 있다.

<표 39> 체육시설의 대상시설별(의무) 이행률

구분	항목 수	백분율(%)
적정	7.4	28.3
부적정	1.4	5.5
미이행	16.8	64.6
해당없음	0.4	1.64
계	26	100

체육시설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복도로 14곳 중 12곳이 적정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주출입구, 접근로가 각각 89.2%, 71.4%의 적정 이행률을 나타냈다.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인 것이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의 관한 항목으로 0%를 나타내 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표 40>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의무) 이행률

분류 1	접근로				주출입구		복도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체육 시설	수영장 및 실내 체육관						
	유 효 폭	기 울 기	보 차 도 분 리	바 닥 마 감	높 이 차 이	유 효 폭		유 효 폭	높 이 차 이 제 거	웹 접 근 성	FM 보 청 기	수 화 통 역 통 신 중 계	음 성 통 역	보 청 기 기	화 상 전 화 기	자 막 제 공	장 애 인 안 내 가 가 능 한 안 내 인	점 자 안 내 문	확 대 활 자 안 내 문	전 광 판 음 성 안 내		확 대 경	망 원 경	프 로 그 램 운 영	체 육 지 도 자 및 보 조 인 력 배 치	입 수 시 설	좌 식 배 구 지 주	골 볼 골 대
분류 2	92.9	35.7	71.4	85.7	78.6	100	92.9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6	7.1	21.4	14.2	7.1
적정 이행률 (%)	71.4				89.2		96.4		0													17.9			14.3			

프로그램 운영, 체육 지도자 및 보조인력을 배치 항목은 17.9%로 약 2곳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수영, 장애인 배드민턴, 핸드 싸이클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낮 시간대에 1개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 실제 이용이 어려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일반 체육시설의 이용은 불가능 하였다.

다) 체육시설(권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해 체육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만으로는 정당한 편의의 이행을 변별하기 어려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앞서 분석한 체육시설을 재분석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권장사항을 포함한 총 평가항목은 49개이다.

<표 41> 체육시설(권장)의 평가항목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샤워실											
유효폭	기울기	바닥 마감	설치 비율	주차면	높이 차이	유효폭	유효폭	높이 차이 제거	승강 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 버튼 높이	유효 면적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남녀 별도 설치	출입문 유효폭	유효 면적	대변기 손잡이	대변기 측면공간	세면대	장애인용 샤워실	샤워기	샤워용 의자	유효 면적	바닥 마감
탈의실	관람석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체육 시설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장애인용 탈의실	수납장	설치 비율	유효 면적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 통신 중계	음성통역	보청 기기	화상 전화기	자막 제공	장애인안내가 가능한 안내인	점자 안내문	확대 활자 안내문	전광판 음성안내	확대경	망원경	프로그램 운영	체육 지도자 및 보조인력 배치	입수 시설	좌식 배구 지주	골볼 골대				

위의 49개의 항목 중 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7.4개로 35.4%로 나타났고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6.4개로 13%였다. 또 미이행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9.1개로 39.1%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권장사항을 포함시켜 적정 이행을 평가한 결과, 같은 대상시설임에도 적정 이행률이 28.3%에서 35.4%로 높아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체육시설 역시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적정 이행률이 높고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체육시설의 적정 이행률이 다른 실태조사 대상시설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보다 낮은 이행률을 보이는 것은, 이번 평가 항목에 포함된 편의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권장사항을 포함시킨 체육시설의 적정 이행 항목의 비율은 35.4%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률은 35.4%로 볼 수 있다.

<표 42> 체육시설(권장)의 대상시설별 이행률

구분	항목 수	백분율(%)
적정	17.4	35.4
부적정	6.4	13
미이행	19.1	39.1
해당없음	6.1	12.5
계	49	100

권장사항을 포함시킨 체육시설의 항목별 이행률에서는 의무사항과 마찬가지로, 복도가 96.4%로 가장 이행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출입구, 접근로가 각각 89.3%, 71.4%로 조사되었다. 권장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체육 활동을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샤워실과 탈의실이 이행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의 관한 법률」에서 이 두가지를 권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항목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표 43> 체육시설(권장)의 정당한 편의 종류별 이행률

분류 1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복도	층간 이동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샤워실								
	유효폭	기울기	보차도 분리	바닥 마감	설치 비율	주차면	높이 차이	유효폭			유효폭	높이 차이 제거	승강 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 버튼 높이	유효 면적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남녀 별도 설치	출입문 유효폭	유효 면적	대변기 손잡이	대변기 측면 공간	세면대	장애인용 샤워실	샤워기	샤워용 의자
적정이행률 (%)	92.3	35.7	71.4	85.7	92.9	42.9	78.5	100	92.9	100	85.7	85.7	0	71.4	78.6	64.3	57.1	71.4	35.7	28.6	35.7	35.7	35.7	35.7	7.1	35.7	35.7
	71.4				67.9		89.3		96.4		85.7		60				44				30						

분류 1	탈의실		관람석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체육 시설		수영장 및 실내 체육관			
	장애인용 탈의실	수납장	설치 비율	유효 면적	웹 접근성	FM 보청기	수화 통역·통신 중계	음성통역	보청 기기	화상 전화기	자막 제공	장애인안내가 가능한 안내인	점자 안내문	확대 활자 안내문	전광판 음성안내	확대경	망원경	프로그램 운영	체육 지도자 및 보조인력 배치	입수 시설	좌식 배구지주	골볼 골대
적정이행률 (%)	35.7	0	21.4	21.4	0	0	0	0	0	0	0	0	0	0	0	0	0	28.6	7.1	14.2	7.1	7.1
	17.9		21.4		0												17.9		9.5			

3)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가) 문화·예술 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이행률

문화·예술 시설 및 체육시설 100곳의 정당한 편의 이행상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문화·예술 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평균 이행률은 39.1%로 나타나 아직 많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대상시설은 도서관으로 47.2%의 이행률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이는 대상시설은 체육시설로 법적 의무사

항만을 조사했을 때 28.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도서관이 이처럼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이유는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이 높기 때문이다.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이 거의 비슷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률의 산출 방법은 총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 항목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표 44> 대상시설별 이행률 비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의무)	체육시설 (권장)
적정 이행률(%)	45.5	47.2	41.4	36.7	28.3	35.4
평균	39.1					

나)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은 64.8%으나,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은 평균 3.2%로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는 첫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더라도 어떤 설비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이 높게 나온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지 13년이 되어 이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떤 편의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을 받는 시설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5>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의 비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 시설 (의무)	체육 시설 (권장)	평균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적정 이행률(%)	1.4	14.7	2.2	1.3	0	0	3.2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적정 이행률(%)	65.2	71.3	68.7	61.2	85.6	58.4	64.8

다) 대상시설별 개선 사항

(1) 문예회관

(가) 관람석 설치 기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 비율 및 크기만 나와 있어 실제 장애인이 편리하게 공연장 이용이 불가능하고 장애인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관람석은 다음 세가지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로 무대에 대한 시야확보이고 둘째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좌석의 선택권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비장애인 동행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관람석 설치 기준에 이런 원칙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FM보청시스템 등 필요

FM보청기,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과 같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2) 도서관

(가) 설비의 적정한 배치 필요

정당한 편의를 위해 갖춰진 설비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의사소통 및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 이행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설비나 서비스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 열람석에 확대경,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컴퓨터, 점자 프린터 등이 비치 되어 있거나, 장애인실을 만들어 점자책과 확대경을 같이 두는 등 해당 설비의 쓰임새 등과 상관없이 비치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비를 비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설비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하다.

(나) 새로 도입되는 설비에 대한 접근 고려

새로 도입되는 전자 기기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의 경우 자동 도서 반납기, 자동 도서 대출기, 열람석 확인기 등 다른 대상시설보다 새로운 전자 기기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도입되는 전자 기기들 모두가 조작반의 높이가 높거나, 조작버튼의 동작 방식이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편의 기준이 필요하며, 새롭게 생겨나는 기기들의 경우 법에 일일이 다 명시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포괄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열람 이외에도 문화강좌와 같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박물관·미술관

(가) 전시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전시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시물의 경우 시각을 통해 관람을 하게 됨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는 시각적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점자 안내책자, 음성해설기 등을 제공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문화해설사나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과 같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박물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 체육시설

(가) 샤워실 등에 대한 접근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는 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소변기로 이들 편의시설만으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탈의실과 샤워실, 그리고 각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전문인력 필요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종류, 강습 방법, 운동 방법 등이 비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또한 청각장애인이 강습을 받을 경우 의사소통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FM보청기 같은 설비나 수화통역 같은 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4) 소결

이번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비교적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나, 편의시설을 제외한 정당한 편의는 아주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따라서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를 제외한 정당한 편의(의사소통 및 전자정보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담당자가 아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를 모르거나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이 다른 정당한 편의의 이행률 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잘못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가. 법·제도 개선방안

1) 관련 법률의 개선 방안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국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건축물을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금지하고 차별을 받을 경우 효과적으로 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령 제11조(시설의 대상의 범위)는 시설물의 단계적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제한·배제·거부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체육분야는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건축행위가 한정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는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와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다는 강화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 상호간 용어 차이가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갖춘 편의시설 기준이 한계가 있어 보완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법 18조의 시설물 이동 등의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상충된 문제를 안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부분은 대상과 범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건축행위가 신축·증축·개축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수명은 최소 20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을 강요하게 되므로 기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행위인 신축·증축·개축 범위를 넓혀 대수선, 리모델링·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의 2항의 편의시설 항목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매표소, 공연장 내의 정보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여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활동의 차별금지) 1항의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중 별표 5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 등에 공통필수와 실내시설과 실외시설로 규정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크게 분류하여 실내시설과 실외시설로 구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이가 나므로 조정되어야 하고 세부 시설별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미국과 같이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현재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행방법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의 개선방안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과 같은 보편성 원리에 입각한 포괄적인 장애인 예술·문화활동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예술·문화활동은 단편적인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정보수집부터 활동후 재방문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된 활동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장애인법과 같은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에 대한 강제규정보다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에 '모든 생활영역(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결정하여 설치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 편의시설의 지도와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하여 실제 건축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므로 행정에서 두 개의 부처가 관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는 장애인의 접근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화·예술·체육의 정당한 편의 내용과 다르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8조(시설물 접근·이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편의시설의 기준이 없어 접근과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다양한 보조기구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에 ‘모든 생활영역(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에 따라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기본 권리에 차별을 받고 있다. 최소한 편의시설도 의무와 권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의무사항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열람석은 의무·권장 사항의 기준에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이 공공도서관의 진입은 가능하지만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의 제한보다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에는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시설인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은 부가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도 시설별·규모별로 편의시설의 항목의 차이를 주기보다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기준을 모두 제시하고 현재의 권장·의무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시설의 편의증진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편의시설의 지도와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는 장애인복지과나 사

회복지과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은 건축과 정보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실제 소관부처의 차이로 건축허가 또는 준공 후 편의시설이 수정되는 작업이 많고 그에 따라 적정설치율도 낮아지고 있다. 또한 일선행정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담당부서를 이관하거나 법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개정이 어려울 경우 편의시설의 지도와 감독 부분에 국토해양부장관도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조기구인 수동휠체어나 목발 등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의 이동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시설의 접근과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동의 차별금지)의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수동휠체어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의 다양한 보조기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현재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 관련 문화예술시설(박물관, 전시관, 도서관)과 교육시설 내 체육시설 등에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는 어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은 어린이를 위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는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아 향후 어린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할 수 있어야 하나 국내는 아직 시설의 이용보다는 최소한의 접근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다. 국내의 관람석의 예를 들면 휠체어 사용자의 좌석배치는 관람의 중요 기능보다는 출입구와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 공연시 필요한 설비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람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서관은 열람석, 접수대 등 정도로 규정되어 있지 서고 등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최소 접근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편의시설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만 의무로 갖추게 되어 있고 위생시설, 안내시설과 기타시설은 제대로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않다. 각 세부시설은

욕실, 샤워·탈의실, 침실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항목을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중 공연장의 샤워실 및 탈의실은 관람객에게는 필요는 없지만 장애인의 직접적 예술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의 대상은 체육관과 운동장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시설의 접근만을 고려하고 있다. 세부시설별 장애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미국의 체육시설기준은 특별시설에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트시설, 골프, 운동장비, 볼링장, 사격시설, 수영장 등에 대해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도 체육시설 종류별 필요한 편의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통적인 편의시설 기준과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부가적인 시설이 기준이 있으나 세부적이지는 못하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중 운동시설의 종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되어야 하며 해양관련 체육시설은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항목 중 의무사항은 5개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시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안내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통기준 중에 샤워실 및 탈의실 기준과 관람석 등에 기준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및 관람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표5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항목을 개정하여야 한다.

위 표에서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권장 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위생시설은 모든 항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며 기타시설의 관람석·열람석도 매우 필수적인 시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바 기존의 권장사항에서 모두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의무·권장사항을 현재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생시설 관련 조항을 대부분 의무화 하였으며, 경기관람에 필수적인 시설인 관람석·열람석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46> 문화·예술·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대변기	의무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공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조각공원 생활체육 공원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문화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전시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1000㎡ 이상
노유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운동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500㎡ 이상

다) 건축관련 법

건축관련 법중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포함되어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은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건축의 관련 시설과 설비로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다. 건축기본법은 좀 더 확장된 범위로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같이 활동에 참여가 가능

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에서 의미하는 권리적 개념과 상충하므로 "장애인이 시설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권리"로써 개정되어야 한다.

편의증진법과 소관부처의 차이로 인해 건축허가 또는 준공 후 편의시설 추가적으로 수정되는 작업이 많고 그에 따라 적정 설치율이 높지 않다. 또한 법 기준은 적합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 실제로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많은 차별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 관련법에서 편의증진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와 건축기본법 제11조(기본정책기본계획), 제14조(국가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와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0조(분과위원회), 제15조(건축기본조사),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등에서 장애인과 노인 관련 건축부분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 및 안전에 관련된 수직동선과 관련된 「건축법」제64조(승강기)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등이 편의증진법과 상충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1)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은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는 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도"로만 되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이 사람들과 동등하게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적극적 방안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체육시설의 매개시설 부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는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일선의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장애인단체가 점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11장 (건축허가)에 편의증진법 및 이동교통법을 확인 후 건축허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는 6층 이상만 승강기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편의증진법은 접근과 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5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두 법이 상충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없어 많은 건물들이 인증을 받기보다는 공공과 복지와 관련된 최소의 건물만 인증을 받고 있다. 현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만 포함되어 있고 의무로 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을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증제도가 건축법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 건립을 하기 위해선 허가뿐만 아니라 일정이상의 규모 건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현재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분야 중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건축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하는 사항에도 장애인 및 노인의 건축이용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에 장애인·노인건축 부분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2) 건축기본법 개정(안)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보다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듯하나 아직까지는 장애인을 배려로써 측면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권리로서 접근을 강조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공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와 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와 시행령 제 10조(분과위원회), 15조(건축 기본조사), 제21조(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건축의 기본조사 및 건축 전반에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에 보고하는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에 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차별없이 이용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법 21조(건축디자인의 설정)와 시행령 제15조(건축디자인의 설정)는 장애인 등의 이용을 보장이 고려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는 장애인의 화재 등의 위험에 피난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난안전구역에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화재 등의 위험에 피난을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에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라) 문화예술시설관련법

문화예술시설관련법은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지방문화진흥법」, 「도서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매우 다양한 법들이 연관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관련 법들의 모법의 성향이 강하다. 15조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에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급의 타분야의 법과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등에 장애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과 「지방문화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이용 및 접근 등에 관련 내용도 전무하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와 각 시설별 기준, 공연법의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장 공연장의 설치·운영등과 시행령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지방문화진흥법의 시행령 제4조(시설기준) 등에는 장애인 활동 및 접근 과 이용에 대한 편의시설 기준을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는 장애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법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청소년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관법」은 제8장의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의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장애인을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보고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중 분리의 원칙에 상응할 수 있으므로 전문 부분에 장애인 접근 및 이용편의를 추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장애인좌석 수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세부편의시설의 규정이 없다. 또한 제3장 국립도서관,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부분에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항목이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도서관에서 정보접근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편의시설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 관련 모범으로 제3장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대해 항목은 있지만 제2장 문화예술 공간 설치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에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화시설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없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안)

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는 국·공·사립 박물관의 확충, 지역문화 시설의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장애인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에 대한 보장을 위한 시설계획에 대한 항목은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이 박물관·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등록요건)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규모, 필요실,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정도만 갖추도록 되어 있지 장애인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록 요건 자체에 장애인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16조(대관 및 편의시설)는 편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는 매점, 기념품 판매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편의시설과 혼동할 수 있어 편의시설로 수정하고

별도의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신설하여야 한다.

(3) 공연법 개정(안)

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과 시행령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는 공연 예술 진흥 계획으로 그중 공연예술의 육성, 공연장 등의 공연시설 확충,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이 공연예술에 참여 및 관람을 위한 시설에 대한 확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차별없이 공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

법 제3장의 공연장설치·운영은 장애인의 공연 및 관람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으므로 장애인들이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

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공연장의 등록)와 시행규칙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는 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4) 지방문화진흥법 개정(안)

시행령 제4조 (시설기준)은 면적과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지방문화에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은 제8장의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43조(도서관의 책무) 장애인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보고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지식정보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강화된 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

인들이 도서관의 지식정보에 접근 및 이용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

도서관법 제5조 시설 및 도서관 자료와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과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장애인좌석수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 좌석수 차원에서는 외국보다 규정이 강하지만 서가 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준은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도서관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국립도서관,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부분의 제18조, 제22조, 제27조(설치)에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내의 어린이 자료실 부분은 별도의 이용 및 접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 활동진흥법 개정(안)

이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위한 법이지만 장애인 청소년의 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시설의 이용과 접근과 관련된 법은 법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와 별표 2의 수련시설의 기준은 청소년 시설 기준 및 안전기준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 장애인이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과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청소년 장애인이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 체육시설 관련 법

체육시설 관련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관련 모법으로 13조(체육시설 설치 등)에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 세부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6조(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체육시설과 직장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체육시설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선수훈련에 대비해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2조(체육시설의 종류)의 별표1과 편의증진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의 별표 2가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인생활체육시설의 종류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와 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6조(체육활동의 금지)의 별표5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설치의무 적용시기의 내용 기준과 미국기준 등을 고려하여 세부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의 3항은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세부시설 기준도 갖추고 있지 않다.

(1)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관련 모법으로 13조(체육시설 설치 등)에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의 3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 항목은 있지만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을 학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으나 장애 학생에 대한 내용은 없어 장애 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육시설 중 제6조(생활체육시설)은 장애인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전문체육시설과 직장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도록 제5장(전문체육시설)과 제7장(생활체육시설)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종류별 범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편의증진법의 운동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표 5의 기준과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 시설의 종류가 상충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체육시설을 실내시설의 수영장, 체육관과 실외시설의 야외경기장으로 구분해서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이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준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을 구분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규칙의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는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된 체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체육시설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은 편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는 주차장, 화장실, 관람석, 식당 등으로 편의시설이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혼동될 수 있어 편의시설로 개정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치 및 비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p>1. 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 연습장, 켈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p> <p>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 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p>	<p>1. 좌동</p> <p>2. 좌동</p> <p>3.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치 및 비치(신설)</p>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는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된다. 주제공원 중 체육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생활체육공원에 대해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생활체육공원의 정의와 장애인이 야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공원시설은 제2조 4항에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분류되지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이 공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로만 분류되어 있다. 장애인이 쾌적한 공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건축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의 별표1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

바)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법률 개선 방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들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문화·예술·체육 관련 법률들과 정당한 편의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기준은 적극적 조치의 미이행, 차별, 상충 이렇게 3가지로 분석하였다.

(1)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법률 개선 방안

문화·예술·체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다.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수화통역, 안내와 같은 인적 서비스로부터 보청기·확대경과 같은 용품을 비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보행장애인에게 있어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이지만,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조정에 비해 개선이 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휠체어 사용자 등 보행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는 많은 규정들이 있지만,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관련 법률들을 <표 48>의 문화·예술·체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지표로 분석을 하고 개선안은 제시하였다. 법률의 선정은 문화·예술·체육 관련 법률들과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법률들로 한정하였다. 다음은 법률에 대한 개선안이다.

<표 48>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법률개정안

법령명	법령	개정 사유의 기준 ⁶⁵⁾	사 유	개선안 예시	담당
	내 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p>	적극조치	<p>[개정필요]</p> <p>-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하여 물리적인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지 15년이 되어가지만 정보접근권은 아직도 너무 미흡한 실정임</p> <p>- 정보사회, 문화사회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문화접근권의 기본이 되는) 정보접근권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내용물의 접근인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p> <p>- 예를 들어 시행령 제7조의 2항의 대상시설의 가운데 문화의 집회시설에 장애인의 무형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화, 자막, 이미지, 화면해설, 점자안내 등을 법률이나 하위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법률]</p> <p>(00조) (정보접근의 편의 제공 기준) ① 대상시설 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접근 편의의 종류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00조) (정보접근 편의의 종류) 법 00조에서 위임한 정보접근 편의의 종류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화통역 2. 자막(실시간자막, 편집자막, 대필 포함) 3. 화면해설 및 음성해설 4. 이미지 및 기호 5. 점자안내서 6. 보청기기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한 도구 <p>② 대상시설별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접근의 편의는 시행령에 위임 필요</p>	보건복지부

법령		개정 사유의 기준	사 유	개선안 예시	담당
법령명	내 용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p> <p>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p>	적 극 조 치	-이때 제16조의2항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항에만 모든 내용을 담을 경우 장애인의 문화접근을 비롯한 정보접근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		보 건 복 지 부

65) 적극조치 : 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충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제정취지 내용과 맞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

차별 : 법률 조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법령		개정 사유의 기준	사 유	개선안 예시	담당
법령명	내 용				
문화재 보호법	제31조(지정 또는 인정 의 해제) ② 문화재청 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 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의 장애 등으로 인하 여 해당 중요무형문 화재의 보유자로 적 당하지 아니한 경우	상 충 / 차 별	[삭제필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의 인정을 해제하는 조 항에 장애로 인한 사유 가 포함되어 있음 -일견 이 조항은 문화제 를 보호하고 바르게 전 승하자는데 올바른 식 견인지는 모르나 장애 인의 특성을 바르게 이 해하지 못하여 만든 조 항일 가능성이 높음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 어도 기술의 진보로 문 화재를 전승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만큼 이 조항은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	제31조(지정 또는 인정 의 해제) ② 문화재청 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삭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1 항에 따라 국립중앙 도서관에 납본(納本) 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자료로 한다. 1. ~ 6. (생략) 7. 점자자료, 녹음자 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새로운 형태 로 발간되는 기록물 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 서관자료	차 별	[개정필요]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출판사업자가 중앙도서 관에 도서를 납본할 때 장애인을 위한 납본도 이루어져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에 장애인 이 접근이 쉬워짐 -하지만 현재 시행령에 는 납본도서를 시각장 애인(약시, 전맹)에만 초점을 맞추어 청각, 지적장애인이거나 노령자 등 기타 독서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한 실 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있어야 함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 본) ①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 관에 납본(納本)하는 도 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 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 6. (생략)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영상자 료, 해석자료 등 장애 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법령		개정 사유의 기준	사 유	개선안 예시	담당
법령명	내 용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u>점자로</u>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 -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u>녹음하거나</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적 극 조 치	[개정필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장애인의 접근을 위하여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에 한정을 두어 청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의 접근이 필요한 저작물의 경우 과거 문자를 중심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디지털화가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음성이나 영상의 형태인 경우도 많아짐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u>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나 영상, 해설자료 등으로</u>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u>시각장애인</u>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 - 어문저작물을 <u>녹음하거나 영상, 해설자료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시각장애인</u> 등을 위한 전용 기록· <u>해석·가공</u> 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적권법 시행령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u>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등 기타장애인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제15조는 시각장애인만이 아닌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로 확대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법령		개정 사유의 기준	사 유	개선안 예시	담당
법령명	내 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적 극 조 치	[개정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및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내용도 진흥시책에 포함되어야 함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장애인 등 관람객의 이용시설 마련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국민체육 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적 극 조 치	[개정필요] -이 법의 목적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함시설의 설치와 운영만이 아닌 서비스와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다행히 법 제13조 제2항에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 조항을 자세히 보면 '시설 설치와 운영'에 맞추어져 있어 장애인체육지도 전문인 양성이나 서비스 부분은 소홀해질 수 있음 -따라서 법 제13조를 개정함과 동시에 법 제17조의 체육용구의 부분을 보완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지도자 양성 등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 용구 등의 생산 장려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 서비스, 전문인양성(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지원·양성의 장려 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법령명		개정 사유의 기준	사유	개선안 예시	담당
법령명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 - - 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외 각종 경기 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적극조치	[개정필요]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의 개정도 뒤따라야 함	제17조(체육 용구 등의 생산 지원 등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 - - - 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외 각종 경기 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 및 지도자 등 전문인력양성, 장애인 체육이용 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적극조치	[개정필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을 위한 규정이 있으나 미흡함 -즉, 청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 등으로 이용이 쉽지 않은 만큼 이러한 면을 좀더 세심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 거나 지도자 배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법령		개정 사유의 기준	사유	개선안 예시	담당
법령명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생략)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4.(생략)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적 극 조 치	[개정필요] -법 제6조를 개정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용을 새행령에 담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하며, 경우에 따라 소극적이니잡 시행규칙에 일부 내용을 담는 방법도 있음 -따라서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생략)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4.(생략)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u>8. 장애인을 지원(장애인 지도자 배치, 장애인 시설 및 제공할 서비스 등)</u> <u>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u>	문화체육관광부

2) 제도적 개선방안

가)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비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려야 하는 문화·예술활동은 같은 범주와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누려야 하는 문화·예술활동에 접근할 수 없다면, 바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은 결국 여가환경이라는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여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겠다.

(1) 환경의 변화

(가) 여가환경

경제성장만이 국가의 주된 목표가 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여가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 및 컴퓨터의 대중화로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 수요를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책적 환경은 새로운 여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여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⁶⁶⁾



[그림4] 국내 여가환경의 변화⁶⁷⁾

66)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p11

(나) 국민여가활동 추이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23가지 정도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3가지 정도가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함께 국민여가활동의 다양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호에 맞는 여가활동을 찾아서 참여하는 '선택형 여가활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웰빙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녹아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여가활동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로 휴식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50%를 넘음. 즉 TV시청, 영화보기, 목욕/샤우나/찜질방, 낮잠, 외식, 산책 등의 휴식형 여가가 주된 내용이다.⁶⁸⁾

또한 국민의 여가활동 트렌드중 유비쿼터스 여가의 활성화와 주도적 여가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2) 유비쿼터스 여가의 활성화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여가 활동의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제공해줌으로써 국민여가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여가활동은 이제 실내여가와 야외여가 그리고 무한대 공간인 사이버여가로 구분되어 지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어울리는 사이버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추세는 국민여가활동 조사 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서핑/채팅, 게임, 미니홈피/블로그 관리와 같은 인터넷 여가활동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에 국한되었던 유비쿼터스 여가가 점차 모든 세대계층으로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여가의 또 다른 모습은 모바일을 통한 여가생활로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바일 여가의 활성화는 모바일 서비스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⁶⁹⁾

67)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p11

68)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pp39-41.

69)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pp85-90.

<표 49> 연령별 인터넷 여가활동 참여율⁷⁰⁾

(단위 : %)

연령대	게임		인터넷서핑/채팅		미니홈피/블로그관리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10대	80.3	88.9	64.3	50.6	60.3	50.2
20대	60.8	75.5	66.7	72.1	59.1	62.5
30대	38.7	61.8	46.5	60.5	26.7	37.0
40대	27.4	52.8	27.8	53.4	9.8	25.3
50대	12.1	33.6	13.2	40.3	3.8	16.9
60대	2.4	9.8	3.5	5.3	0.9	2.0

(3) 주도적 여가활동의 증가

생활이 주단위로 점차 변화하면서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여가 라이프스타일(leisure life-style)이 등장하면서 일에 몰두하던 라이프스타일이 가족과 여가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여가 선용이 중요한 생활이슈가 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일반화되지 않은 신 여가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 또는 체험여행 상품 등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집주변 문화 시설의 확대로 일상적인 산책에서부터 등산, 레프팅, 캠핑, MTB, 전문 산악에 이르기까지 아웃도어 활동 참여 인구는 폭넓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캠핑캐라바닝(오토캠핑), 크루즈여행, 템플스테이 등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⁷¹⁾

이러한 여가환경의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문화·예술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 사례⁷²⁾

(1) 미국 문화정책의 기본 목표 및 특징

미국에서 문화정책은 크게 다음의 6가지의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자유, 기회의 평등 강조

7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2008

71)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pp92-103.

72) 이 부분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의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중 pp101-122의 내용을 요약함.

- ② 접근성 확대
- ③ 자선후원제도의 강화
- ④ 예술 교육의 중요성 강조
- ⑤ 문화/인종적 다양성(diversity) 강화
- ⑥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이러한 6가지의 목표는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문화·예술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 지원정책

미국의 장애인 지원정책은 '지방분권적 특성', '시설운영기관에 의한 서비스 전달',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 강조'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문화·예술활동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불평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적 기본권은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보호 아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슈가 문화예술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모든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이벤트 등은 관객 또는 방문자만이 아닌,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또는 전문가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의 준비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여시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상에서 볼 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으로 미국의 문화·예술 담당자에게 요구되었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의 방향의 중심으로 삼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표 50> 미국의 장애인지원 프로그램 사례⁷³⁾

■ **뉴욕의 Theater Access Project (TAP) 프로그램**

- 장애인들이 뉴욕시의 공연예술을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 TAP는 6,000명의 장애인들에게 공연 관람이 편리한 좌석을 예약하여 할인 가격으로 제공
- 뉴욕주 예술평의회와 협력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공연 제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극장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Leadership Initiatives 가운데 AccessAbility**

- Leadership Initiative는 예술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껏 소외되었던 예술 분야나 집단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기금 마련의 가능성을 타진
- AccessAbility는 기존의 여러 예술 프로그램을 노인 및 장애인, 장기 입원 환자 등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이들이 예술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표를 둠
- 예를 들어 NEA의 AccessAbility 부서는 미국의 보건후생부와 제휴하여 노인들에게 예술이 미치는 긍정적인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3개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연구에 대해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nd Guttman Foundation이 연구비를 지원

■ **YouthReach Ohio(미국 오하이오 예술위원회)**

- YouthReach Ohio는 오하이오 예술위원회에서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At-Risk Youth를 대상으로 함
- At-Risk Youth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를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장애인, 학교 중퇴자, 홈리스, 폭력배, 임신부, 미혼모 등이 포함
- YouthReach Ohio는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들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예술 경험을 가질 경우, 비행이 줄어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며, 주어진 과제를 끝마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함
- 2년간에 걸쳐 기금이 주어져지며, 첫 해 말 보고서에 의해 2년차 기금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예술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들 중 한 해 운영예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단체들만이 사회봉사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지원할 수 있는 경쟁적인 기금이며, 지원자는 한 해당 최소 \$25,000에서 최대 \$35,000까지 신청 가능

■ **New Jersey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s Grant for Recreation: '장애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Recreation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기관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주정부 지원금
- 지원목적:
 - ① 장애인의 사회일원으로서 소속감 강화
 - ② 장애인의 레크리에이션 또는 레저활동 참여를 위한 최고의 환경 조성
 - ③ 장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 공급자와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을 지원
- 총 지원금액 및 지원금 분배: 연간 총 650,000달러의 지원금이 75개 단체 및 지방정부에게 수여됨

7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의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p108

<표 51> 한국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제도개선 방향

구분	미국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접근성	모든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이벤트 등은 관객 또는 방문자만이 아닌,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모든계층이 접근 및 참여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	모든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 전문가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적극적인 참여	장애인 또는 전문가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의 준비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여시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전조율과 시행후 문제점에 대한 의견반영을 적극 반영한다.

다) 체육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 개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이동로, 탈의실, 화장실, 관람석 등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부분 학교 체육시설 또한 지역주민 특히 장애인이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폐쇄적이다. 또한 민간시설의 대부분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환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과 같은 특정 사회계층이 체육시설의 부족 및 접근성 결여로 인해, 참가를 제한 받게 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 참가가 저해되었다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향유해야 하는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에서 박탈된 상태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소외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논의에 기초한다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적 접근은 새로운 전용 시설의 건립보다 전국에 산재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로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일관성 있고 합리적 정책수립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재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 각각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기 미비하다 할 수 있다. 향후 기존의 노후 건물과 더불어 새로이 건립될 신축시설 모두는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재정 및 개정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어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는 곳도 대구, 전북, 충남,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서울 종로, 목포시 등 전국적으로 20여개 자치단체에 이른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별로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규모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6조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도 1조(목적), 2조(정의), 3조(자치단체장의 책무), 4조(동호인지원), 5조(경비의 지원), 6조(준용)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조례의 조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조 자치단체장의 책무 규정과 5조 경비의 지원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책 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경비의 지원에서도 동호회와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장애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조문별 구체성이 없다.

물론 법제의 흐름상 이들의 구체화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형식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에 대한 경험은 이미 장애인체육진흥조례와 거의 완벽하게 유사한 생활체육진흥조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선 시에는 가능하면 단체장의 책무규정이나 경비지원 규정에서 서술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문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애인체육 행정전달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에서의 장애인체육은 보건복지부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체육전담부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장애인체육업무가 아직도 체육담당부서가 아닌 복지분야에서 처리되고 있는 곳도 많다. 이러한 행정전달체계 구조는 정부의 정책지침이 일반 장애인들까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단절을 부르게 된다. 비장애인 체육에서의 체육행정전달체계는 정부 - 광역 시도 - 기초자치단체 - 읍면동 - 주민 또는 정부 - 대한체육회 - 시도체육회 - 시군체육회 - 읍면동체육회 - 주민으로 일사분란하게 전달되지만 장애인체육은 정부 - 광역 시도 또는 정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 시도장애인체육회의 2~3단계 구조에서 단절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개선방법으로 전담조직 설치가 바람직하나 인력구조상 불가능하다면 전담공무원제가 필요하고, 장애인체육회 지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부터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활용은 재가 장애인들을 체육활동 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자 필수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노인체육전담지도자를 포함하여 전국 시군단위에 1,500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16개 시도단위에 약 100여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장애인체육지도는 그 특성상 일반 체육인이 쉽게 지도하기가 어려워 전문능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필요하나 이 또한 현 제도 내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이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유인하고 지속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적어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2~3명 이상씩은 기본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국가 공인제도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5) 장애인 동호인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호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장애인 생활체육의 동호인 클럽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자생력은 낮으며, 현실적으로는 활동 지원금을 받아야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 동호인 스포츠클럽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의 경제능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동호인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국가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활동을 통한 참여인구의 저변확대 및 클럽 활성화와 클럽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 동호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동호인스포츠클럽에게 지원하는 유일무이한 최초의 사업으로 93%의 장애인들이 재가상태임을 감안하여 이들을 체육활동 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어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회적 기부에 대한 기부자 수혜를 제공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동호인 스포츠클럽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감안하여 클럽을 공적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기준 제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의 문제점 및 기준 제안

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타 법률과의 적용의 우선순위

(1) 배경

문화·예술·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만 적용할 것인지, 제18조를 함께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적용의 혼란은 전장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 기준)에서 따르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표 5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 비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임산부 휴게시설

위의 표에서 비교해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무대 단상에 대한 접근이 추가된 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체육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누락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따르도록 한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공연장·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제21조(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점에서의

법 적용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봄으로 제정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조항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여러 조항 가운데 우선 적용 조항을 선별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단계적 적용의 범위를 정리함으로써 효과적인 법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점에서의 적용

법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의 요건과 효과이다. 어디(요건, 상황, 장소)에 적용(효과)되는 조항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률요건에 따라 적용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비하면, 편의시설에 관한 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접근·이용에 관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내부에서는 일반조항이고, 제24조와 제25조는 겹쳐지는 범위 내에서 특별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위 조항들은 특별법이나 특별조항이 일반법이나 일반조항을 배제하면서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은 일반대로, 특별은 특별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법대로 원래의 취지에 따라 적용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 부족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법이나 일반조항이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되, 일반법이나 일반조항의 부족한 부분을 특별조항이 보완해주는 것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제18조와 제24조 및 제25조에 적용하게 될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은 제18조를 따르고, 세부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제25조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24조와 제25조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화장실과 같이 제18조와 제24조 모두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는 늘어나지만, 2009년 4월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2009년 4월 이전의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적용이 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대한 고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취지는 문화·예술·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제18조(시설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되, 시설물로서가 아닌 문화·예술·체육의 프로그램 등의 참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제24조와 제25조에서 다루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제21조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의 구분은 제18조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일괄적으로 정해주지 않을 경우 각 영역의 시설마다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점, 문화·예술·체육영역의 경우 시설물로서의 물리적 접근에 대한 정당한 편의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등에 참여와 활동도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차별금지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관한 정당한 편의는 별도의 조항으로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제18조를 적용하되, 무대 및 단상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점자블록 등 기본적인 유도 및 안내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조항의 우선 적용 순위에 대한 고려

문화·예술·체육에서의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문화·예술·체육에서의 차별이 시설의 이용 및 접근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등의 참여와 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설의 이용 및 접근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와 제21조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정당한 편의 가운데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추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관람석, 탈의실, 샤워실 외에 별도의 체육시설이나 설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차별이 시설의 이용 및 접근이 아닌 프로그램 등의 참여와 활동에서의 분리·배제·제한·거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를 먼저 적용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아닌 참여와 활동의 부분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25조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어느 경우이든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5) 단계적 적용에 대한 고려

문화·예술·체육시설의 경우 시행령 별표 4와 별표 5에 따라 단계적 적용이 이루어진다.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문화·예술·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18조를 적용하는가 아니면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적용 시기와 대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시설들은 모두 제외되며,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할 경우 기존 시설이라도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나, 누락되는 시설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화상영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스크린 기준으로 300석 이상의 상영관만 적용이 되지만,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시설은 좌석 수에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적용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분명하게 적용시기와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제18조의 적용과 제24조 및 제25조의 적용에 따른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서의 영화관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좌석 수에 관계없이 정당한 편의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2009년 4월 11일 이후의 신축, 증축, 개축된 시설이어야 한다. 반면에,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2015년 이후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영화관은 모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당한 편의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할 경우, 제18조에 비해 제공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매우 줄어들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11일 이전의 문화예술·체육시설에 한 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3> 문화·예술·체육시설의 단계적 적용범위

조항	단계적 범위
<p>시행령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 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 시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 시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p>시행령 별표 5 체육시설의 단계적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p>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단계적 적용</p>	<p>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나) 시설별 적용 가능한 정당한 편의의 구분 불명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와 관련 시행령에 의하면,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화시설 가운데, 도서관에서만 제공해야 하는 것, 관람 및 전시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 등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별로 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와 제24조 및 시행령 제15조와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중복되기도 하지만, 시설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체육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 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종류로서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 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편의의 종류를 모든 시설에 적용해야 하는지, 시설별로 어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물론 정당한 편의제공의 성격상, 미리 준비하고 갖추 둘 수도 있지만,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기에 미리 정당한 편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갖추어 두기를 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비슷한 지원을 하는 편의의 종류를 종류별로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원 서비스별로 한 두 개의 편의의 종류만 갖추면 되는가의 문제이다. 화상전화기와 통신중계용 전화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두 전화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되는가도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법률의 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설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최대가 아니라 최소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안)

가) 전문가의 제안

정당한 편의 가운데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관한 정당한 편의는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전문가의 제안을 받았다. 시각과 청각장애를 선정한 이유는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서 가장 소외받는 장애 영역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서의 대부분의 정당한 편의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가운데 시설별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조정, 둘째,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제안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게 에게 필요한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를 표로 정리하였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 내용

<표 54>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 ⁷⁴⁾	전문가 제안	
체육 시설	생활 체육 시설	구기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보청기기(FM보청기) 영상전화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장애인지도자 배치 이용체험프로그램 운영	자막TV, 전광판, 경기 시작과 끝, 파울 등 음향 및 음성 신호를 알리는 견광등, 화장실내 알림표시
	생활체육관 (구기종목과 수영, 보울링, 헬스,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종목의 체육시설이 복합설치된 체육관-올림픽기념국민생 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등)	보청기기(개인형) 보청기기(FM보청기) 영상전화기 접근가능한 웹사이트 수화통역 음성통역 장애인지도자 배치 이용체험프로그램 운영	자막TV, 전광판, 경기 시작과 끝, 파울 등 음향 및 음성 신호를 알리는 견광등, 화장실내 알림표시	
	관람 체육 시설	야구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등	보청기기(FM보청기) 영상전화기 접근가능한 웹사이트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자막TV, 전광판, 화장실내 알림표시

74) 해당 표에 표기된 정당한 편의의 용어의 해설은 부록 3참조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 ⁷⁴⁾	전문가 제안	
문화 시설	도서관	종합자료실	보청기기(개인형) 수화통역 음성통역	
		디지털자료실		
		자유열람실		
		문화강좌실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강당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기타 설비 (도서반납대, 도서반납함, 복사기, 좌석배치기, 자료검색대 등등)	화상전화기	
		안내실	보청기기(개인형) 수화통역 음성통역	
		식당 및 매점		자막TV(휴게실 등) 화장실내 알림표시
	박물관/미술관	전시실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체험실(어린이 박물관)	수화통역 음성통역	
		문화강좌실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강당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매표실 및 매표시스템	수화통역 음성통역	
		안내실	보청기기(개인용) 화상전화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식당 및 매점			자막TV(휴게실 등) 화장실내 알림표시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제공 ⁷⁴⁾	전문가 제안	
문화 시설	공연장	공연장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문화강좌실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강당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안내실	보청기기(개인용) 화상전화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분장실 및 공연준비실		
		식당 및 매점		자막TV 화장실내 알림표시
	영화관	상영관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안내실	보청기기(개인용) 화상전화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매표소 및 매점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TV 화장실내 알림표시
	지방문 회원	문화강좌실	보청기기(FM보청기) 수화통역 음성통역 자막제공	

(2)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의 내용

<표 55>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 ⁷⁵⁾	전문가 제안
체육 시설	생활 체육 시설 구기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점자블록 안전보행로 음성유도기 점자촉지도 점자안내책자 확대활자 안내책자 각 실별 점자표지판 전광판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대경 망원경 시각장애이용 체육용 기구 비치 (골볼공 등) 시각장애인 안내가 가능한 안내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육 전문가 배치(특수 체육 전공자) 시각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골볼 등)	
생활 체육 시설	생활체육관 (구기종목과 수영, 보울링, 헬스,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종목의 체육시설이 복합설치된 체육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등)	점자블록 안전보행로 음성유도기 점자촉지도 점자안내책자 확대활자 안내책자 각 실별 점자표지판 전광판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대경 망원경 시각장애이용 체육용 기구 비치 (골볼공 등) 시각장애인 안내가 가능한 안내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육 전문가 배치(특수 체육 전공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골볼 경기 등)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 ⁷⁵⁾	전문가 제안
체육 시설	관람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등	점자블록 안전보행로 음성유도기 점자촉지도 점자안내책자 확대활자 안내책자 각 실별 점자표지판 전광판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대경 망원경	
문화 시설	도서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자유열람실 문화강좌실 강당 기타 설비 (도서반납대, 도서반납함, 복사기, 좌석배치기, 자료검색대 등등) 안내실 식당 및 매점	점자블록 안전보행로 음성유도기 점자촉지도 점자안내책자 확대활자 안내책자 각 실별 점자표지판 전광판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대경 망원경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검색용 컴퓨터 점자정보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점자프린터 등 시각장애인 안내가 가능한 사서 점자자료 확대문자자료 녹음도서 대면낭독 프로그램	

75) 해당 표의 정당한 편의의 용어 정의는 부록3 참조.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 ⁷⁵⁾	전문가 제안
문화 시설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점자블록	
		체험실(어린이 박물관)	안전보행로	
		문화강좌실	음성유도기	
		강당	점자촉지도	
		매표실 및 매표시스템	점자안내책자	
		안내실	확대활자 안내책자	
		식당 및 매점	각 실별 점자표지판	
			전시물에 대한 점자 및 확대 활자 정보	
			음성정보(해설 및 나레이션)	
			전시물에 대한 점자 표기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이 확보된 사이트	
			확대경	
			망원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점자블록	
		문화강좌실	안전보행로	
		강당	음성유도기	
		안내실	점자촉지도	
		분장실 및 공연준비실	점자안내책자	
		식당 및 매점	확대활자 안내책자	
			각 실별 점자표지판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이 가능한 시설 설치	
			웹 접근성 확보된 사이트	
			망원경	
			확대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영화관	상영관	상영관	화면해설 및 자막 음성 해설 설비	
		안내실	점자, 확대 활자 안내책자	
			망원경	
			확대경	
		매표소, 매점	시각장애인 안내가 가능한 안내인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 ⁷⁵⁾	전문가 제안
문화 시설	지방 문화원	점자블록 안전보행로 음성유도기 점자촉지도 점자안내책자 확대활자 안내책자 각 실별 점자표지판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이 준수된 사이트 확대경 망원경	

2) 각 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안

(1) 문예회관

문예회관에 대한 각국의 정당한 편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와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AG)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호주의 경우 「장애차별법」(DDA)과 호주표준국의 「호주 표준」(Australian Standards), 독일의 「장애인평등법」(BGG)과 「독일공업기준」(DIN)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추가로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위에서 제안된 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문예회관(공연장 및 관람장)의 경우 미국의 법률에는 휠체어 사용자 좌석의 설치율 뿐 아니라 설치를 위한 위치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다. 호주의 기준에는 조명과 안내표시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휴게실의 자막TV 등이 추가되었다.

<표 56> 문예회관의 정당한 편의 비교 (한국의 경우 ○=의무, ●=권장사항을 의미)

정당한 편의 ⁷⁶⁾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G	DDA/AS	BGG/DIN	
주출입구접근로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		○	○	
출입구(문)	○	○				
복도	○	○				
계단 또는 승강기	○	○	○		○	
대변기	○	○		○	○	
소변기	○	○				
세면대	○	○		○	○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	○				○
유도및안내설비	○	○			○	
경보및피난설비	○	○				
객실,침실						
휠체어관람석설치	○	○	○		○	
휠체어관람석 위치			○			

정당한 편의 ⁷⁶⁾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G	DDA/AS	BGG/DIN	
FM보청시스템			○			○
열람석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		
임산부등휴게소	●	●				
무대단상 접근	○		○			
활동보조인력	○					○
휠체어	○					
점자안내책자	○					○
보청기	○					○
문화예술활동정보제공	○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					○
수화통역	○					○
음성통역	○					○
점자자료	○					
점자정보단말기	○					
큰활자문서	○					○
확대경	○					○
망원경						○
녹음테이프	○					
표준텍스트파일	○					
자막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
장애인용복사기	○			○		
화상전화기	○					○
통신중계용서비스	○					
우체통				○		
유료전화기				○		
조명				○		
안내표지				○		
서비스시설					○	
음성유도기						○
점자축지도						○
각실에 점자표지						○
화면해설 및 자막음성해설						○
자막TV(휴게실내)						○

(2) 도서관

도서관의 경우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대출장소, 카드목록(도서목록카드)과 잡지진열대에 대한 접근, 서고의 높이 등에 대해 정해져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전화기, 우체통과 함께 조명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검색 가능한 컴퓨터의 설치, 망원경의 비치 등이 추가되었다.

<표 57> 도서관의 정당한 편의 비교 (한국의 경우 공공도서관/도서관으로 구분)⁷⁶⁾

정당한 편의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 G	ADA/AS	BGG/DIN	
주출입구접근로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		○	○	
출입구(문)	○	○		○		
복도	○	○		○		
계단 또는 승강기	○	○	○		○	
대변기	○	○		○	○	
소변기	●/○	●/○				
세면대	●/○	●/○		○	○	
점자블록	●/○	○/●				○
유도및안내설비	●	●			○	
경보및피난설비	●	●				
휠체어관람석설치						
FM보청시스템						○
열람석	○	○	○		○	
대출장소			○			
카드목록과 잡지 진열			○			
서고 높이			○			
접수대작업대	●/○	○/●				
매표소판매키움료대				○		

76)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휠체어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전화기, 우체통, 임산부 휴게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7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서관은 1,000제곱미터미만의 공공도서관(근린생활시설)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교육시설)로 구분되며, 각각 제공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다르다.

정당한 편의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 G	ADA/AS	BGG/DIN	
전화기				○		
우체통				○		
조명				○		
임산부등휴게소	/●	/●				
무대단상 접근	○					
활동보조인력	○					○
할체어	○					
안내표지판				○		
점자인내책자	○					
보청기	○					○
문화예술활동정보제공	○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					
수화통역	○					○
음성통역	○					○
점자자료	○					
점자정보단말기	○					○
큰활자문서	○					
확대경	○					○
망원경						○
녹음테이프	○					
표준텍스트파일	○					
자막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
장애인용복사기	○			○		
화상전화기	○					
통신중계용서비스	○					
서비스시설					○	
음성유도기						○
점자촉지도						○
시각장애인이 검색가능한 컴퓨터						○
점자프린터						○
자막TV(휴게실내)						○

(3) 박물관/미술관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시설의 경우 미국의 기준에는 휠체어 관람석 설치 뿐 아니라 위치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며, 이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내에 관람시설이 있을 경우의 예로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전시실 각 실에 점자표지 부착, 각 전시물에 대한 점자정보 제공, 전시물에 대한 음성정보제공, 휴게 공간에 자막이 나오는 텔레비전 비치 등이 있었다.

<표 58>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비교

정당한 편의 ⁷⁸⁾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 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G	ADA/AS	BGG/DIN	
주출입구접근로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		○	○	
출입구(문)	○	○				
복도	○	○				
계단 또는 승강기	○	○	○		○	
대변기	○	○		○	○	
소변기	●	●				
세면대	●	●		○	○	
점자블록	○	○				○
유도및안내설비	●	●			○	
경보및피난설비	●	●				
휠체어관람석설치			○			
휠체어관람석 위치			○			
FM보청시스템			○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임산부등휴게소	●	●				
무대단상 접근	○		○			
활동보조인력	○					○
휠체어	○					
점자안내책자	○					○
보청기	○					○

정당한 편의 ⁷⁸⁾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G	ADA/AS	BGG/DIN	
문화예술활동정보제공	○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					
수화통역	○					○
음성통역	○					○
점자자료	○					
점자정보단말기	○					
큰활자문서	○					○
확대경	○					○
망원경						○
녹음테이프	○					
표준텍스트파일	○					
자막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
장애인용복사기	○			○		
화상전화기	○					○
통신중계용서비스	○					
우체통				○		
유료전화기				○		
조명				○		
안내표지				○		
서비스시설					○	
음성유도기						○
점자촉지도						○
각실에 점자표지						○
전시물 점자 안내						○
음성정보 제공						○
자막TV(휴게실내)						○

78)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휠체어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전화기, 우체통, 임산부 휴게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경우 미국의 기준에는 공간 확보라는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기준이 포함 되어 있으며, 그 밖에 테이블, 사우나실, 회의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영장이 있으면 이동형 수중 리프트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화재방지시설, 독일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전광판의 설치가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전광판에 대한 음성정보제공이 추가되었다.

<표 59> 체육시설의 정당한 편의 비교

정당한 편의 ⁷⁹⁾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G	ADA/AS	BGG/DIN	
공간확보			○			
전화			○	○		
테이블			○			
회의실			○			
주출입구접근로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		○	○	
출입구(문)	○	○	○			
창문			○			
복도	○	○				
계단 또는 승강기	○	○	○	○	○	
대변기	○	○	○	○	○	
소변기	○	○				
세면대	○	○	○	○	○	
욕실			○			
샤워실탈의실			○	○		
사우나실			○			
창고			○			
점자블록	○	○				○
유도및안내설비	○	○	○		○	
경보및피난설비	○	○	○			
휠체어관람석설치	○	○	○	○	○	
휠체어관람석 위치						
FM보청시스템				○		○
열람석			○			

정당한 편의 ⁷⁹⁾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G	ADA/AS	BGG/DIN	
접수대작업대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	○		
임산부등휴게소	●	●				
무대단상 접근	○					
입수경사로/계단	○		○	○		
걷는풀			○			
탈의사위보조시설	○					
이동형수중리프트			○			
활동보조인력	○					○
휠체어	○					
점자인내책자	○					○
보청기	○					○
문화예술활동정보제공	○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					○
수화통역	○					○
음성통역	○					○
점자자료	○					
점자정보단말기	○					
큰활자문서	○					○
확대경	○					○
망원경						○
녹음테이프	○					
표준텍스트파일	○					
자막	○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장애인용복사기	○					
화상전화기	○					
통신중계용서비스	○					
화재방지시설				○		
조명				○		
식탁과 주변공간				○		
서비스시설					○	
음성유도기						○
각실별 점자표지						○
전광판에 대한 음성안내						○
점자촉지도						○

정당한 편의 ⁸⁰⁾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전문가 제안
	장애인차별 금지법	편의증진법	ADA/ADAAG	ADA/AS	BGG/DIN	
좌식배구지주	○					
골볼골대	○					○
경광등						○
자막TV						○
전광판						○

3) 각 대상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안

대상시설별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각 대상시설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나 필요한 정당한 편의도 있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도 망원경 등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가 있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대상시설별로 편의의 종류를 구분해 주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정당한 편의의 종류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에 대해 지역사회를 모니터링 하면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⁸¹⁾ 본 보고서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도 추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안을 작성하였다.

79)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휠체어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전화기, 우체통, 임산부 휴게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80)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휠체어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전화기, 우체통, 임산부 휴게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81) "공공기관 12곳 모니터링 조사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0

<표 60> 대상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안

근거	정당한 편의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⁸²⁾	주출입구접근로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	○	○
	출입구(문)	○	○	○	○
	복도	○	○	○	○
	계단	○	○	○	○
	승강기	○	○	○	○
	대변기	○	○	○	○
	소변기	○	○	○	○
	세면대	○	○	○	○
	샤워실, 탈의실				○
	점자블록	○	○	○	○
	유도및안내설비	○	○	○	○
	경보및피난설비	○	○	○	○
	휠체어관람석설치	○			○
	FM보청시스템	○	○	○	○
	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임산부등휴게소	○	○	○	○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대단상 접근	○			
	입수경사로/계단				○
	활동보조인력	○	○	○	○
	휠체어	○	○	○	○
	점자안내책자	○	○	○	○
	보청기	○	○	○	○
	문화·예술활동정보제공	○		○	○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	○	○	○
	수화통역	○	○	○	○
	음성통역	○	○	○	○
	점자자료			○	
	점자정보단말기		○		

근거	정당한 편의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장애 인차 별금 지법	큰활자문서	○		○	○
	확대경	○	○	○	○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		
	자막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	○	
	장애인용복사기		○		
	화상전화기	○	○	○	
	통신중계용서비스				○
해외 기준 및 전문 가 의 견	사우나실				
	조명	○	○		
	서비스시설	○	○	○	○
	음성유도기	○	○	○	
	각실별 점자표지	○	○	○	○
	전광판에 대한 음성안내	○			○
	망원경	○	○	○	○
	시각장애인이 검색가능한 컴퓨터		○		
	화면해설 및 자막음성해설	○			
	좌식배구지주				○
	골볼골대				○
	이동형수중리프트(수영장)				○
	휠체어사용자 좌석 위치	○	○		○
	도서관 서고 높이		○		
	경광등				○
	자막TV(휴게실)	○	○	○	○
	전광판				○
	전시물 점자안내 및 음성정보제공			○	
	그림 또는 사진으로 된 안내 책자 ⁸³⁾	○	○	○	○

82)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휠체어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전화기, 우체통, 임산부 휴게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83)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위한 정당한 편의로는 “그림 또는 사진으로 된 안내책자”, “인적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인적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활동보조인력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안내책자만 포함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외국의 법제도를 통해 정당한 편의의 의미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과 개선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체육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연구이므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제외적용, 즉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인 연구만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당한 편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을 경우 제공자의 입장에서 편리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와 법체계상 포괄적으로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정당한 편의에서만큼은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사)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건축을 만나다. 2010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미국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 Accessibility Guidelines :ADAAG)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07,
국가인권위원회.

Direkt 56/2001 : Improving Transport at the Local Authority Level -
Computerized surveying and assessment of barriers at existing or new
buildings, transport facilities and environment in the pulic domain.

Karen P. Depauw & Susan J. Gavron, Disability Sport, pp17, 2004

U.S.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ITED STATES ACCESS BOARD,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2004

강병근, 각국의 편의시설 법규집(독일), 보건복지부, 1999,

건국대학교,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05

건축기본법, 2010

건축법, 2010

건축장벽법 접근성 가이드라인(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
ABAAG)

독일 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2002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2002 : BGG)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 RA)

박용환 외 3명, 배리어프리 디자인, 기문당, 2008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2007, 국가인권위원회

배용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와 실천과제”(2009)

변용찬 외 5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 2009

연방접근성표준기준’(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윤석진,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외국법제연구

윤석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최근동향과 전망, 입법평가연구센터, 2008년 겨울호

이노 건축사 사무소, 실내·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이용가능환경 조성 매뉴얼, 2009년 12월

일본「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안」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10

장애인고용차별예방가이드, 2008. 한국고용촉진공단.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한국DPI, 200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0

장애인차별이행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장애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보건복지부, 2009), p.49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200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008

호주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

호주표준국, 호주표준, 2001

홍성대 외 3명 ,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009

부 록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 이행상황 실태조사표
-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10년/2012년 단계적 범위
3.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정당한 편의 용어 설명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 이행상황 실태조사표

1-1. 관람시설 실태조사표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접근로	1.1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1.2m이상입니까?			
	1.1.1 (BF기준)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이상입니까?			
	1.2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1.2.1 (BF기준)	접근로의 기울기는 24분의 1이하입니까?			
	1.3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근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였습니까?			
	1.4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였습니까?			
2.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입니까?(평행주차의 경우 깊이 6m이상)			
	2.2.1 (BF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이고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3.주출 입구	3.1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턱이나 계단)가 2cm이하입니까?			
	3.1.1 (BF기준)	주출입구에 단체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합니까?			
	3.2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3.3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3.3.1 (BF기준)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3.4	주출입구와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0.8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3.4.1 (BF기준)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점수	
4.복도	4.1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2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1.1 (BF기준)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5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2	복도에 2cm이상의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4.3	복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4.3.1 (BF기준)	복도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5.층간 이동	5.1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른 층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1.1 (BF기준)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2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5.2.1 (BF기준)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6.승강기 및 계단	6.1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6.2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6.2.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버튼의 크기는 2cm이상입니까?			
	6.3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1.6m(기존건물은 1.1m)이상, 깊이 1.35m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3.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1.6m이상, 깊이 1.4m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4	계단의 손잡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7. 장애 인용 화장실	7.1	장애인용화장실이 남녀 별도로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7.1.1 (BF기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2층이상의 시설일 경우 전체층수의 50%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2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은 0.8m이상입니까?			
	7.2.1 (BF기준)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출입문은 1.0m이상입니까?			
	7.3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칸은 폭1.4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변기 전면에 1.4m×1.4m의 회전공간이 있습니까?(기존 시설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7.4	대변기 한쪽에는 수직손잡이와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수평손잡이가 회전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7.5	회전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측면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0.75m이상의 공간이 있습니까?			
	7.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0.85m이하, 하단 높이는 0.65m이상이며, 세면대 하부에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안내 및 유도시설	8.1	점자블록은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표준형 황색 점형블록과 4개의 돌출선을 가진 표준형 황색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2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부분, 장애인용 승강기 버튼 앞,화장실 입구 등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까?			
	8.3.1 (BF기준)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8.4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까?			
	8.4.1 (BF기준)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9. 관람석	9.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1%이상 설치하고 있습니까?			
	9.1.1 (BF기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의 2%이상 설치하고 있습니까/ /			
	9.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입니까?			
	9.2.1 (BF기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이되,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을 설치하고 있고,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하고 있습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영역	
10.매표소 자동 판매기, 음료대	10.1	매표소의 바닥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이며, 하부의 높이는 0.65m이상, 깊이는 0.45m이상으로 설치하되, 높이조절형 열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0.1.1 (BF기준)	매표소의 바닥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이며, 하부의 높이는 0.65m이상, 깊이는 0.45m이상으로 설치하되, 0.3m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설치하였습니까?			
	10.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입니까?			
	10.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입니까?			
11.임산부 휴게시설	11.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1.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이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12. 의사 소통 및 정보접근	12.1	시설의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2.2	장애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점자자료, 큰 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녹음테이프, 수화통역,자막 등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까?			
	12.3	장애인이 비전자정보를 이용하는 필요한 경우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시, 장애인용복사기 등 편의를 제공합니까?			
	12.4	비전자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 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등 인적, 물적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합니까?			
13.문화, 예술의 정당한 편의제공	13.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였습니까?			
	13.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합니까?			
	13.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합니까?			
	13.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합니까?			

1-2. 도서관 실태조사표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접근로	1.1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1.2m이상입니까?			
	1.1.1 (BF기준)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이상입니까?			
	1.2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1.2.1 (BF기준)	접근로의 기울기는 24분의 1이하입니까?			
	1.3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근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였습니까?			
	1.4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였습니까?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입니까?(평행 주차의 경우 깊이 6m이상)			
	2.2.1 (BF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이고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3.주출입구	3.1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턱이나 계단)가 2cm이하입니까?			
	3.1.1 (BF기준)	주출입구에 단체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합니까?			
	3.2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3.3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3.3.1 (BF기준)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3.4	주출입구와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0.8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4.복도	3.4.1 (BF기준)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4.1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2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1.1 (BF기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5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2	복도에 2cm이상의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4.3	복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4.3.1 (BF기준)	복도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5. 층간 이동	5.1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른 층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1.1 (BF기준)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2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5.2.1 (BF기준)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6.1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6.승강기 및 계단	6.2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6.2.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버튼의 크기는 2cm이상입니까?			
	6.3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1.6m(기존건물은 1.1m)이상, 깊이 1.35m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3.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1.6m이상, 깊이 1.4m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4	계단의 손잡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7.장애 인용 화장실	7.1	장애인용화장실이 남녀 별도로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7.1.1 (BF기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2층이상의 시설일 경우 전체층수의 50%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2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은 0.8m이상입니까?			
7.2.1 (BF기준)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출입문은 1.0m이상입니까?			
7.3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칸은 폭1.4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변기 전면에 1.4m×1.4m의 회전공간이 있습니까?(기존 시설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7.4		대변기 한쪽에는 수직손잡이와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수평손잡이가 회전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7.5		회전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측면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0.75m이상의 공간이 있습니까?			
7.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0.85m이하, 하단 높이는 0.65m이상이며, 세면대 하부에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8.유도 및 안내시설	8.1	점자블록은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표준형 황색 점형블록과 4개의 돌출선을 가진 표준형 황색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2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부분, 장애인용 승강기 버튼 앞, 화장실 입구 등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까?			
	8.3.1 (BF기준)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8.4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까?			
	8.4.1 (BF기준)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9.열람석	9.1	장애인용 열람석이 1%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9.1.1 (BF기준)	장애인용 열람석이 2%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9.2	장애인용 열람석의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이며, 하부의 높이는 0.65m이상, 깊이는 0.45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9.2.1 (BF기준)	장애인용 열람석의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이며, 하부의 높이는 0.65m이상, 깊이는 0.45m이상으로 설치하되, 높이조절형 열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0.접수대	10.1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이며, 하부의 높이는 0.65m이상, 깊이는 0.45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11.임산부 휴게시설	11.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1.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이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2.의사 소통 및 전자정보	12.1	시설의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2.2	장애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점자자료, 큰 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녹음테이프, 수화통역,자막 등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까?			
	12.3	장애인이 비전자정보를 이용하는 필요한 경우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시, 장애인용복사기 등 편의를 제공합니까?			
	12.4	비전자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 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등 인적, 물적 의사 소통 수단을 제공합니까?			
13. 문화, 예술의 정당한 편의제공	13.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였습니까?			
	13.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합니까?			
	13.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합니까?			
	13.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합니까?			

1-3. 전시시설 실태조사표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접근로	1.1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1.2m이상입니까?			
	1.1.1 (BF기준)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이상입니까?			
	1.2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1.2.1 (BF기준)	접근로의 기울기는 24분의 1이하입니까?			
	1.3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근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였습니까?			
	1.4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였습니까?			
2.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입니까?(평행 주차의 경우 깊이 6m이상)			
	2.2.1 (BF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이고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3.주출 입구	3.1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턱이나 계단)가 2cm이하입니까?			
	3.1.1 (BF기준)	주출입구에 단체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합니까?			
	3.2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3.3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3.3.1 (BF기준)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3.4	주출입구와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0.8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3.4.1 (BF기준)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4.복도	4.1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2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1.1 (BF기준)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5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2	복도에 2cm이상의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4.3	복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4.3.1 (BF기준)	복도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5.층간 이동	5.1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른 층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1.1 (BF기준)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2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5.2.1 (BF기준)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6.승강기	6.1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6.2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6.2.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버튼의 크기는 2cm이상입니까?			
	6.3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1.6m(기존건물은 1.1m)이상, 깊이 1.35m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3.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1.6m이상, 깊이 1.4m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4	계단의 손잡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7. 장애인 용 화장실	7.1	장애인용화장실이 남녀 별도로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7.1.1 (BF기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2층이상의 시설일 경우 전체층수의 50%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2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은 0.8m이상입니까?			
	7.2.1 (BF기준)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출입문은 1.0m이상입니까?			
	7.3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칸은 폭1.4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변기 전면에 1.4m×1.4m의 회전공간이 있습니까?(기존 시설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7.4	대변기 한쪽에는 수직손잡이와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수평손잡이가 회전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7.5	회전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측면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0.75m이상의 공간이 있습니까?			
	7.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0.85m이하, 하단 높이는 0.65m이상이며, 세면대 하부에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유도 및 안내시설	8.1	점자블록은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표준형 황색 점형블록과 4개의 돌출선을 가진 표준형 황색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2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부분, 장애인용 승강기 버튼 앞, 화장실 입구 등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까?			
	8.3.1 (BF기준)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8.4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까?			
	8.4.1 (BF기준)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9.매표소, 자동 판매기, 음료대	9.1	매표소의 바닥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이며, 하부의 높이는 0.65m 이상, 깊이는 0.45m이상으로 설치하되, 높이조절형 열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9.1.1 (BF기준)	매표소의 바닥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이며, 하부의 높이는 0.65m 이상, 깊이는 0.45m이상으로 설치하되, 0.3m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설치하였습니까?			
	9.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입니까?			
	9.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입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0. 임산부 휴게시설	10.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0.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이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11. 의사 소통 및 정보접근	11.1	시설의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1.2	장애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점자자료, 큰 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녹음테이프, 수화통역,자막 등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까?		
	11.3	장애인이 비전자정보를 이용하는 필요한 경우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시, 장애인용복사기 등 편의를 제공합니까?		
	11.4	비전자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 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등 인적, 물적 의사 소통 수단을 제공합니까?		
12. 문화, 예술활동의 정당한 편의	12.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였습니까?		
	12.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합니까?		
	12.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합니까?		
	12.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합니까?		

1-4. 체육시설 실태조사표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접근로	1.1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1.2m이상입니까?			
	1.1.1 (BF기준)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이상입니까?			
	1.2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1.2.1 (BF기준)	접근로의 기울기는 24분의 1이하입니까?			
	1.3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근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였습니까?			
	1.4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였습니까?			
2.장애인전용주차구역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입니까?(평행주차의 경우 깊이 6m이상)			
	2.2.1 (BF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깊이 5m 이상이고 휠체어활동공간 노면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3.주출입구	3.1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턱이나 계단)가 2cm이하입니까?			
	3.1.1 (BF기준)	주출입구에 단체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합니까?			
	3.2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3.3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3.3.1 (BF기준)	경사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3.4	주출입구와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0.8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3.4.1 (BF기준)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4.복도	4.1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2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1.1 (BF기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1.5m이상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4.2	복도에 2cm이상의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4.3	복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4.3.1 (BF기준)	복도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5.층간 이동	5.1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1.1 (BF기준)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5.2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입니까?			
	5.2.1 (BF기준)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입니까?			
6.승강기 및 계단	6.1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6.2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6.2.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0.8~1.2m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버튼의 크기는 2cm 이상입니까?			
	6.3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 1.6m(기존 건물은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3.1 (BF기준)	장애인용 승강기의 내부 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이며,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6.4	계단의 손잡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7. 장애인용 화장실	7.1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별도로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7.1.1 (BF기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2층 이상의 시설일 경우 전체층수의 50% 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7.2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문은 0.8m 이상입니까?			
	7.2.1 (BF기준)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은 1.0m 이상입니까?			
	7.3	장애인용 화장실의 대변기칸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변기 전면에 1.4m×1.4m의 회전공간이 있습니까?(기존 시설은 폭 1m 이상, 깊이 1.8m 이상)			
	7.4	대변기 한쪽에는 수직손잡이와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수평손잡이가 회전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7.5	회전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측면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0.75m 이상의 공간이 있습니까?			
	7.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이며, 세면대 하부에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샤워실 및 탈의실	8.1	샤워실과 탈의실 가운데 1개 이상은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8.2	장애인용 샤워실은 샤워기가 높이조절이 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샤워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되어 있습니까?			
	8.3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입니까?			
	8.4	장애인용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사내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9.관람석	9.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1%이상 설치하고 있습니까?			
	9.1.1 (BF기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의 2%이상 설치하고 있습니까/			
	9.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입니까?			
	9.2.1 (BF기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이되,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을 설치하고 있고,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하고 있습니까?			
10.임산부 휴게시설	10.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0.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이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11.의사 소통 및 전자정보	11.1	시설의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1.2	장애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점자자료, 큰 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녹음테이프, 수화통역,자막 등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까?			
	11.3	장애인이 비전자정보를 이용하는 필요한 경우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인쇄물 음성변환출력시, 장애인용복사기 등 편의를 제공합니까?			
	11.4	비전자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등 인적, 물적 의사 소통 수단을 제공합니까?			
12.체육 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12.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12.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12.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12.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12.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13.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13.1	수영장이 있을 경우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및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이 있습니까?			
	13.2	수영장이 있을 경우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와 보조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13.3	실내 체육관이 있을 경우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10년/2012년 단계적 범위

가.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

2-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체육시설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연 월 일
1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재)세종문화회관	1978. 4.14
2	서울	종로구	종로구민회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000. 2.10
3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재)중구문화재단	2005. 3.25
4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문화회관	동대문구	1997.12.20
5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1996.11.15
6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문화회관	서대문도시관리공단	1999.10.15
7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마포문화재단	2002.12.30
8	서울	구로구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재)구로문화재단	2007.12. 1
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예술회관	영등포문화원	1999. 7. 5
10	서울	관악구	관악문화원·도서관	관악문화원	2002.10.11
11	서울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구	2004. 6.16
12	서울	송파구	송파문화원	송파문화원	1994. 9. 7
13	서울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나루아트센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05
14	서울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2001.10.31
15	부산	동래구	동래문화회관	동래구	1999.10.22
16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1988. 9. 3
17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빙상센터	북구	2005. 7.13
18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해운대구	2007. 3.31
19	부산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사하구	2002.10. 5
20	부산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2000. 5.19
21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	1990. 5.21
22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	남구문화원	1998. 3. 7
23	대구	달서구	달서구첨단문화회관	달서구	2004.10.14
24	대구	동구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민간위탁/시설관리-동구	2004. 5. 4
25	대구	북구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	1999.10. 9
26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서구 문화회관	1998. 3. 5
27	대구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수성아트피아	2007. 5. 1
28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중구	2004.10. 5
29	인천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1994. 1.12
30	인천	남구	인천문화회관	(사)인천예총	1982. 6.25
31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1996. 9. 6
32	인천	서구	서구문화회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1995. 3.18
33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회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1991.12.12
34	광주	북구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광역시	1991.10.21
35	광주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구	2002.10. 8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연 월 일
36	광주	남구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남구	2003.11.21
37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	(재)고아주기독교청년회(YMCA)	200. 3.15
38	대전	서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전광역시	2003.10. 1
39	대전	대덕구	대덕문화회관	대덕문화원(민간위탁)	2000.12.27
40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1995.10. 5
41	울산	북구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	2003. 9.25
42	경기	수원시	경기도 문화의전당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2004. 6. 1
43	경기	고양시	고양시문예회관	고양시시설관리공단	1989. 9. 1
44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고양문화재단	2007. 5. 1
45	경기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고양문화재단	2004. 9. 1
46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995.10. 7
47	경기	광주시	광주시 문예회관	광주시	1991. 8.30
48	경기	군포시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군포시	1998. 5. 8
49	경기	부천시	부천시 시민회관	(재)부천문화재단	1988. 2.20
50	경기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재)성남문화재단	2005.10.14
51	경기	안산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04.10. 2
52	경기	안성시	안성시문예회관	안성시설관리공단	1992.12.29
53	경기	안양시	안양문예회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989.12. 5
54	경기	안양시	평촌아트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004. 9.22
55	경기	양주시	양주문화예술회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1997.10. 1
56	경기	오산시	오산문화예술회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004. 4.23
57	경기	용인시	용인시문예회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1989. 5.25
58	경기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재)의정부예술의전당	2007. 5.28
59	경기	평택시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평택시	1993.11. 2
60	경기	평택시	평택시 북부문예회관	평택시	1990.12. 7
61	경기	평택시	평택시 서부문예회관	평택시	1991.10.29
62	경기	포천시	포천반월아트홀	포천시	2003.10.19
63	경기	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재)하남시문화예술회관	2007. 5.11
64	경기	가평군	가평군문화예술회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998. 7.11
65	경기	양평군	양평군민회관	양평군	1989. 4.30
66	강원	강릉시	강릉문화예술관	강릉시	1992. 3. 7
67	강원	동해시	동해문화예술회관	동해시	1995. 3. 2
68	강원	삼척시	삼척문화예술회관	삼척시	1994. 6. 4
69	강원	속초시	속초문화회관	속초시	1990.10.10
70	강원	원주시	치악예술관	원주시(문화체육사업소)	1994. 5. 4
71	강원	춘천시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시시설관리공단	1993. 4.10
72	강원	태백시	태백문화예술회관	태백시(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3. 7.25
73	강원	고성군	고성군문화복지센터	고성군	2005.12. 8
74	강원	영월군	영월군문화예술회관	영월군	1993. 4. 3
75	강원	정선군	정선문화예술회관	정선군	1993.10. 9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연 월 일
76	강원	평창군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평창군	1999.10. 4
77	강원	홍천군	홍천군문화예술회관	홍천군	1995. 3.23
78	강원	화천군	화천문화예술회관	화천군	1997. 1.31
79	충북	제천시	제천시문화회관	제천시	1985. 2. 2
80	충북	청주시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시	1995. 1
81	충북	충주시	충주시 문화회관	충주시	1985.10. 9
82	충북	보은군	보은문화예술회관	보은군	1994.10. 5
83	충북	옥천군	관성회관	옥천문화원	1988.12. 7
84	충북	옥천군	옥천문화예술회관	옥천군	2008. 5.16
85	충북	증평군	증평문화회관	증평군	1992.11.28
86	충북	진천군	진천군민회관	진천군	1987. 4. 2
87	충북	진천군	화랑관	진천군	2003. 6.21
88	충남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공주시	1990.10.26
89	충남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보령시	2002. 5. 9
90	충남	서산시	서산시문화회관	서산시	1990. 1. 6
91	충남	천안시	천안시민문화회관 본관	천안시	1987.11. 6
92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	2004.10.29
93	충남	당진군	당진문예의전당	당진군	2005. 5.31
94	충남	부여군	국악의전당	부여군	2004.10.26
95	충남	연기군	연기 문화예술회관	연기군	2000.10. 4
96	충남	예산군	예산군문예회관	예산군	1993.10.16
97	충남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	청양군	2006.10.25
98	충남	태안군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태안군	2001. 9.21
99	충남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홍성군	1988. 1. 1
100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2001. 9.21
101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분원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1982. 2. 9
102	전북	군산시	(군산시)시민문화회관	군산시	1989. 5. 1
103	전북	김제시	김제문화예술회관	김제시	1989.12. 9
104	전북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남원시(공공사업소)	1995. 5. 6
105	전북	익산시	익산시소리문화예술회관	익산시	1996.11.29
106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전북교육문화회관	1983.11.15
107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삼성문화회관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	1997.10. 1
108	전북	전주시	전주 덕진예술회관	전주시	1980.12. 8
109	전북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정읍시	1992. 9.15
110	전북	고창군	고창문화의전당	고창군	2008.12. 5
111	전북	무주군	무주예체문화관	무주군청	2001.12.14
112	전북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부안군	2001. 2.10
113	전북	순창군	순창향토회관	순창군(공공시설사업소)	1997.10. 1
114	전북	완주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완주군	2001.11. 6
115	전북	장수군	장수문예회관	장수군(문예체육시설사업소)	2007.10.1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연 월 일
116	전북	진안군	진안문예체육회관	진안군	2000. 1
117	전남	광양시	광양문화예술회관	광양시	1996.10. 8
118	전남	나주시	나주문화예술회관	나주시	1998. 4.25
119	전남	목포시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시	1997. 9.29
120	전남	순천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순천시	1993. 4. 3
121	전남	여수시	여수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여수시	1987. 6.28
122	전남	강진군	강진군 문화회관	-	1993.12.17
123	전남	고흥군	고흥문화회관	고흥군	1999. 6.25
124	전남	담양군	담양문화회관	담양군	2002. 4.25
125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무안군	2001. 5.12
126	전남	영암군	영암문예회관	영암문화원	1996.10. 5
127	전남	장흥군	장흥문화예술회관	장흥군	2004. 5. 1
128	전남	진도군	진도향토문화회관	진도군	1997. 3.26
129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군(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2. 4.20
130	경북	경산시	경산시민회관	경산시	1996. 4.26
131	경북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경주시	1979. 5.21
132	경북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경주시	1993. 2.13
133	경북	구미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구미시	1989.10.16
134	경북	김천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김천시	2000. 4.15
135	경북	문경시	문경시민문화회관	문경시	1993. 9. 2
136	경북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상주시	1990.12. 1
137	경북	안동시	안동시민회관	안동시(사업소)	1993. 2. 6
138	경북	영주시	영주시민회관	영주문화원	1984. 4. 2
139	경북	영천시	영천시민회관	영천시	1989.10.12
140	경북	포항시	포항문화예술회관	포항시	1995. 5.26
141	경북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고령군	1988.10.20
142	경북	군위군	군위문화예술회관	군위군	2007. 9. 5
143	경북	성주군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문화예술회관	2003. 5.26
144	경북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군	2004. 6. 9
145	경북	영양군	영양군문화체육센터	영양군	1997. 5.29
146	경북	예천군	예천군문화회관	예천군	1995. 6. 5
147	경북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울릉군	2008. 5.28
148	경북	울진군	울진문화예술회관	울진군	2007.12.26
149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1988. 8.29
150	경남	거제시	거제문화예술회관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03.10.21
151	경남	김해시	김해문화의전당	(재)김해문화재단	2005.11.25
152	경남	마산시	3.15아트센터	3.15아트센터	2008. 5.20
153	경남	사천시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천시	2002. 2.27
154	경남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시	2002.12.21
155	경남	진해시	진해시민회관	민간위탁운영	1993. 4. 1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연 월 일
156	경남	창원시	성산아트홀	창원문화재단	2000. 4.25
157	경남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	통영시	1997.10. 1
158	경남	거창군	거창군 교육문화센터	거창군	2001. 6.20
159	경남	고성군	고성문화체육센터	고성군	2003. 7.29
160	경남	남해군	남해군문화체육센터	남해군	1999.12.30
161	경남	산청군	산청군문화예술회관	산청군	2006. 6.21
162	경남	의령군	의령군민문화회관	의령군	1993. 4.21
163	경남	하동군	하동군문화예술회관	하동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1. 4.14
164	경남	함안군	함안문화예술회관	함안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5. 3.31
165	경남	합천군	합천문화예술회관	합천군(공공시설사업소)	1995.10.27
166	제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1988. 8.25
167	제주	제주시	저지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2007. 9. 1

나. 도서관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1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1945
2	서울	강남구	강남도서관	교육청	1982
3	서울	강동구	강동도서관	교육청	1984
4	서울	강서구	강서도서관	교육청	1983
5	서울	강남구	개포도서관	교육청	1984
6	서울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교육청	1984
7	서울	구로구	고척도서관	교육청	1990
8	서울	구로구	구로도서관	교육청	1984
9	서울	용산구	남산도서관	교육청	1922
10	서울	노원구	노원평생학습관	교육청	1990
11	서울	도봉구	도봉도서관	교육청	1981
12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도서관	교육청	1971
13	서울	동작구	동작도서관	교육청	1991
14	서울	마포구	마포평생학습관	교육청	1995
15	서울	마포구	마포평생학습관아현분관	교육청	1980
16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도서관	교육청	1986
17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교육청	1979
18	서울	송파구	송파도서관	교육청	1994
19	서울	양천구	양천도서관	교육청	1990
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평생학습관	교육청	1974
21	서울	용산구	용산도서관	교육청	1981
22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	교육청	1977
23	서울	종로구	종로도서관	교육청	1920
24	서울	강동구	강동구립해공도서관	지자체	2008
25	서울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지자체	2001
26	서울	강북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지자체	2001
27	서울	강서구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28	서울	강서구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8
29	서울	강서구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지자체	2008
30	서울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지자체	2002
31	서울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지자체	2000
32	서울	구로구	구로꿈나무도서관	지자체	2004
33	서울	서초구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5
34	서울	관악구	글빛정보도서관	지자체	2006
35	서울	금천구	금나래아트홀도서관	지자체	2008
36	서울	금천구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	지자체	2007
37	서울	금천구	금천구립도서관	지자체	1999
38	서울	구로구	꿈마을도서관	지자체	200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39	서울	노원구	노원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3
40	서울	노원구	노원정보도서관	지자체	2006
41	서울	강남구	논현도서관	지자체	1997
42	서울	서초구	논현문화정보마당	지자체	2003
43	서울	영등포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지자체	2007
44	서울	강남구	대치도서관	지자체	1999
45	서울	도봉구	도봉문화정보센터	지자체	2001
46	서울	도봉구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지자체	2008
47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지자체	2006
48	서울	동작구	동작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8
49	서울	마포구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지자체	2008
50	서울	영등포구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지자체	2008
51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	지자체	2005
52	서울	중구	서울중구구립도서관	지자체	2008
53	서울	성동구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지자체	2006
54	서울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지자체	1999
55	서울	성동구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지자체	2008
56	서울	성동구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지자체	2007
57	서울	성북구	성북정보도서관	지자체	2002
58	서울	관악구	성현동작은도서관	지자체	2006
59	서울	강북구	솔샘문화정보센터	지자체	2005
60	서울	송파구	송파구거마도서정보센터	지자체	2005
61	서울	강서구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지자체	2006
62	서울	성북구	아리랑정보도서관	지자체	2004
63	서울	강남구	역삼도서관	지자체	2007
64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지자체	2007
65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지자체	2001
66	서울	광진구	자양제4동도서관	지자체	2008
67	서울	강남구	정다운도서관	지자체	2004
68	서울	중랑구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지자체	2008
69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지자체	2005
70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지자체	1999
71	서울	강남구	즐거운도서관	지자체	2004
72	서울	은평구	증산정보도서관	지자체	2008
73	서울	강남구	청담도서관	지자체	1999
74	서울	강남구	행복한도서관	지자체	2006
75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교육청	1978
76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교육청	198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77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교육청	1994
78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교육청	1978
79	부산	부산진구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교육청	1982
80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교육청	1984
81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교육청	1983
82	부산	부산진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교육청	1982
83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교육청	1987
84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교육청	1990
85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	교육청	1999
86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교육청	1982
87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	지자체	1996
88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	지자체	2003
89	부산	남구	남구도서관	지자체	1997
90	부산	동구	동구도서관	지자체	1998
91	부산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지자체	1999
92	부산	강서구	부산강서도서관	지자체	1998
93	부산	북구	부산디지털도서관	지자체	2002
94	부산	사상구	사상도서관	지자체	2003
95	부산	수영구	수영구도서관	지자체	2002
96	부산	영도구	영도도서관	지자체	1996
97	부산	해운대구	재송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6
98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교육청	1995
99	대구	달성구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교육청	1991
100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교육청	1971
101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교육청	1995
102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신천분관	교육청	1972
103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교육청	1981
104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교육청	1983
105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교육청	1992
106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교육청	1989
107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교육청	1919
108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달성분관	교육청	196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109	대구	달서구	대구학생문화센터	교육청	2003
110	대구	달서구	달서구립도원도서관	지자체	2006
111	대구	달서구	달서구립성서도서관	지자체	2008
112	대구	달서구	달서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6
113	인천	계양구	계양도서관	교육청	2004
114	인천	부평구	부평도서관	교육청	1982
115	인천	연수구	연수도서관	교육청	2004
116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교육청	1991
117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교육청	1991
118	인천	남동구	인천중앙도서관	교육청	1983
119	인천	남구	주안도서관	교육청	1990
120	인천	동구	화도진도서관	교육청	1988
121	인천	강화군	강화군립도서관	지자체	1994
122	인천	서구	검단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4
123	인천	옹진군	백령도서관	지자체	2000
124	인천	부평구	부평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6
125	인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8
126	인천	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6
127	인천	남동구	미추홀도서관	지자체	1921
128	인천	남구	학나래도서관	지자체	2007
129	인천	계양구	효성도서관	지자체	2008
130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도서관	교육청	1990
131	광주	동구	광주중앙도서관	교육청	1991
132	광주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청	2001
133	광주	동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교육청	1967
134	광주	남구	금호평생교육관	교육청	1996
135	광주	동구	계림꿈나무도서관	지자체	2008
136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지자체	1981
137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지자체	1989
138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	지자체	1997
139	광주	남구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지자체	2003
140	광주	북구	광주북구일곡도서관	지자체	2000
141	광주	서구	광주서구공공도서관	지자체	2000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142	광주	광산구	신가도서관	지자체	2001
143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지자체	2008
144	광주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8
145	광주	광산구	첨단도서관	지자체	2006
146	대전	중구	대전평생학습관	교육청	2002
147	대전	중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교육청	1988
148	대전	서구	가수월드서관	지자체	2000
149	대전	서구	갈마도서관	지자체	1994
150	대전	유성구	구죽도서관	지자체	2003
151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지자체	1989
152	대전	동구	대전동구가오도서관	지자체	1996
153	대전	동구	가양도서관	지자체	2001
154	대전	동구	대전동구성남도서관	지자체	2004
155	대전	동구	대전동구용운도서관	지자체	1994
156	대전	동구	대전동구판암도서관	지자체	2004
157	대전	서구	대전둔산도서관	지자체	2007
158	대전	서구	서구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8
159	대전	대덕구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지자체	2002
160	대전	대덕구	안산도서관	지자체	1994
161	대전	유성구	유성도서관	지자체	1994
162	대전	유성구	진잠도서관	지자체	1999
163	울산	남구	울산남부도서관	교육청	1989
164	울산	동구	울산동부도서관	교육청	1992
165	울산	중구	울산중부도서관	교육청	1984
166	울산	울주군	울주도서관	교육청	1991
167	울산	북구	농소1동도서관	지자체	2006
168	울산	북구	울산농소3동도서관	지자체	2005
169	울산	북구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4
170	울산	북구	울산중앙도서관	지자체	2008
171	울산	울주군	울주군립도서관	지자체	2007
172	경기	과천시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교육청	1984
173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립녹양도서관	교육청	2006
174	경기	화성시	경기도립발안도서관	교육청	200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175	경기	성남시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교육청	1983
176	경기	수원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교육청	1970
177	경기	광주시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교육청	1990
178	경기	김포군	경기도립중앙도서관김포분관	교육청	1985
179	경기	여주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여주분관	교육청	1972
180	경기	평택시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교육청	1986
181	경기	포천시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포천분관	교육청	1989
182	경기	수원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청	2008
183	경기	가평군	가평군 조종도서관	지자체	2006
184	경기	가평군	가평군중앙도서관	지자체	1985
185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대화도서관	지자체	2008
186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지자체	1999
187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백석도서관	지자체	2003
188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지자체	2007
189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월당도서관	지자체	2002
190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주엽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191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풍동도서관	지자체	2008
192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한미도서관	지자체	2008
193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행신도서관	지자체	1994
194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행신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195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화정도서관	지자체	2003
196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197	경기	과천시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지자체	2002
198	경기	광명시	광명시중앙도서관	지자체	2004
199	경기	광명시	광명시하안도서관	지자체	1993
200	경기	광주시	광주시립도서관	지자체	2007
201	경기	파주시	교하도서관	지자체	2008
202	경기	구리시	구리시교문도서관	지자체	1994
203	경기	구리시	구리시인창도서관	지자체	2003
204	경기	군포시	군포시 당동도서관	지자체	1993
205	경기	군포시	군포시 대야도서관	지자체	2003
206	경기	군포시	군포시 산본도서관	지자체	1994
207	경기	군포시	군포시 중앙도서관	지자체	2008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208	경기	군포시	군포시립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2
209	경기	김포시	김포시립도서관	지자체	1998
210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도서관	지자체	1993
211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별내도서관	지자체	2008
212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진건도서관	지자체	2006
213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화도도서관	지자체	2003
214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지자체	2005
215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시립도서관	지자체	1996
216	경기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5
217	경기	부천시	부천시꿈빛도서관	지자체	2002
218	경기	부천시	부천시북부도서관	지자체	1999
219	경기	부천시	부천시심곡도서관	지자체	1985
220	경기	부천시	부천시중앙도서관	지자체	1994
221	경기	부천시	부천책마루도서관	지자체	2007
222	경기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지자체	2006
223	경기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지자체	2006
224	경기	성남시	성남시구미도서관	지자체	2008
225	경기	성남시	성남시분당도서관	지자체	1999
226	경기	성남시	성남시수정도서관	지자체	2000
227	경기	성남시	성남시중앙도서관	지자체	2001
228	경기	성남시	성남시중원도서관	지자체	2000
229	경기	수원시	수원시선경도서관	지자체	1995
230	경기	수원시	수원시영통도서관	지자체	1999
231	경기	수원시	수원시중앙도서관	지자체	1980
232	경기	수원시	슬기샘도서관	지자체	2005
233	경기	시흥시	시흥시대야도서관	지자체	1996
234	경기	시흥시	시흥시대야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6
235	경기	시흥시	시흥시립도서관	지자체	2002
236	경기	안산시	안산단원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237	경기	안산시	안산시감골도서관	지자체	1997
238	경기	안산시	안산시관산도서관	지자체	1993
239	경기	안산시	안산시립상록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240	경기	안산시	안산시성포도서관	지자체	199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241	경기	안산시	안산중앙도서관	지자체	2006
242	경기	안성시	안성시립도서관	지자체	1996
243	경기	안성시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지자체	2008
244	경기	안양시	안양시만안도서관	지자체	1992
245	경기	안양시	안양시박달도서관	지자체	2006
246	경기	안양시	안양시석수도서관	지자체	2003
247	경기	안양시	안양시평촌도서관	지자체	1994
248	경기	안양시	안양시호계도서관	지자체	1998
249	경기	안양시	안양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250	경기	양주시	양주시덕정도서관	지자체	1994
251	경기	양주시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지자체	2006
252	경기	양평군	양평군립중앙도서관	지자체	1993
253	경기	양평군	양평어린이도서관	지자체	1993
254	경기	양평군	양평용문도서관	지자체	2003
255	경기	여주군	여주군립도서관	지자체	1999
256	경기	연천군	연천군 중앙도서관	지자체	2007
257	경기	연천군	연천도서관	지자체	2007
258	경기	오산시	오산시립 중앙도서관	지자체	2008
259	경기	오산시	오산시립 청학도서관	지자체	1992
260	경기	오산시	오산시립 햇살마루 도서관	지자체	2007
261	경기	용인시	용인시구갈희망누리도서관	지자체	2006
262	경기	용인시	용인시구성도서관	지자체	2007
263	경기	용인시	용인시디지털정보도서관	지자체	2007
264	경기	용인시	용인시립도서관	지자체	1993
265	경기	용인시	용인시수지도서관	지자체	2004
266	경기	용인시	용인시죽전도서관	지자체	2008
267	경기	용인시	용인시포곡도서관	지자체	2006
268	경기	의왕시	의왕시내손도서관	지자체	1993
269	경기	의왕시	의왕시중앙도서관	지자체	2007
27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과학도서관	지자체	2007
271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정보도서관	지자체	2003
27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7
273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도서관	지자체	199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274	경기	이천시	이천시청미도서관	지자체	2002
275	경기	수원시	장안구민 햇살도서관	지자체	2006
276	경기	수원시	지혜샘도서관	지자체	2005
277	경기	파주시	파주시립중앙도서관금촌분관	지자체	1994
278	경기	파주시	파주시립중앙도서관문산분관	지자체	1994
279	경기	파주시	파주시립중앙도서관법원분관	지자체	1997
280	경기	파주시	파주시중앙도서관	지자체	2005
281	경기	평택시	평택시립도서관	지자체	1992
282	경기	평택시	평택시립도서관 팽성분관	지자체	1994
283	경기	평택시	평택시립안중도서관	지자체	2005
284	경기	평택시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지자체	2006
285	경기	포천시	포천시립영중꿈나무도서관	지자체	2006
286	경기	포천시	포천시립일동도서관	지자체	2006
287	경기	하남시	하남시립도서관	지자체	1996
288	경기	수원시	한아름도서관	지자체	2000
289	경기	부천시	한울빛도서관	지자체	2008
290	경기	부천시	해밀도서관	지자체	2008
291	경기	화성시	화성시남양도서관	지자체	1994
292	경기	화성시	화성시병점도서관	지자체	2005
293	경기	화성시	화성시삼괴도서관	지자체	2004
294	경기	화성시	화성시태안도서관	지자체	1998
295	경기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지자체	2006
296	강원	강릉시	강릉평생교육정보관	교육청	1990
297	강원	고성군	고성도서관	교육청	1991
298	강원	동해시	동해도서관	교육청	1988
299	강원	강릉시	명주도서관	교육청	1992
300	강원	원주시	문막도서관	교육청	1991
301	강원	삼척시	삼척평생교육정보관	교육청	1974
302	강원	속초시	속초도서관	교육청	1986
303	강원	속초시	속초평생교육정보관	교육청	1987
304	강원	양구군	양구도서관	교육청	1992
305	강원	양양군	양양도서관	교육청	1991
306	강원	영월군	영월도서관	교육청	1974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307	강원	원주시	원주평생교육정보관	교육청	1985
308	강원	인제군	인제도서관	교육청	1989
309	강원	정선군	정선도서관	교육청	1989
310	강원	철원군	철원도서관	교육청	1988
311	강원	춘천시	춘성도서관	교육청	1991
312	강원	춘천시	춘천평생교육정보관	교육청	1985
313	강원	태백시	태백도서관	교육청	1991
314	강원	평창군	평창도서관	교육청	1974
315	강원	홍천군	홍천도서관	교육청	1970
316	강원	화천군	화천도서관	교육청	1990
317	강원	횡성군	횡성도서관	교육청	1989
318	강원	강릉시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지자체	1969
319	강원	고성군	고성군립도서관	지자체	2000
320	강원	철원군	관전도서관	지자체	2007
321	강원	동해시	동해시립발한도서관	지자체	1998
322	강원	동해시	동해시립북삼도서관	지자체	2002
323	강원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지자체	1998
324	강원	삼척시	삼척도계도서관	지자체	1994
325	강원	삼척시	삼척원덕도서관	지자체	1996
326	강원	춘천시	소양정보도서관	지자체	2001
327	강원	주천면	영월주천도서관	지자체	2006
328	강원	원주시	원주시립도서관	지자체	1968
329	강원	철원군	철원갈말도서관	지자체	1998
330	강원	철원군	철원김화도서관	지자체	1993
331	강원	춘천시	춘천남산도서관	지자체	2001
332	강원	춘천시	춘천동내도서관	지자체	2003
333	강원	춘천시	춘천시립도서관	지자체	1960
334	강원	춘천시	춘천시립분관서면도서관	지자체	2006
335	강원	춘천시	춘천신사우동도서관	지자체	2005
336	강원	태백시	태백시립도서관	지자체	1996
337	강원	고성군	토성공공도서관	지자체	2008
338	강원	평창군	평창군립대화도서관	지자체	2004
339	강원	평창군	평창진부도서관	지자체	2000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340	충북	괴산군	괴산도서관	교육청	1971
341	충북	음성군	금왕도서관	교육청	1994
342	충북	단양군	단양도서관	교육청	1987
343	충북	보은군	보은도서관	교육청	1973
344	충북	영동군	영동도서관	교육청	1972
345	충북	옥천군	옥천도서관	교육청	1987
346	충북	음성군	음성도서관	교육청	1988
347	충북	제천시	제천학생회관	교육청	1987
348	충북	충주시	증원도서관	교육청	1990
349	충북	증평군	증평도서관	교육청	1995
350	충북	진천군	진천도서관	교육청	1988
351	충북	청원군	청원도서관	교육청	1988
352	충북	청주시	충북중앙도서관	교육청	1979
353	충북	청주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교육청	1990
354	충북	청주시	충주학생도서관	교육청	1974
355	충북	단양군	매포도서관	지자체	1996
356	충북	제천시	봉양도서관	지자체	1998
357	충북	청원군	옥산도서관	지자체	1996
358	충북	음성군	음성대소도서관	지자체	2006
359	충북	제천시	제천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4
360	충북	제천시	제천시립도서관	지자체	1996
361	충북	제천시	제천시립의병도서관	지자체	2006
362	충북	제천시	제천여성도서관	지자체	1994
363	충북	청주시	청주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4
364	충북	청주시	청주북부도서관	지자체	2007
365	충북	청주시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지자체	2003
366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도서관	지자체	1954
367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호암도서관	지자체	2003
368	충남	공주시	공주도서관	교육청	1985
369	충남	공주시	공주유구도서관	교육청	1991
370	충남	금산군	금산도서관	교육청	1989
371	충남	당진군	당진도서관	교육청	1974
372	충남	보령시	보령도서관	교육청	197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373	충남	보령시	보령웅천도서관	교육청	1993
374	충남	부여군	부여도서관	교육청	1971
375	충남	서산시	서산해미도서관	교육청	1993
376	충남	서천군	서천도서관	교육청	1987
377	충남	아산시	아산도서관	교육청	1990
378	충남	연기군	연기도서관	교육청	1991
379	충남	예산군	예산도서관	교육청	1975
380	충남	천안시	천안성환도서관	교육청	1993
381	충남	청양군	청양도서관	교육청	1974
382	충남	서산시	충남서부평생학습관	교육청	2004
383	충남	논산시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교육청	1972
384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평생교육원	교육청	2005
385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학생회관	교육청	1994
386	충남	태안군	태안도서관	교육청	1992
387	충남	홍성군	홍성도서관	교육청	1974
388	충남	계룡시	광천공공도서관	지자체	1997
389	충남	금산군	금산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5
390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고을도서관	지자체	2007
391	충남	논산시	논산강경도서관	지자체	1994
392	충남	논산시	논산연무도서관	지자체	1998
393	충남	당진군	당진송악도서관	지자체	2000
394	충남	당진군	당진합덕도서관	지자체	1995
395	충남	보령시	보령공공도서관	지자체	1996
396	충남	보령시	보령주산도서관	지자체	1999
397	충남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	지자체	1995
398	충남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대산분관	지자체	1996
399	충남	서천군	서천장항도서관	지자체	1997
400	충남	아산시	아산시립남산도서관	지자체	2006
401	충남	아산시	아산시립둔포도서관	지자체	1995
402	충남	아산시	아산시립배방도서관	지자체	1999
403	충남	아산시	아산시립송곡도서관	지자체	1999
404	충남	아산시	아산시립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6
405	충남	예산군	예산삼교도서관	지자체	199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406	충남	천안시	천안시중앙도서관	지자체	1990
407	충남	천안시	천안시중앙도서관성거분관	지자체	1998
408	충남	천안시	천안시중앙도서관쌍용분관	지자체	2002
409	충남	천안시	천안중앙도서관아우내분관	지자체	2007
410	충남	태안군	태안안면도서관	지자체	1999
411	전북	고창군	고창공공도서관	교육청	1987
412	전북	군산시	군산교육문화회관	교육청	1999
413	전북	김제시	김제원평도서관	교육청	1992
414	전북	남원시	남원교육문화회관	교육청	2002
415	전북	군산시	대야공공도서관	교육청	1974
416	전북	익산시	마한교육문화회관	교육청	2000
417	전북	익산시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분관	교육청	1990
418	전북	무주군	무주공공도서관	교육청	1988
419	전북	부안군	부안공공도서관	교육청	1971
420	전북	순창군	순창공공도서관	교육청	1987
421	전북	완주군	완주공공도서관	교육청	1988
422	전북	남원시	윤봉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423	전북	임실군	임실도서관	교육청	1973
424	전북	장수군	장수도서관	교육청	1972
425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교육청	1999
426	전북	정읍시	정읍학생복지회관	교육청	1998
427	전북	진안군	진안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428	전북	고창군	고창군립도서관	지자체	2008
429	전북	군산시	군산시립도서관	지자체	1995
430	전북	군산시	군산시청소년회관임피도서관	지자체	1997
431	전북	김제시	김제시립도서관	지자체	1995
432	전북	김제시	김제시립도서관금구분관	지자체	2005
433	전북	김제시	김제시립도서관만경분관	지자체	1998
434	전북	남원시	남원시립도서관	지자체	2008
435	전북	무주군	무주형설지공도서관	지자체	2001
436	전북	부안군	부안군립도서관	지자체	2000
437	전북	완주군	완주군립고산도서관	지자체	2006
438	전북	완주군	완주군립도서관	지자체	199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439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도서관	지자체	2003
440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도서관마동분관	지자체	1994
441	전북	임실군	임실군립도서관	지자체	2002
442	전북	장수군	장수군립공공도서관	지자체	1995
443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금암도서관	지자체	1980
444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삼천도서관	지자체	2001
445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서신도서관	지자체	2008
446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송천도서관	지자체	2005
447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완산도서관	지자체	1989
448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인후도서관	지자체	1996
449	전북	정읍시	정읍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8
450	전북	정읍시	정읍시립도서관	지자체	1990
451	전북	정읍시	정읍시립도서관신태인분관	지자체	1996
452	전남	고흥군	고흥평생교육관	교육청	1997
453	전남	곡성군	곡성교육문화회관	교육청	1986
454	전남	광양시	광양공공도서관	교육청	1992
455	전남	광양시	광양평생교육관	교육청	2005
456	전남	구례군	구례공공도서관	교육청	1973
457	전남	나주시	나주공공도서관	교육청	1994
458	전남	나주시	남평공공도서관	교육청	1991
459	전남	담양군	담양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460	전남	목포시	목포공공도서관	교육청	1982
461	전남	무안군	무안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462	전남	보성군	별교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463	전남	보성군	보성공공도서관	교육청	1985
464	전남	영광군	영광공공도서관	교육청	1972
465	전남	영암군	영암공공도서관	교육청	1987
466	전남	장성군	장성공공도서관	교육청	1970
467	전남	장흥군	장흥공공도서관	교육청	1991
468	전남	여수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청	2008
469	전남	진도군	진도공공도서관	교육청	1972
470	전남	함평군	함평공공도서관	교육청	1988
471	전남	해남군	해남공공도서관	교육청	1984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472	전남	화순군	화순공공도서관	교육청	1973
473	전남	강진군	강진군도서관	지자체	1965
474	전남	고흥군	고흥군립도서관	지자체	1998
475	전남	고흥군	고흥군립북부도서관	지자체	2006
476	전남	광양시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지자체	2007
477	전남	광양시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지자체	1992
478	전남	구례군	구례군매천도서관	지자체	2002
479	전남	완도군	금일공공도서관	지자체	1999
480	전남	나주시	나주시립도서관	지자체	1997
481	전남	완도군	노화공공도서관	지자체	1996
482	전남	목포시	목포시립도서관	지자체	1974
483	전남	무안군	무안군공공도서관	지자체	2000
484	전남	보성군	보성농어촌도서관	지자체	1998
485	전남	순천시	순천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3
486	전남	순천시	순천시립도서관	지자체	1968
487	전남	순천시	순천시립도서관연향관	지자체	1998
488	전남	신안군	신안군립도서관	지자체	1996
489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도서관	지자체	1993
490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돌산도서관	지자체	1997
491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소라도서관	지자체	1998
492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울촌도서관	지자체	2005
493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현암도서관	지자체	1985
494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지자체	2007
495	전남	영광군	영광군립도서관	지자체	1994
496	전남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	지자체	2001
497	전남	완도군	완도군립도서관	지자체	1993
498	전남	장성군	장성아카데미하우스	지자체	2005
499	전남	영암군	정보문화센터영암도서관	지자체	2006
500	전남	영암군	정보문화센터삼호도서관	지자체	2003
501	전남	함평군	함평나비곤충도서관	지자체	2008
502	전남	해남군	해남군립도서관	지자체	2002
503	전남	신안군	흑산자산문화도서관	지자체	2003
504	경북	경산시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교육청	1998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505	경북	고령군	경상북도립고령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506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교육청	1986
507	경북	군위군	경상북도립군위도서관	교육청	1975
508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립김릉공공도서관	교육청	1971
509	경북	봉화군	경상북도립봉화공공도서관	교육청	1976
510	경북	상주시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교육청	1987
511	경북	상주시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화령분관	교육청	1992
512	경북	성주군	경상북도립성주공공도서관	교육청	1973
513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교육청	1991
514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용상분관	교육청	1977
515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풍산분관	교육청	1992
516	경북	영덕군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	교육청	1973
517	경북	영양군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교육청	1973
518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519	경북	영주시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교육청	1983
520	경북	영주시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풍기분관	교육청	1988
521	경북	영천시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	교육청	1992
522	경북	예천군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523	경북	경주시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	교육청	1988
524	경북	울릉군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	교육청	1974
525	경북	울진군	경상북도립울진공공도서관	교육청	1974
526	경북	의성군	경상북도립의성도서관	교육청	1973
527	경북	문경시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528	경북	문경시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교육청	1991
529	경북	청도군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	교육청	1984
530	경북	청송군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	교육청	1990
531	경북	칠곡군	경상북도립칠곡공공도서관	교육청	1985
532	경북	경주시	감포읍민도서관	지자체	1996
533	경북	경주시	건천읍민도서관	지자체	1996
534	경북	경산시	경산시립도서관	지자체	2007
535	경북	경산시	경산시립도서관경산분관	지자체	1968
536	경북	경주시	경주시립도서관	지자체	1989
537	경북	경주시	경주시립도서관중앙분관	지자체	195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538	경북	구미시	구미시립도서관	지자체	1994
539	경북	구미시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지자체	2007
540	경북	구미시	구미시립선산도서관	지자체	2007
541	경북	구미시	구미시립인동도서관	지자체	2000
542	경북	군위군	군위군립도서관	지자체	1995
543	경북	김천시	김천시립도서관	지자체	1963
544	경북	문경시	문경시립문희도서관	지자체	1998
545	경북	문경시	문경시립중앙도서관	지자체	1997
546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사도서관	지자체	1987
547	경북	경주시	안강읍민도서관	지자체	1999
548	경북	안동시	안동시립도서관	지자체	1965
549	경북	영주시	영주시립도서관	지자체	2004
550	경북	영천시	영천시립도서관	지자체	1985
551	경북	울진군	울진군죽변면도서관	지자체	1994
552	경북	의성군	의성군립도서관	지자체	2001
553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도서관정보센터	지자체	2007
554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영암도서관	지자체	1987
555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오천도서관	지자체	1999
556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포은도서관	지자체	2007
557	경남	거제군	거제도서관	교육청	1976
558	경남	거창군	거창도서관	교육청	1984
559	경남	고성군	고성도서관	교육청	1990
560	경남	김해시	김해도서관	교육청	1985
561	경남	남해군	남해도서관	교육청	1972
562	경남	마산시	마산도서관	교육청	1954
563	경남	밀양시	밀양도서관	교육청	1973
564	경남	사천시	사천도서관	교육청	1991
565	경남	산청군	산청도서관	교육청	1984
566	경남	사천시	삼천포도서관	교육청	1990
567	경남	양산시	양산도서관	교육청	1992
568	경남	의령군	의령도서관	교육청	1974
569	경남	마산시	진동도서관	교육청	1993
570	경남	진주시	진양도서관	교육청	1992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관 영 주 체	개관 년도
571	경남	김해시	진영도서관	교육청	1990
572	경남	창녕군	창녕남지도서관	교육청	1993
573	경남	창녕군	창녕도서관	교육청	1972
574	경남	창원시	창원도서관	교육청	1983
575	경남	통영시	통영도서관	교육청	1963
576	경남	밀양시	하남도서관	교육청	1994
577	경남	하동군	하동도서관	교육청	1985
578	경남	함양군	함안도서관	교육청	1990
579	경남	함양군	함양도서관	교육청	1963
580	경남	합천군	합천도서관	교육청	1972
581	경남	거제시	거제시립도서관	지자체	1994
582	경남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지자체	2006
583	경남	고성군	고성동부도서관	지자체	2003
584	경남	김해시	김해시립화정글샘도서관	지자체	2008
585	경남	김해시	김해장유도서관	지자체	2002
586	경남	김해시	김해칠암도서관	지자체	1999
587	경남	마산시	마산시립합포도서관	지자체	2002
588	경남	마산시	마산시립회원도서관	지자체	1995
589	경남	마산시	마산시립회원도서관내서분관	지자체	1997
590	경남	밀양시	밀양시립도서관	지자체	1982
591	경남	양산시	양산응상도서관	지자체	1999
592	경남	진주시	진주서부도서관	지자체	1998
593	경남	진주시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지자체	2006
594	경남	진주시	진주연암도서관	지자체	1985
595	경남	진해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4
596	경남	진해시	진해동부도서관	지자체	2006
597	경남	진해시	진해시립도서관	지자체	1975
598	경남	창원시	창원시립도서관	지자체	1993
599	경남	창원시	창원시립도서관고향의봄분관	지자체	2002
600	경남	창원시	창원시립도서관상남분관	지자체	2002
601	경남	통영시	통영산양도서관	지자체	1997
602	경남	통영시	통영육지도서관	지자체	2001
603	제주	북제주군	동녘도서관	교육청	1995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 년도
60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교육청	1964
605	제주	서귀포시	송악도서관	교육청	1990
606	제주	서귀포시	제남도서관	교육청	1996
607	제주	제주시	제주도서관	교육청	1957
608	제주	북제주군	한수폴도서관	교육청	1990
609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지자체	2004
610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지자체	2000
61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지자체	1986
612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지자체	2006
613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지자체	1994
614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도서관	지자체	1998
615	제주	남제주군	안덕산방도서관	지자체	2001
616	제주	북제주군	애월도서관	지자체	1997
617	제주	제주시	제주기적의어린이도서관	지자체	2004
618	제주	제주시	제주시우당도서관	지자체	1984
619	제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지자체	2008
620	제주	제주시	조천도서관	지자체	1999
621	제주	제주시	탐라도서관	지자체	1989
622	제주	남제주군	표선도서관	지자체	2002
623	제주	제주시	한경도서관	지자체	2002

다. 박물관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년도
1	서울	종로구	경찰박물관	국립	1995
2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국립	2005
3	서울	강남구	관세박물관	국립	2000
4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1993
5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1996
6	서울	서초구	외교사전시실	국립	1993
7	서울	종로구	조세박물관	국립	2002
8	서울	종로구	체신기념관	국립	1972
9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공립	2003
10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공립	1998
11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사료관	공립	1995
12	서울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공립	2006
13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공립	2002
14	서울	성동구	수도박물관	공립	2008
15	서울	중구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공립	2006
16	서울	성동구	청계천문화관	공립	2005
17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	공립	2005
18	서울	관악구	서울대박물관	대학	1946
19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박물관	대학	2001
20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박물관	대학	1984
21	서울	노원구	육군박물관	대학	1983
22	부산	동래구	북천박물관	공립	1996
23	부산	중구	부산근대역사관	공립	2003
24	부산	남구	부산시립박물관	공립	1978
25	부산	동래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공립	2003
26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박물관	공립	1972
27	대구	수성구	국립대구박물관	국립	1994
28	대구	동구	대구방짜유기박물관	공립	2007
29	대구	중구	대구향토역사관	공립	1997
30	대구	달서구	산림문화전시관	공립	2007
31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부속박물관	대학	1959
32	인천	서구	검단선사박물관	공립	2008
33	인천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공립	2007
34	인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공립	2005
35	인천	중구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공립	2006
36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공립	1946
37	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공립	1984
38	인천	중구	한국이민사박물관	공립	2008
39	광주	북구	국립광주박물관	국립	1978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도
40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공립	1987
41	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공립	2007
42	광주	서구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	공립	2002
43	광주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대학	1986
44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박물관	대학	1957
45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공립	1991
46	대전	유성구	대전선사박물관	공립	2007
47	대전	동구	한밭 교육박물관	공립	1992
48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박물관	공립	1964
49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자연사박물관	공립	2004
50	울산	울주군	울산암각화전시관	공립	2008
51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공립	2005
52	울산	울주군	충렬공 박제상 기념관	공립	2008
53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국립	1987
54	경기	수원시	지도박물관	국립	2004
55	경기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공립	1996
56	경기	광주시	경기도자박물관	공립	2001
57	경기	구리시	고구려대장간마을	공립	2008
58	경기	고양시	고양민속전시관	공립	1995
59	경기	남양주시	다산기념관	공립	1989
60	경기	여주군	명성황후기념관	공립	2000
61	경기	부천시	물박물관	공립	2001
62	경기	오산시	물향기산림전시관	공립	2007
63	경기	부천시	부천교육박물관	공립	2003
64	경기	부천시	부천수석박물관	공립	2004
65	경기	부천시	부천향토역사관	공립	2000
66	경기	부천시	부천활박물관	공립	2004
67	경기	안산시	성호기념관	공립	2002
68	경기	수원시	수원박물관	공립	2008
69	경기	시흥시	시흥역사자료전시관	공립	2003
70	경기	안산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공립	2006
71	경기	안성시	안성3.1운동기념관	공립	2001
72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공립	20025
73	경기	안성시	안성포도박물관	공립	2009
74	경기	안산시	안산향토사박물관	공립	2005
75	경기	안양시	안양역사관	공립	2004
76	경기	양평군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공립	2007
77	경기	여주군	여주군향토사료관	공립	1997
78	경기	광명시	오리이원익기념관	공립	2001
79	경기	부천시	유럽자기박물관	공립	200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도
80	경기	이천시	이천세계도자센터	공립	2002
81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박물관	공립	2002
82	경기	양평군	이항로선생 생가	공립	1980
83	경기	부천시	자연생태박물관	공립	2000
84	경기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공립	2002
85	경기	수원시	잠사과학박물관	공립	1999
86	경기	화성시	제암리3.1운동 순국전시관	공립	2001
87	경기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공립	2007
88	경기	부천시	필벽기념관	공립	2006
89	경기	하남시	하남역사박물관	공립	2004
90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공립	2001
91	경기	연천군	향토사료관	공립	2002
92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국립	2002
93	강원	고성군	6.25전쟁체험기념관	공립	2007
94	강원	강릉시	강릉단오문화관	공립	2004
95	강원	강릉시	강릉시산불방지홍보관	공립	2006
96	강원	춘천시	경찰박물관	공립	2002
97	강원	동해시	고래화석박물관	공립	2004
98	강원	태백시	구문소화석수목전시관	공립	1999
99	강원	강릉시	김시습기념관	공립	
100	강원	영월군	난고문학관	공립	2007
101	강원	영월군	단종역사관	공립	2003
102	강원	강릉시	대관령박물관	공립	2002
103	강원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공립	1993
104	강원	홍천군	마리소리굴 약기박물관	공립	2005
105	강원	삼척시	민물고기전시관	공립	2007
106	강원	화천군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공립	2003
107	강원	영월군	별마로전문대	공립	2008
108	강원	춘천시	산림박물관	공립	2001
109	강원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공립	2002
110	강원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공립	2000
111	강원	춘천시	애니메이션박물관	공립	2005
112	강원	양구군	양구방산자기박물관	공립	2003
113	강원	양구군	양구선사박물관	공립	2006
114	강원	삼척시	여촌민속전시관	공립	1997
115	강원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공립	2002
116	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공립	2007
117	강원	원주시	원주시립박물관	공립	1992
118	강원	인제군	인제산촌민속박물관	공립	2000
119	강원	정선군	정선향토박물관	공립	2003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년도
120	강원	춘천시	춘천막국수박물관	공립	2004
121	강원	태백시	태백석탄박물관	공립	2006
122	강원	화천군	파로호안보전시관	공립	1997
123	강원	양구군	팔랑민속관	공립	2005
124	강원	강릉시	함정 및 안보전시관	공립	1998
125	강원	강릉시	행정역사관	공립	2001
126	강원	강릉시	허균, 허난설헌기념관	공립	2007
127	강원	홍천군	홍천향토사료관	공립	2003
128	강원	고성군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공립	1999
129	강원	고성군	화진포해양박물관	공립	2004
130	강원	화천군	화천민속박물관	공립	2006
131	강원	삼척시	황영조기념관	공립	1999
132	강원	강릉시	강릉대학교박물관	대학	1979
133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박물관	대학	1979
134	충북	청주시	국립청주박물관	국립	1987
135	충북	괴산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공립	1994
136	충북	영동군	난계 국악박물관	공립	2000
137	충북	청원군	산림과학박물관	공립	2006
138	충북	보은군	솔향공원	공립	2007
139	충북	단양군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공립	2006
140	충북	옥천군	옥천향토박물관	공립	1996
141	충북	음성군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공립	1994
142	충북	제천시	제천유물전시관	공립	1998
143	충북	제천시	제천의병전시관	공립	2001
144	충북	진천군	진천 종 박물관	공립	2005
145	충북	청주시	청주 고인쇄박물관	공립	1992
146	충북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공립	2001
147	충북	충주시	충렬사유물전시관	공립	1978
148	충북	청주시	충북교육박물관	공립	2006
149	충북	충주시	충주박물관	공립	1986
150	충북	충주시	충주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공립	2005
151	충북	청원군	충청북도농업과학관	공립	2001
152	충북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공립	2000
153	충북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공립	2004
154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박물관	공립	1970
155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	국립	2004
156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	1993
157	충남	천안시	국립우정박물관	국립	1985
158	충남	아산시	국립이충무공유물전시관	국립	1976
159	충남	금산군	칠백의충기념관	국립	197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도
160	충남	홍성군	결성농요농사박물관	공립	2004
161	충남	태안군	고남패총 박물관	공립	2002
162	충남	공주시	금강산림박물관	공립	1997
163	충남	금산군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공립	2006
164	충남	부여군	능산리고분전시관	공립	1987
165	충남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공립	2005
166	충남	부여군	백제역사문화관	공립	2006
167	충남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공립	1995
168	충남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공립	2006
169	충남	공주시	송산리고분군모형환	공립	2003
170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관	공립	2004
171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공립	2003
172	충남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공립	2001
173	충남	부여군	정림사지 박물관	공립	2006
174	충남	천안시	천안박물관	공립	2008
175	충남	공주시	충남역사박물관	공립	2006
176	충남	당진군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공립	2005
177	충남	공주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대학	2007
178	충남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대학	
179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부속박물관	대학	1972
180	전북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국립	1990
181	전북	정읍시	고부민속유물전시관	공립	2005
182	전북	고창군	고창고인돌박물관	공립	2008
183	전북	고창군	고창판소리박물관	공립	2001
184	전북	남원시	남원향토박물관	공립	2004
185	전북	익산시	마한관	공립	2008
186	전북	남원시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공립	1981
187	전북	무주군	무주 근충박물관	공립	2007
188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립	1997
189	전북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공립	1998
190	전북	순창군	순창장류박물관	공립	2007
191	전북	임실군	신평생활사박물관	공립	2002
192	전북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	공립	2008
193	전북	익산시	익산보석박물관	공립	2002
194	전북	익산시	입점리고분전시관	공립	2004
195	전북	정읍시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공립	2004
196	전북	순창군	전라북도산림박물관	공립	2002
197	전북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공립	2002
198	전북	전주시	전주전통술박물관	공립	2002
199	전북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	공립	200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도
200	전북	군산시	군산대학교 박물관	대학	1984
201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부속박물관	대학	1961
202	전남	목포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	1994
203	전남	강진군	강진청자박물관	국립	1997
204	전남	해남군	고산유물전시관	국립	1990
205	전남	나주시	나주배박물관	국립	1992
206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민속자료관	국립	1997
207	전남	강진군	다산유물전시관	국립	1999
208	전남	목포시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국립	2006
209	전남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국립	2004
210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관	국립	2004
211	전남	영암군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국립	1993
212	전남	영암군	영암도기문화센터	국립	1999
213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기념관	국립	2006
214	전남	해남군	우항리공룡박물관	국립	2007
215	전남	곡성군	시집전시관	국립	2003
216	전남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국립	2006
217	전남	진도군	진도역사관	국립	2003
218	전남	여수시	충민사유물전시관	국립	2004
219	전남	신안군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국립	2005
220	전남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국립	1998
221	전남	장성군	홍길동전시관	국립	2004
222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학	1982
223	전남	순천시	순천대학교 박물관	대학	1991
224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국립	1975
225	경북	포항시	국립등대박물관	국립	1985
226	경북	경산시	경산시립박물관	국립	2007
227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향토교육자료관	국립	1995
228	경북	구미시	구미시립민속관	국립	1994
229	경북	군위군	군위군립송덕박물관	국립	1983
230	경북	김천시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국립	2006
231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국립	2005
232	경북	안동시	도산림과학박물관	국립	2004
233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 옥진각	국립	1973
234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	국립	1997
235	경북	경주시	동리목월문화관	국립	2006
236	경북	상주시	동학교당유물전시관	국립	
237	경북	문경시	문경도자기전시관	국립	2002
238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국립	1997
239	경북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국립	1999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도
240	경북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공립	2004
241	경북	의성군	사촌마을자료관	공립	2006
242	경북	상주시	상주명주박물관	공립	
243	경북	상주시	상주박물관	공립	2007
244	경북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공립	2002
245	경북	영양군	서석지유물관	공립	
246	경북	영주시	소수박물관	공립	2004
247	경북	영양군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공립	2002
248	경북	안동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공립	1992
249	경북	영양군	영양고추홍보전시관	공립	2002
250	경북	영양군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공립	2006
251	경북	포항시	영일민속박물관	공립	1983
252	경북	영천시	영천민속관	공립	1991
253	경북	문경시	운강이강년기념관	공립	2002
254	경북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공립	2004
255	경북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공립	2007
256	경북	상주시	정기룡장군유물전시관	공립	1980
257	경북	영양군	정부인장씨예절관	공립	2005
258	경북	영양군	지훈문학관	공립	2007
259	경북	청도군	청도농기구박물관	공립	1993
260	경북	봉화군	청량산박물관	공립	2004
261	경북	청송군	민속박물관	공립	1999
262	경북	봉화군	충재유물관	공립	2007
263	경북	군위군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대학	2004
264	경북	안동시	안동대학교박물관	대학	1979
265	경북	경주시	한국광고영상박물관	대학	2006
266	경남	김해시	국립김해박물관	국립	1998
267	경남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국립	1984
268	경남	진주시	남부산림과학관	공립	1991
269	경남	거제시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공립	2003
270	경남	거창군	거창박물관	공립	1988
271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산림박물관	공립	2002
272	경남	고성군	고성공룡박물관	공립	2004
273	경남	고성군	고성수석전시관	공립	2002
274	경남	고성군	고성자연사박물관	공립	2000
275	경남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공립	2005
276	경남	김해시	김해민속박물관	공립	2005
277	경남	김해시	김해봉황동유적패총단면전시관	공립	2006
278	경남	산청군	남명기념관	공립	2004
279	경남	남해군	남해항토역사관	공립	2000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년도
280	경남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공립	2003
281	경남	마산시	마산시립박물관	공립	2001
282	경남	산청군	목면시배유지전시관	공립	1997
283	경남	밀양시	밀양시립박물관	공립	1974
284	경남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공립	2004
285	경남	산청군	산청한의학박물관	공립	2007
286	경남	창원시	성산패총전시관	공립	1976
287	경남	의령군	의령박물관	공립	1993
288	경남	산청군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공립	
289	경남	진해시	진해시립박물관	공립	1998
290	경남	창녕군	창녕박물관	공립	1996
291	경남	통영시	한산도이충무공전시관	공립	
292	경남	함안군	함안박물관	공립	2003
293	경남	합천군	합천박물관	공립	2005
294	경남	창원시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대학	1981
295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박물관	대학	1976
296	제주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	국립	2001
297	제주	서귀포시	감굴박물관	공립	2005
298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특산물홍보관	공립	2004
299	제주	서귀포시	서복전시관	공립	2003
300	제주	제주시	제주교육박물관	공립	1995
301	제주	제주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공립	1984
302	제주	제주시	제주돌박물관	공립	2006
303	제주	서귀포시	추사적거지전시관	공립	1984
304	제주	서귀포시	하멜상선전시관	공립	2003
305	제주	제주시	한라수목원	공립	1993
306	제주	제주시	해녀박물관	공립	2006
307	제주	제주시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대학	1967

라. 미술관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 도
1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공립	1988
2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미술관	대학	2006
3	부산	해운대구	부산시립미술관	공립	1998
4	인천	남구	송암미술관	공립	1992
5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	공립	1992
6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공립	1998
7	대전	서구	대전이응노미술관	공립	2007
8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1969
9	경기	안산시	경기도미술관	공립	2006
10	경기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	공립	2008
11	경기	여주군	여주세계생활도서관	공립	2002
12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공립	2007
13	강원	강릉시	강릉미술관	공립	2006
14	강원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	공립	2002
15	강원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공립	2004
16	강원	청원군	대청호미술관	공립	2004
17	강원	청주시	청주시한국공예관	공립	2001
18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립미술관	공립	2004
19	전남	김제시	벽천미술관	공립	1999
20	전남	보성군	보성군립백민미술관	공립	1993
21	전남	곡성군	전라남도옥과미술관	공립	1996
22	경북	청송군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공립	2005
23	경남	창원시	경남도립미술관	공립	2004
24	경남	마산시	마산시립문신미술관	공립	2004
25	경남	김해시	(재)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공립	2008
26	제주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공립	1987
27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립이중섭미술관	공립	2002
28	제주	제주시	제주현대미술관	공립	2007
29	제주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공립	2008

마. 체육시설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1	경기	경기도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	2002
2	경기	경기도	경기도검도회관	경기도	2006
3	서울	강남구	봄은테니스장	강남구	1994
4	서울	강남구	포이테니스장	강남구	1990
5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체육관	강남구	1994
6	서울	강남구	대진체육관	강남구	1997
7	서울	강남구	강남스포츠포츠센터	강남구	2004
8	서울	강남구	역삼청소년수련관	강남구	2004
9	서울	강남구	강남스포츠포츠문화센터수영장	강남구	2005
10	서울	강남구	역삼청소년수련관수영장	강남구	2004
11	서울	강남구	강남스포츠포츠문화센터골프연습장	강남구	2005
12	서울	강남구	강남청담문화센터골프연습장	강남구	2004
13	부산	강서구	상수도강서사업소축구장	강서구	
14	서울	강서구	구립테니스장	강서구	2002
15	서울	강서구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강서구	2004
16	서울	강서구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구	2000
17	서울	강서구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강서구	2004
18	서울	강서구	마곡레포츠센터	강서구	2006
19	서울	강서구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수영장	강서구	2000
20	서울	강서구	공항동문화체육센터수영장	강서구	2004
21	서울	강서구	마곡레포츠센터수영장	강서구	2006
22	서울	강서구	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구	2007
23	경기	화성시	경기도종합사격장	경기도	1999
24	경기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경기도	2008
25	경기	성남시	황송공원인조잔디구장	경기도	2008
26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주경기장	경기도	2002
27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경기도	2002
28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연습경기장	경기도	2002
29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	2003
30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	2004
31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시	2003
32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시	2003
33	경기	고양시	덕양 별무리경기장	고양시	2004
34	경기	고양시	백석공원근린공원축구장	고양시	1994
35	경기	고양시	중산2호근린공원축구장	고양시	1996
36	경기	고양시	고양동운동장축구장	고양시	2001
37	경기	고양시	대화레포츠공용축구장	고양시	2002
38	경기	고양시	고양시립테니스장	고양시	1995
39	경기	고양시	토당제2근린공원테니스장	고양시	2000
40	경기	고양시	대화레포츠공원테니스장	고양시	2002
41	경기	고양시	중산제2호근린공원테니스장	고양시	1996
42	경기	고양시	화정제8호근린공원테니스장	고양시	1998
43	경기	고양시	성라공원테니스장	고양시	2004
44	경기	고양시	벽제배수지테니스장	고양시	2009
45	경기	고양시	고양문예회관체육관	고양시	1989
46	경기	고양시	대화배드민턴경기장	고양시	2007
47	경기	고양시	성사체육관	고양시	2001
48	경기	고양시	고양근린공원실내배드민턴장	고양시	2004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49	경기	고양시	백석배드민턴장	고양시	2006
50	경기	고양시	가좌배드민턴경기장	고양시	2005
51	경기	고양시	마상배드민턴장	고양시	2007
52	경기	고양시	성라1배드민턴경기장	고양시	2006
53	경기	고양시	성라2배드민턴경기장	고양시	2006
54	경기	고양시	식골배드민턴장	고양시	2008
55	경기	고양시	정발산배드민턴경기장	고양시	2008
56	경기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몸과마음담뚝터	고양시	2005
57	경기	고양시	중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고양시	2007
58	경기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네꽃우물수영장	고양시	2005
59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국궁장	고양시	1986
60	경기	고양시	마산공원국궁장	고양시	1999
61	경기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내성사얼음마루	고양시	2005
62	서울	관악구	관악구민운동장	관악구	2004
63	서울	관악구	구민테니스장	관악구	1992
64	서울	관악구	난우공원테니스장	관악구	2008
65	서울	관악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관악구	2000
66	서울	관악구	신림체육센터	관악구	2006
67	서울	관악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수영장	관악구	2000
68	서울	관악구	신림체육센터수영장	관악구	2006
69	서울	관악구	청소년회관수영장	관악구	1995
70	서울	관악구	관악정	관악구	1998
71	광주	북구	무등경기장주경기장	광주시	1965
72	광주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주경기장	광주시	2002
73	광주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광주시	2002
74	경기	광주시	광주시공설운동장	광주시	2006
75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종합운동장	광주시	1997
76	광주	북구	일곡제1근린공원인조잔디구장	광주시	2005
77	광주	광산구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축구장	광주시	2004
78	광주	북구	무등경기장야구장	광주시	1965
79	광주	동구	용산정구장	광주시	2007
80	광주	서구	염주테니스장	광주시	1994
81	광주	서구	전천후테니스장	광주시	2006
82	광주	북구	중흥정구장	광주시	1976
83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	1987
84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	광주시	2007
85	광주	북구	광주다목적체육관	광주시	1993
86	광주	서구	검도장	광주시	1997
87	광주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광주시	1991
88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광주시	1999
89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광주시	2009
90	광주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	1995
91	광주	서구	전천후게이트볼장	광주시	2004
92	광주	서구	광주실내수영장	광주시	1993
93	광주	서구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광주시	2000
94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수영장	광주시	2009
95	광주	북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수영장	광주시	1995
96	광주	남구	관덕정	광주시	1965
97	광주	서구	서향수올림픽제폐기념양궁장	광주시	200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98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승마장	광주시	1987
99	광주	서구	염주골프센터	광주시	1996
100	광주	서구	모아레포츠타운골프연습장	광주시	2006
101	광주	서구	광주실내빙상장	광주시	1997
102	경남	김해시	김해운동장	김해시	2004
103	경남	김해시	진영공설운동장육상경기장	김해시	1999
104	경남	김해시	대동운동장	김해시	1997
105	경남	김해시	안동체육공원축구장	김해시	2005
106	경남	김해시	장유체육공원축구장	김해시	2005
107	경남	김해시	어방체육공원축구장	김해시	2005
108	경남	김해시	한림시산체육공원축구장	김해시	2001
109	경남	김해시	상동운동장축구장	김해시	2009
110	경남	김해시	김해시하키장	김해시	1997
111	경남	김해시	시민체육공원테니스장	김해시	2001
112	경남	김해시	동부테니스장	김해시	2005
113	경남	김해시	장유능동테니스장	김해시	2005
114	경남	김해시	어방테니스장	김해시	1996
115	경남	김해시	경원테니스장	김해시	1995
116	경남	김해시	금병공원테니스장	김해시	2003
117	경남	김해시	한림테니스장	김해시	1995
118	경남	김해시	문화체육관	김해시	1989
119	경남	김해시	진영문화체육센터	김해시	1997
120	경남	김해시	한림체육관	김해시	2002
121	경남	김해시	진례체육관	김해시	2002
122	경남	김해시	김해체육관	김해시	2004
123	경남	김해시	장유스포츠센터우정관	김해시	2004
124	경남	김해시	동부스포츠센터	김해시	2006
125	경남	김해시	전천후계이트볼장	김해시	2003
126	경남	김해시	시민스포츠센터수영장	김해시	2003
127	경남	김해시	김해사격장	김해시	2002
128	경남	김해시	금병정	김해시	1995
129	경남	김해시	봉화정	김해시	2000
130	경남	김해시	시민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김해시	2003
131	경남	김해시	시민스포츠센터빙상장	김해시	2003
132	경남	김해시	김해야구장	김해시	2001
133	경남	김해시	생림공도장	김해시	1997
134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남양주시	2003
135	경기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인조잔디구장	남양주시	2007
136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축구장	남양주시	2008
137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야구장	남양주시	2004
138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야구장	남양주시	2006
139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리틀야구장	남양주시	2007
140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실내체육관	남양주시	2002
141	경기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체육문화센터	남양주시	2002
142	경기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	남양주시	2009
143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운수리 게이트볼장	남양주시	2007
144	경기	남양주시	월산리게이트볼장	남양주시	2004
145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수영장	남양주시	2002
146	경기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수영장	남양주시	2009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147	경기	남양주시	무림정	남양주시	2006
148	서울	노원구	마들근린공원축구장	노원구	2008
149	서울	노원구	초안산근린공원축구장	노원구	2001 (2007보수)
150	서울	노원구	노해근린공원축구장	노원구	1995
151	서울	노원구	마들근린공원테니스장	노원구	1991
152	서울	노원구	초안산근린공원테니스장	노원구	2001
153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체육센터	노원구	1998
154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체육센터수영장	노원구	
155	서울	노원구	수락정	노원구	1994
156	대구	달서구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달서구	1999
157	대구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수영장	달서구	2004
158	대구	달서구	달서구청소년수련관수영장	달서구	1999
159	대구	북구	대구 시민종합운동장	대구시	1975
160	대구	수성구	대구월드컵경기장	대구시	2001
161	대구	수성구	대구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대구시	2001
162	대구	서구	북부하수처리장축구장	대구시	2001
163	대구	북구	강변축구장	대구시	2000
164	대구	북구	신천유소년축구장	대구시	2001
165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보조구장	대구시	1978
166	대구	수성구	고산정수사업소운동장	대구시	2000
167	대구	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대구시	2001
168	대구	달서구	성서이곡운동장축구장	대구시	2007
169	대구	달성군	매곡정수사업소축구장	대구시	2000
170	대구	동구	안심하키장	대구시	2001
171	대구	북구	대구시민운동장야구장	대구시	1981
172	대구	북구	강변리틀야구장	대구시	2008
173	대구	달서구	대구두류야구장	대구시	1981
174	대구	수성구	만촌자전거경기장	대구시	1984
175	대구	서구	대구 감삼테니스장	대구시	1989
176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테니스장	대구시	1992
177	대구	달서구	두류테니스장	대구시	1992
178	대구	달서구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대구시	2003
179	대구	달서구	성서이곡운동장테니스장	대구시	2005
180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	대구시	1971
181	대구	북구	시민체육관	대구시	1992
182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유도장	대구시	1980
183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	대구시	1980
184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역도장	대구시	2003
185	대구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대구시	1987
186	대구	달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구시	1991
187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구시	1994
188	대구	달서구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시	2000
189	대구	달서구	성서실내게이트볼장	대구시	2009
190	대구	동구	여성문화회관실내수영장	대구시	1993
191	대구	달서구	두류수영장	대구시	1984
192	대구	달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	대구시	1991
193	대구	달서구	성서운동장수영장	대구시	2007
194	대구	달서구	달구벌종합복지관수영장	대구시	2000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195	대구	북구	대구사격장	대구시	2008
196	대구	남구	대구국공장	대구시	1975
197	대구	수성구	범어공도장	대구시	1992
198	대구	달서구	학산정	대구시	2004
199	대구	남구	앞산양궁훈련장	대구시	1982
200	대구	달서구	대덕승마장	대구시	1992
201	대구	북구	대구실내빙상장	대구시	1995
202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주경기장	대전시	1979
203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대전시	2009
204	대전	중구	육상실내연습장	대전시	1994
205	대전	중구	사정축구장	대전시	1982
206	대전	중구	산서축구장	대전시	1989
207	대전	서구	갈마공원축구장	대전시	1991
208	대전	서구	월평축구장	대전시	2007
209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	대전시	2001
210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대전시	2001
211	대전	유성구	교육원축구장	대전시	2007
212	대전	대덕구	신탄신축구장	대전시	2007
213	대전	대덕구	송추축구장	대전시	2007
214	대전	중구	한밭야구장	대전시	1965
215	대전	서구	월평사이클경기장	대전시	1994
216	대전	중구	한밭정구장	대전시	2009
217	대전	서구	은평공원테니스장	대전시	1994
218	대전	중구	한밭씨름장	대전시	2009
219	대전	중구	충무체육관	대전시	1970
220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	대전시	1994
221	대전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대전시	1997
222	대전	중구	산성복지관	대전시	2000
223	대전	중구	한마을생활체육관	대전시	1997
224	대전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전시	1991
225	대전	대덕구	체육재활원	대전시	1997
226	대전	중구	한밭게이트볼장	대전시	2009
227	대전	유성구	전천후게이트볼장	대전시	2006
228	대전	동구	용운국제수영장	대전시	2009
229	대전	중구	한밭수영장	대전시	1994
230	대전	중구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수영장	대전시	2000
231	대전	서구	평송청소년수련원수영장	대전시	1997
232	대전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	대전시	1991
233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수영장	대전시	
234	대전	대덕구	체육재활원수영장	대전시	1997
235	대전	서구	월평공도장	대전시	1994
236	대전	대덕구	회덕정	대전시	2006
237	대전	서구	월평양궁장	대전시	1994
238	대전	유성구	복용승마장	대전시	1994
239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부산시	2001
240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보조경기장	부산시	2001
241	부산	서구	구덕종합운동장주경기장	부산시	1973
242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축구연습장	부산시	2002
243	부산	금정구	노포동차량기지창축구장	부산시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244	부산	금정구	스포원 축구장	부산시	2009
245	부산	남구	남부사업소상부체육고원	부산시	1997
246	부산	사상구	삼락강변공원축구장	부산시	
247	부산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축구장	부산시	
248	부산	동래구	수영사업소상부체육시설	부산시	1998
249	부산	강서구	강서하키경기장	부산시	2002
250	부산	연제구	사직종합운동장야구장	부산시	1985
251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야구장	부산시	1973
252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공단스포원경륜경기장	부산시	2002
253	부산	동래구	사직종합운동장테니스장	부산시	1988
254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공단스포원테니스장	부산시	2002
255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테니스장	부산시	2002
256	부산	서구	부산시씨름장	부산시	2002
257	부산	동래구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부산시	1985
258	부산	서구	구덕실내체육관	부산시	1971
259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	부산시	2002
260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실내체육관	부산시	2002
261	부산	기장군	기장체육관	부산시	2002
262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실내훈련장	부산시	1987
263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체조체육관	부산시	1985
264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산시	1991
265	부산	해운대구	부산한마음스포츠크센터	부산시	2007
266	부산	서구	부산국민체육센터	부산시	2002
267	부산	동래구	종합운동장수영장	부산시	1989
268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실내수영장	부산시	2002
269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실내체육관수영장	부산시	2008
270	부산	영도구	부산시종합사격장	부산시	1973
271	부산	연제구	사직정	부산시	2000
272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양궁경기장	부산시	2002
273	부산	금정구	스포원골프연습장	부산시	2008
274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	부산시	2003
275	부산	해운대구	부산요트경기장	부산시	1986
276	부산	북구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시	2005
277	경기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시	2001
278	경기	부천시	부천시민운동장	부천시	1986
279	경기	부천시	부천야구장	부천시	2005
280	경기	부천시	복사공원테니스장	부천시	1994
281	경기	부천시	원미공원테니스장	부천시	1991
282	경기	부천시	시정테니스장	부천시	1997
283	경기	부천시	소사1배수지테니스장	부천시	1985
284	경기	부천시	석천공원테니스장	부천시	1993
285	경기	부천시	종합운동장테니스장	부천시	2001
286	경기	부천시	폐기물처리장내테니스장	부천시	2000
287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야외씨름장	부천시	2008
288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	부천시	1997
289	경기	부천시	송내사회체육관	부천시	2004
290	경기	부천시	서촌다목적체육관	부천시	2005
291	경기	부천시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천시	2002
292	경기	부천시	소사국민체육센터수영장	부천시	2002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293	경기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수영장	부천시	1998
294	경기	부천시	삼정복지회관수영장	부천시	1997
295	경기	부천시	레포츠허브공원도장	부천시	2001
296	경기	부천시	성무정	부천시	2007
297	경기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잔디구장	부천시	2001
298	경기	부천시	북부수자원생태공원내인조잔디구장	부천시	2005
299	경기	부천시	오정대공원인조잔디구장	부천시	2009
300	경기	부천시	종합운동장보조구장	부천시	2001
301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인조잔디구장	부천시	2007
302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잔디축구장	부평구	2002
303	인천	부평구	신트리공원테니스장	부평구	2009
304	인천	부평구	원적산체육공원테니스장	부평구	2009
305	인천	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구	2004
306	인천	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수영장	부평구	2004
307	대전	서구	오람실내테니스장	서구	2006
308	대전	서구	정림테니스장	서구	1999
309	대전	서구	관저테니스장	서구	2009
310	대전	서구	도솔다목적체육관	서구	2002
311	대전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서구	2002
312	대전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	서구	2006
313	대전	서구	서구건강체력관수영장	서구	1996
314	대전	서구	남선공원수영장	서구	2002
315	대전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수영장	서구	2006
316	대전	서구	남선공원빙상장	서구	2002
317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서울시	1989
318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시	1984
319	서울	송파구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시	1984
320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	서울시	1960
321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이촌지구축구장1	서울시	1988
322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이촌지구축구장2	서울시	1991
323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이촌지구교육장	서울시	1997
324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축구장	서울시	
325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축구장	서울시	2009
326	서울	광진구	아차산배수지인조잔디축구장	서울시	2007
327	서울	광진구	한강공원뚝섬지구축구장	서울시	2009
328	서울	도봉구	창동축구장	서울시	2005
329	서울	노원구	공릉배수지 축구장	서울시	2009
330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축구장	서울시	1993
331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시	2001
332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서울시	2001
333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인조잔디축구장	서울시	2005
334	서울	강서구	우장산인조잔디구장	서울시	2006
335	서울	강서구	한강공원강서지구축구장	서울시	2002
336	서울	영등포구	한강공원양화지구축구장	서울시	1988
337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인조구장	서울시	2006
338	서울	서초구	한강공원잠원지구축구장	서울시	2005
339	서울	서초구	한강공원반포지구축구장	서울시	2009
340	서울	강남구	대치유수지체육공원축구장	서울시	2008
341	서울	송파구	한강공원잠실지구축구장1	서울시	198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342	서울	송파구	한강공원광나루지구축구장3	서울시	1986
343	서울	강동구	한강공원광나루지구축구장1~2	서울시	1993
344	서울	광명시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인조잔디축구장	서울시	2007
345	서울	중구	장충리틀야구장	서울시	1972
346	서울	광진구	구의야구공원	서울시	2008
347	서울	노원구	불암산종합스타디움야구장	서울시	2009
348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야구장(임시)	서울시	2001
349	서울	마포구	난지야구장	서울시	2008
350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	서울시	1989
351	서울	양천구	신월야구공원	서울시	2008
352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서울시	1982
353	서울	강동구	한강공원광나루지구야구장(임시)	서울시	2008
354	서울	강동구	한강공원광나루지구야구장(임시)	서울시	2009
355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서울시	1974
356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이촌지구테니스장	서울시	1991
357	서울	용산구	응봉근린공원한남테니스장	서울시	1999
358	서울	용산구	응봉근린공원한남구민테니스장	서울시	1999
359	서울	성동구	독섬서울숲테니스장	서울시	2005
360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테니스장	서울시	
361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독섬지구테니스장	서울시	1991
362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테니스장	서울시	1973
363	서울	도봉구	창동시립테니스장	서울시	2005
364	서울	노원구	공릉배수지테니스장	서울시	2009
365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테니스장	서울시	2009
366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테니스장	서울시	2002
367	서울	강서구	우장테니스장	서울시	1990
368	서울	강서구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서울시	2002
369	서울	구로구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	서울시	2000
370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테니스장	서울시	1987
371	서울	동작구	노량진공원테니스장	서울시	1993
372	서울	서초구	한강공원잠원지구테니스장	서울시	2009
373	서울	서초구	시민의숲테니스장	서울시	1991
374	서울	강남구	대치유수지체육공원테니스장	서울시	2008
375	서울	강동구	한강시민공원광나루지구테니스장	서울시	1993
376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서울시	1963
377	서울	중랑구	신내공원다목적체육관	서울시	2008
378	서울	도봉구	창동배드민턴장	서울시	2007
379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	서울시	1979
380	서울	성동구	성동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4
381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2002
382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2
383	서울	중랑구	망우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6
384	서울	성북구	성북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2
385	서울	강북구	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1
386	서울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서울시	2005
387	서울	노원구	노원청소년수련관	서울시	1997
388	서울	은평구	은평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3
389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5
390	서울	마포구	마포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8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391	서울	양천구	양천주민편의시설	서울시	1999
392	서울	양천구	목동청소년수련관	서울시	1988
393	서울	구로구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2
394	서울	금천구	금천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4
395	서울	영등포구	문래청소년회관	서울시	1987
396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스포츠펀터	서울시	2002
397	서울	강남구	강남주민편의시설	서울시	2001
398	서울	강남구	수서청소년수련관	서울시	1994
399	서울	송파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울시	1995
400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게이트볼장	서울시	2005
401	서울	중구	장충수영장	서울시	1969
402	서울	성동구	성동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4
403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수영장	서울시	2002
404	서울	광진구	한강공원뚝섬지구수영장	서울시	2009
405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2
406	서울	중랑구	망우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6
407	서울	성북구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서울시	2002
408	서울	강북구	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1
409	서울	도봉구	창동시립체육센터	서울시	2005
410	서울	노원구	노원청소년수련관	서울시	1997
411	서울	은평구	은평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3
412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5
413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수영장	서울시	1991
414	서울	마포구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8
415	서울	양천구	목동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1988
416	서울	양천구	서부여성발전센터수영장	서울시	1997
417	서울	구로구	구로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2
418	서울	금천구	금천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2004
419	서울	영등포구	문래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1987
420	서울	영등포구	한강공원여의도지구수영장	서울시	2009
421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잠원지구수영장	서울시	1989
422	서울	송파구	잠실1수영장	서울시	1980
423	서울	송파구	잠실2수영장	서울시	1971
424	서울	송파구	한강시민공원잠실지구수영장	서울시	
425	서울	송파구	서울곰두리체육센터수영장	서울시	1995
426	서울	강동구	한강시민공원광나루지구수영장	서울시	1991
427	서울	강동구	서울장애인복지관리포츠펀터수영장	서울시	1997
428	서울	종로구	황학정	서울시	1898
429	서울	중구	석호정(남산공원)	서울시	1970
430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난지지구국공장	서울시	2009
431	서울	강서구	서울공향정	서울시	1997
432	서울	성동구	뚝섬승마장	서울시	2005
433	서울	중랑구	중랑청소년수련관골프연습장	서울시	1993
434	서울	은평구	은평청소년수련관골프연습장	서울시	2005
435	서울	강남구	수서청소년수련관골프연습장	서울시	2002
436	서울	송파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울시	1995
437	서울	광명시	서울구로청소년복지관골프연습장	서울시	2004
438	서울	양천구	목동실내빙상장	서울시	1989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439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수영장	서울시	2002
440	서울	강남구	수서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서울시	1994
441	서울	서초구	서일교육문화회관	서울시교육청	2006
442	서울	서초구	신동교육문화회관	서울시교육청	2006
443	서울	서초구	연남문화체육센터	서울시교육청	2006
444	서울	서초구	연남문화체육센터수영장	서울시교육청	2006
445	서울	서초구	서일교육문화회관수영장	서울시교육청	2006
446	서울	서초구	신동교육문화회관수영장	서울시교육청	2006
447	경기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시	1984
448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시	2001
449	경기	성남시	하키장	성남시	1997
450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야구장	성남시	2001
451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테니스장	성남시	2001
452	경기	성남시	양지 테니스장	성남시	1995
453	경기	성남시	대원 테니스장	성남시	1997
454	경기	성남시	황송 테니스장	성남시	1998
455	경기	성남시	희망대 테니스장	성남시	1985
456	경기	성남시	수내 테니스장	성남시	2004
457	경기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씨름장	성남시	1984
458	경기	성남시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성남시	1989
459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체육관	성남시	2001
460	경기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	성남시	1994
461	경기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남시	2007
462	경기	성남시	정자청소년수련관	성남시	2004
463	경기	성남시	은행동다목적체육관	성남시	2008
464	경기	성남시	단대게이트볼장	성남시	2004
465	경기	성남시	황송게이트볼장	성남시	2004
466	경기	성남시	황새울게이트볼장	성남시	2003
467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수영장	성남시	2001
468	경기	성남시	중원문화정보센터수영장	성남시	2001
469	경기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성남시	2007
470	경기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수영장	성남시	1994
471	경기	성남시	한성정	성남시	1995
472	경기	성남시	분당정	성남시	1999
473	경기	성남시	태평배수지양공장	성남시	2002
474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체육회관빙상장	성남시	2001
475	서울	송파구	송파구여성전용축구장	송파구	1999
476	서울	송파구	천마공원축구장	송파구	2006
477	서울	송파구	송파유소년야구장	송파구	2009
478	서울	송파구	오금공원테니스장	송파구	1990
479	서울	송파구	오륜테니스장	송파구	1991
480	서울	송파구	송파테니스장	송파구	1989
481	서울	송파구	성내천변테니스장	송파구	2004
482	서울	송파구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송파구	2004
483	서울	송파구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송파구	2004
484	서울	송파구	송파청소년수련관	송파구	2000
485	서울	송파구	마천청소년수련관	송파구	1997
486	서울	송파구	송파구체육문화회관수영장	송파구	2004
487	서울	송파구	송파구체육문화회관골프연습장	송파구	2004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488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주경기장	수원시	1986
489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보조구장	수원시	2000
490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축구장	수원시	2004
491	경기	수원시	여기산공원축구장	수원시	2004
492	경기	수원시	지방산업단지축구장	수원시	2005
493	경기	수원시	영흥공원축구장	수원시	2006
494	경기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축구장	수원시	2005
495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야구장	수원시	1998
496	경기	수원시	오목천체육공원정구장	수원시	2000
497	경기	수원시	올림픽공원테니스장	수원시	1988
498	경기	수원시	매탄공원테니스장	수원시	1988
499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테니스장	수원시	1996
500	경기	수원시	여기산공원테니스장	수원시	2004
501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테니스장	수원시	2004
502	경기	수원시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수원시	1984
503	경기	수원시	수원시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수원시	2004
504	경기	수원시	서수원체육관	수원시	2006
505	경기	수원시	영흥체육관	수원시	2007
506	경기	수원시	권선중앙실내체육관	수원시	2006
507	경기	수원시	숙지 다목적체육관	수원시	2009
508	경기	수원시	여기산 게이트볼장	수원시	1999
509	경기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수영장	수원시	1999
510	경기	수원시	장안구민회수영장	수원시	2006
511	경기	수원시	연무국공장	수원시	1987
512	경기	수원시	이의국공장	수원시	2005
513	경기	수원시	수원시 양궁장	수원시	2004
514	경기	수원시	화산체육공원골프연습장	수원시	2005
515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	안산시	2,006
516	경기	안산시	원시운동장	안산시	1987
517	경기	안산시	시낭운동장	안산시	1989
518	경기	안산시	성호운동장	안산시	2008
519	경기	안산시	와동축구장	안산시	2004
520	경기	안산시	풍경운동장	안산시	2004
521	경기	안산시	호수공원축구장	안산시	2005
522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보조구장	안산시	2006
523	경기	안산시	골안말야구장	안산시	2003
524	경기	안산시	성곡야구장	안산시	2007
525	경기	안산시	시립호수테니스장	안산시	2003
526	경기	안산시	시낭운동장씨름장	안산시	2007
527	경기	안산시	구룡체육관	안산시	1993
528	경기	안산시	관산체육관	안산시	1993
529	경기	안산시	감골시민홀	안산시	2001
530	경기	안산시	와동체육관	안산시	2004
531	경기	안산시	와동배드민턴경기장	안산시	2005
532	경기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	1992
533	경기	안산시	안산올림픽실내수영장	안산시	1995
534	경기	안산시	광덕정	안산시	1993
535	경기	안산시	반월정	안산시	2003
536	경기	안산시	안산골프연습장	안산시	2002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537	경기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안양시	1986
538	경기	안양시	석수체육공원	안양시	2006
539	경기	안양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안양시	2006
540	경기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테니스장	안양시	1986
541	경기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안양시	1990
542	경기	안양시	안양실내체육관	안양시	2000
543	경기	안양시	호계체육관	안양시	2008
544	경기	안양시	안양실내체육관수영장	안양시	1998
545	경기	안양시	안양정	안양시	2001
546	경기	안양시	안양양궁경기장	안양시	2002
547	경기	안양시	안양실내체육관실내빙상장	안양시	2000
548	서울	양천구	해누리축구장	양천구	2004
549	서울	양천구	안양천A,B 축구장	양천구	1994~5
550	서울	양천구	안양천야구장	양천구	1994~5
551	서울	양천구	목동테니스장	양천구	2002
552	서울	양천구	해누리테니스장	양천구	1998
553	서울	양천구	계남다목적체육관	양천구	2009
554	서울	양천구	양천구민체육센터	양천구	1995
555	서울	양천구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구	1999
556	서울	양천구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	2007
557	서울	양천구	양천구민체육센터수영장	양천구	1995
558	서울	양천구	신월문화체육센터수영장	양천구	1999
559	서울	양천구	목동문화체육센터수영장	양천구	2007
560	서울	양천구	영학정	양천구	2005
561	서울	양천구	목동문화체육센터골프연습장	양천구	2007
562	경기	용인시	용인종합운동장	용인시	2002
563	경기	용인시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	2004
564	경기	용인시	용인실외종합테니스장	용인시	2002
565	경기	용인시	용인실내종합테니스장	용인시	2003
566	경기	용인시	실내체육관	용인시	2003
567	경기	용인시	용인시여성회관YMCA스포츠센터	용인시	2004
568	경기	용인시	용인시청소년수련관체육관	용인시	2005
569	경기	용인시	용인시여성회관YMCA스포츠센터 수영장	용인시	2004
570	경기	용인시	용인시청소년수련관수영장	용인시	2005
571	울산	중구	울산종합운동장	울산시	2005
572	울산	중구	울산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울산시	2005
573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시	2001
574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보조경기장	울산시	2001
575	울산	동구	서부시민운동장	울산시	1996
576	울산	울주군	온산하수처리장축구장	울산시	1997
577	울산	울주군	연양수질개선사업소축구장	울산시	2005
578	울산	남구	문수테니스장	울산시	2005
579	울산	남구	종하체육관	울산시	1977
580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	울산시	2000
581	울산	중구	동천국민체육센터	울산시	2004
582	울산	중구	동천국민체육센터수영장	울산시	2004
583	울산	남구	문수실내수영장	울산시	2005
584	울산	남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수영장	울산시	2000
585	울산	남구	문수실내사격장	울산시	2005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586	울산	남구	문수정	울산시	
587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인천시	2002
588	인천	남구	문학보조경기장	인천시	
589	인천	남동구	인천장수구장	인천시	1986
590	인천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축구장	인천시	2006
591	인천	남구	다목적경기장(하키장)	인천시	2,005
592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인천시	2002
593	인천	계양구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인천시	2006
594	인천	서구	인천시립테니스장	인천시	1999
595	인천	중구	인천시립실내체육관	인천시	1976
596	인천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인천시	2006
597	인천	계양구	계산국민체육센터	인천시	2001
598	인천	남동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인천시	1992
599	인천	중구	인천시립실내수영장	인천시	1978
600	인천	계양구	계산국민스포츠센터수영장	인천시	2001
601	인천	남동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	인천시	1992
602	인천	부평구	여성문화회관수영장	인천시	1994
603	인천	연수구	인천시립사격장	인천시	1978
604	인천	남구	무덕정	인천시	1978
605	인천	계양구	연무정	인천시	1991
606	인천	남동구	남수정	인천시	1994
607	인천	남구	인천시립양궁장	인천시	2007
608	전남	나주시	나주시벨로드롬	전라남도	1987
609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종합체육관	전라남도	1991
610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종합사격장	전라남도	2008
611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테니스장	전라북도	2005
612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체육관	전라북도	2005
613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전라북도	2005
614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전라북도	1997
615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수영장	전라북도	1991
616	전북	임실군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전라북도	2003
617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양궁(훈련)장	전라북도	2009
618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주경기장	전주시	1980
619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시	2001
620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전주시	2001
621	전북	전주시	전주체련공원축구장	전주시	2004
622	전북	전주시	전주아중체련공원축구장	전주시	2005
623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운동장축구장	전주시	1980
624	전북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축구장	전주시	2008
625	전북	전주시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	전주시	2009
626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야구장	전주시	1980
627	전북	전주시	전주자전거경륜장	전주시	1991
628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테니스장	전주시	2003
629	전북	전주시	덕진체련공원테니스장	전주시	1991/2006
630	전북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전주시	2008
631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	전주시	1973
632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종합관	전주시	1996
633	전북	전주시	체련공원배드민턴장	전주시	2007
634	전북	전주시	송천실내게이트볼장	전주시	2001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635	전북	전주시	전주원산수영장	전주시	2004
636	전북	전주시	전주승마장	전주시	1991
637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	전주시	1996
638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주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1984
639	제주	제주시	애향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1984
640	제주	제주시	한림종합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2003
641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2005
642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43	제주	서귀포시	생활체육공원육상장	제주특별자치도	2005
644	제주	서귀포시	동아마라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05
645	제주	서귀포시	남원생활체육관주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1993
646	제주	서귀포시	대정문화체육센터주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47	제주	서귀포시	안덕생활체육관주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48	제주	서귀포시	표선생활체육관주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1998
649	제주	서귀포시	성산생활체육관주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2004
650	제주	제주시	노형미리내공원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3
651	제주	제주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652	제주	제주시	한경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653	제주	제주시	이호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654	제주	제주시	외도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655	제주	제주시	사라봉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8
656	제주	제주시	우도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8
657	제주	제주시	애월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9
658	제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59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60	제주	서귀포시	시민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61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62	제주	서귀포시	결매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4
663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축구공원	제주특별자치도	2007
664	제주	서귀포시	일출고성운동장	제주특별자치도	2008
665	제주	서귀포시	제주유나이티드전용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9
666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연정정구장	제주특별자치도	1984
667	제주	제주시	한림테니스장	제주특별자치도	2005
668	제주	제주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제주특별자치도	2004
669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테니스장	제주특별자치도	2007 (중축)
670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한라씨름장	제주특별자치도	2008
671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한라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83
672	제주	제주시	제주시민회관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66
673	제주	제주시	제주시생활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8
674	제주	제주시	한림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7
675	제주	제주시	애월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4
676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4
677	제주	제주시	조천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8
678	제주	제주시	한경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8
679	제주	제주시	추자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2009
680	제주	제주시	우도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2009
68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민회관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72
682	제주	서귀포시	남원생활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8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683	제주	서귀포시	표선생활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8
684	제주	서귀포시	안덕생활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1998
685	제주	제주시	제주도유도회관	제주특별자치도	2002
686	제주	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01
687	제주	제주시	애월국민체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08
688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제주특별자치도	1992
689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05
690	제주	서귀포시	대정문화체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1997
691	제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09
692	제주	제주시	제주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2
693	제주	제주시	애월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694	제주	제주시	구좌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695	제주	제주시	한림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9
696	제주	제주시	조천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697	제주	제주시	구좌동부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9
698	제주	제주시	환경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9
699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7
700	제주	서귀포시	남원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5
701	제주	서귀포시	대정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702	제주	서귀포시	표선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3
703	제주	서귀포시	성산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2006
704	제주	서귀포시	안덕전천후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1997
705	제주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	제주특별자치도	1984
706	제주	제주시	외도수영장	제주특별자치도	1997
707	제주	제주시	한라정(공도장)	제주특별자치도	1985
708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공도장	제주특별자치도	1998
709	제주	제주시	청소년수련원골프연습장	제주특별자치도	1996
710	제주	제주시	제주주경기장야구장	제주특별자치도	1984
71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야구장	제주특별자치도	2005
712	제주	서귀포시	신흥2리게이트볼장	제주특별자치도	1998
713	제주	서귀포시	동홍생활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8
714	제주	서귀포시	효돈생활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7
715	경남	창원시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시	1993
716	경남	창원시	창원종합사격장내축구장	창원시	1981
717	경남	창원시	창원종합운동장내보조경기장	창원시	1993
718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주경기장	창원시	2009
719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보조경기장1	창원시	2009
720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보조경기장2	창원시	2009
721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보조경기장3	창원시	2009
722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보조경기장4	창원시	2009
723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하프돔	창원시	2009
724	경남	창원시	88올림픽야구장	창원시	2007
725	경남	창원시	창원종합테니스장	창원시	1998
726	경남	창원시	창원체육관	창원시	1996
727	경남	창원시	동읍체육관	창원시	1997
728	경남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시	1991
729	경남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	창원시	2009
730	경남	창원시	동읍봉강게이트볼장	창원시	2008
731	경남	창원시	창원실내수영장	창원시	1995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732	경남	창원시	늘푸른전당수영장	창원시	1994
733	경남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수영장	창원시	1989
734	경남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수영장	창원시	2009
735	경남	창원시	창원종합사격장	창원시	1982
736	경남	창원시	창원공도장	창원시	1990
737	경남	창원시	서부스포츠센터빙상장	창원시	2009
738	충남	천안시	천안종합운동장	천안시	2001
739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천안시	2008
740	충남	천안시	하키장	천안시	2,001
741	충남	천안시	천안테니스장	천안시	2001
742	충남	천안시	천안정구장	천안시	2001
743	충남	천안시	오룡경기장정구장	천안시	1986
744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	천안시	2001
745	충남	천안시	아우내체육관	천안시	1994
746	충남	천안시	천안신방체육관	천안시	2004
747	충남	천안시	동면다목적체육관	천안시	2006
748	충남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천안시	2007
749	충남	천안시	목천체육관	천안시	2008
750	충남	천안시	국민체육센터	천안시	2001
751	충남	천안시	직산게이트볼장	천안시	2004
752	충남	천안시	목천서리게이트볼장	천안시	2004
753	충남	천안시	풍서게이트볼장	천안시	2004
754	충남	천안시	광덕게이트볼장	천안시	2003
755	충남	천안시	성남게이트볼장	천안시	2003
756	충남	천안시	수신게이트볼장	천안시	2001
757	충남	천안시	병천게이트볼장	천안시	2001
758	충남	천안시	중앙동게이트볼장	천안시	2004
759	충남	천안시	원성1동게이트볼장	천안시	1996
760	충남	천안시	쌍용1동게이트볼장	천안시	2003
761	충남	천안시	쌍용3동게이트볼장	천안시	2002
762	충남	천안시	입장게이트볼장	천안시	2009
763	충남	천안시	성환게이트볼장	천안시	2009
764	충남	천안시	목천삼성리게이트볼장	천안시	2009
765	충남	천안시	천안정	천안시	1996
766	충북	청주시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시	1979
767	충북	청주시	용정축구공원	청주시	2009
768	충북	청주시	청주야구장	청주시	1979
769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	2001
770	충북	청주시	청주술밭정구장	청주시	2004
771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	청주시	1974
772	충북	청주시	배드민턴·태권도장	청주시	2009
773	충북	청주시	남궁유도회관	청주시	1979
774	충북	청주시	청주유도회관	청주시	2004
775	충북	청주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주시	1990
776	충북	청주시	청주실내수영장	청주시	1990
777	충북	청주시	김수녕기념양궁장	청주시	1994
778	충북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골프연습장	청주시	2008
779	충북	청주시	우암정	청주시	1990
780	충북	청주시	충북스포츠센터	충청북도	2004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유주	준공연도
781	충북	청주시	충북체육회관	충청북도	1995
782	전남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	포항시	1985
783	경북	포항시	인덕잔디구장	포항시	1985
784	경북	포항시	홍해축구장	포항시	2004
785	경북	포항시	기계면민운동장	포항시	1995
786	경북	포항시	포항시간이야구장	포항시	2002
787	경북	포항시	포항시민테니스장	포항시	1991
788	경북	포항시	문덕테니스장	포항시	1999
789	경북	포항시	벳머리테니스장	포항시	2009
790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	포항시	1984
791	경북	포항시	홍해실내체육관	포항시	2003
792	경북	포항시	포항국민체육센터	포항시	2008
793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수영장	포항시	1985
794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사격장	포항시	1985
795	경북	포항시	포항국궁장	포항시	1988
796	경기	화성시	비봉인조잔디축구장	화성시	2006
797	경기	화성시	쌍봉산근린공원인조잔디구장	화성시	2007
798	경기	화성시	도원체육공원인조잔디구장	화성시	2009
799	경기	화성시	시청내테니스장	화성시	2000
800	경기	화성시	송산테니스장	화성시	2009
801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테니스장	화성시	2008
802	경기	화성시	도원체육공원테니스장	화성시	2009
803	경기	화성시	유엔아이센터	화성시	2008
804	경기	화성시	쌍봉산 게이트볼장	화성시	2007
805	경기	화성시	매송 야목게이트볼장	화성시	2006
806	경기	화성시	마도게이트볼장	화성시	2002
807	경기	화성시	송산 게이트볼장	화성시	2001
808	경기	화성시	서신 게이트볼장	화성시	2004
809	경기	화성시	팔탄울암 게이트볼장	화성시	1994
810	경기	화성시	팔탄구장 게이트볼장	화성시	2007
811	경기	화성시	장안게이트볼장	화성시	
812	경기	화성시	동탄게이트볼장	화성시	2007
813	경기	화성시	남양 게이트볼장	화성시	2001
814	경기	화성시	구봉산근린공원게이트볼장	화성시	2004
815	경기	화성시	다람산근린공원게이트볼장	화성시	2008
816	경기	화성시	화성추모공원게이트볼장	화성시	2008
817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게이트볼장	화성시	2008
818	경기	화성시	도원체육공원게이트볼장	화성시	2009
819	경기	화성시	반월동 게이트볼장	화성시	2009
820	경기	화성시	유엔아이센터내실내수영장	화성시	2008
821	경기	화성시	팔탄국궁장	화성시	2006
822	경기	화성시	유엔아이센터내빙상장	화성시	2008

1-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체육시설

가. 민간 종합공연장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관일자	객석수
1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	민간	1999.12.06	1,103
2	서울	강남구	오디토리움	민간	2006.03.13	1,058
3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	민간	1998.02.11	2,670
4	서울	광진구	덤아트홀	민간	2004.01.20	2,062
5	서울	광진구	유니버설아트센터	민간	1981.11.13	1,036
6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 문화관 대극장	민간	1999.05.04	2,038
7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민간	2001.04.30	1,006
8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	민간	2006.10.28	1,240
9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	민간	2009.11.10	1,184
10	대전	동구	우송예술회관	민간	1992.12.15	1,214
11	대전	유성구	엑스포아트홀	민간	1993.12.09	1,105
12	경기	과천시	삼천리대극장	민간	1988.02.13	2,858
13	경기	양평군	썰매장의 야외공연장	민간	2006.07.14	2,000
14	전남	광양시	백운아트홀	민간	2001.05.03	1,088
15	제주	제주시	제주매직월드	민간	2005.03.24	1,646

나. 박물관

연번	도시	시군구	시설명	운영주체	개관년도
1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63
2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자연사박물관	사립대학교	1978
3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55
4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한의학박물관	사립대학교	2000
5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34
6	서울	성북구	국민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73
7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71
8	서울	중구	동국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63
9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95
10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64
11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66
12	서울	광진구	세종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73
13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71
14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정영양자수박물관	사립대학교	2004
15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24
16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35
17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자연사박물관	사립대학교	1969
18	서울	성동구	한양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79
19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72
20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59
21	부산	부산진구	동의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86
22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84
23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사립대학교	1978
24	대구	북구	대구보건대학인당박물관	사립대학교	2004
25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26	대전	동구	대전대박물관	사립대학교	1984
27	대전	동구	대전보건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92
28	대전	대덕구	한남대자연사박물관	사립대학교	1983
29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사립대학교	1982
30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95
31	경기	수원시	경기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83
32	경기	용인시	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사립대학교	2004
33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사립대학교	1967
34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79
35	경기	화성시	수원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1967
36	경기	용인시	용인대학교박물관	사립대학교	2003
37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항공우주박물관	사립대학교	2004

연번	도시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 도
38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91
39	강원	강릉시	관동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76
40	강원	원주시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사립대학교	2001
41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88
42	충남	청주시	청주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67
43	충남	청원군	충청대학박물관	사립대학교	1991
44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68
45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85
46	경북	칠곡군	경북과학대학박물관	사립대학교	1996
47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사립대학교	1980
48	경북	경산시	대구카톨릭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77
49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95
50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사립대학교	1983
51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1968
52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자연박물관	사립대학교	1998
53	경남	마산시	경남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2006
54	경남	진주시	인제대학교 박물관	사립대학교	2007
55	경남	김해시	경상대학교 부속 박물관	사립대학교	1984

다. 미술관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개 관 년 도
1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사립대학교	2004
2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미술관	사립대학교	1997
3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미술관	사립대학교	1989
4	경기	이천시	해강도자기미술관	사립대학교	1990

라. 체육시설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공년도
1	서울	강동구	인조잔디축구장	강동구	2003
2	서울	강동구	강동테니스장	강동구	1991
3	서울	강동구	일자산제1체육관	강동구	2008
4	서울	강동구	일자산제2체육관	강동구	2008
5	서울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강동구	2003
6	서울	강동구	해공체육문화센터	강동구	2002
7	서울	강동구	강동청소년회관	강동구	1995
8	서울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수영장	강동구	2003
9	서울	강동구	해공골프연습장	강동구	2004
10	서울	강북구	강북구민운동장	강북구	2000
11	서울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크터	강북구	2005
12	서울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구	2001
13	서울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수영장	강북구	2001
14	서울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크터	강북구	2005
15	서울	강북구	오동골프연습장	강북구	1999
16	인천	계양구	계산구장	계양구	1985
17	인천	계양구	서운체육공원테니스장	계양구	2006
18	인천	계양구	서운간이체육관	계양구	2000
19	인천	계양구	다남게이트볼장	계양구	2008
20	경기	광명시	시민운동장	광명시	1986
21	경기	광명시	시립테니스장	광명시	2008
22	경기	광명시	광명실내체육관	광명시	1993
23	경기	광명시	광명국민체육센터	광명시	2008
24	경기	광명시	시립국공장	광명시	2008
25	경기	광명시	골프연습장	광명시	2000
26	광주	광산구	송정근린공원테니스장	광산구	2007
27	광주	광산구	첨단테니스장	광산구	2009
28	광주	광산구	선광학교테니스장	광산구	2004
29	광주	광산구	첨단전천후게이트볼장	광산구	2005
30	광주	광산구	송무정	광산구	2001
31	광주	광산구	풍영체육시설단지축구장	광산구	2009
32	광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광산구	2003
33	광주	광산구	첨단실내배드민턴장	광산구	2005
34	광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수영장	광산구	2003
35	서울	광진구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테니스장	광진구	1999
36	서울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	2005
37	서울	광진구	광진구민체육센터	광진구	2006
38	서울	광진구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구	2008

연 번	시 도	시 군 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 공 년 도
39	서울	광진구	광진문화예술회관수영장	광진구	2005
40	서울	광진구	광진구민체육센터	광진구	2006
41	서울	광진구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구	2008
42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운동장	구로구	1989
43	서울	구로구	안양천A,B구장	구로구	1989
44	서울	구로구	안양천C구장	구로구	2004
45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구로구	1989
46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체육센터	구로구	1992
47	서울	구로구	구민생활체육관	구로구	1991
48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체육센터수영장	구로구	1992
49	서울	구로구	공동종합사회복지관수영장	구로구	2000
50	경북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구미시	1981
51	경북	구미시	구미시씨름연습장	구미시	2008
52	경북	구미시	구미박정희체육관	구미시	2000
53	경북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미시	1991
54	경북	구미시	선산전천후게이트볼장	구미시	2007
55	경북	구미시	주아리전천후게이트볼장	구미시	2008
56	경북	구미시	초곡리전천후게이트볼장	구미시	2008
57	경북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수영장	구미시	2000
58	경북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	구미시	1991
59	경북	구미시	금오정	구미시	2001
60	전남	구미시	구미시민종합운동장	구미시	1984
61	울산	남구	선암수변공원축구장	남구	2009
62	울산	남구	울산문수국제양궁장	남구	2009
63	인천	남동구	구월근린공원인조잔디축구장	남동구	2005
64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근린공원인조잔디축구장	남동구	2008
65	인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구	2006
66	인천	남동구	남동수영장	남동구	2007
67	인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수영장	남동구	2006
68	인천	남동구	구월정	남동구	2004
69	인천	남동구	남호정	남동구	2004
70	인천	남동구	김미현골프월드	남동구	2009
71	서울	도봉구	초안산인조잔디축구장	도봉구	2005
72	서울	도봉구	도봉실내수영장	도봉구	2008
73	대구	동구	해서테니스장	동구	1997
74	대구	동구	동구문화체육회관	동구	2004
75	대구	동구	동구문화체육회관실내수영장	동구	2004
76	서울	동대문구	장평근린공원테니스장	동대문구	1984
77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체육관	동대문구	2004
78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	1992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공년도
79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2000
80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민체육센터수영장	동대문구	1992
81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2000
82	서울	동작구	동작주차공원테니스장	동작구	1979
83	서울	동작구	흑석체육센터	동작구	1998
84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	2002
85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동작구	2002
86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수영장	동작구	2002
87	서울	동작구	흑석체육센터수영장	동작구	1998
88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수영장	동작구	2002
89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골프연습장	동작구	2002
90	서울	동작구	동작주차공원테니스장	동작구	1979
91	서울	동작구	흑석체육센터	동작구	1998
92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	2002
93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동작구	2002
94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수영장	동작구	2002
95	서울	동작구	흑석체육센터수영장	동작구	1998
96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수영장	동작구	2002
97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골프연습장	동작구	2002
98	서울	마포구	망원동테니스장	마포구	1991
99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마포구	2002
100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수영장	마포구	2002
101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마포구	2002
102	부산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부산진구	2006
103	광주	북구	첨단체육공원테니스장	북구	1998
104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테니스장	북구	2008
105	광주	북구	문흥동근린공원내축구공원	북구	2007
106	광주	북구	산동교친수지구축구장	북구	2009
107	광주	북구	첨단체육공원축구장	북구	1998
108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	북구	1995
109	대구	북구	연암공원축구장	북구	2006
110	대구	북구	연암테니스장	북구	2001
111	대구	북구	북구청소년회관실내수영장	북구	2000
112	부산	북구	북구구민운동장(A,B)	북구	
113	부산	북구	화명정수사업소축구장	북구	
114	부산	북구	백양생활체육관	북구	2006
115	부산	사하구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사하구	2005
116	광주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정구장1	서구	2004
117	광주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정구장2	서구	2009
118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테니스장	서구	199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공년도
119	광주	서구	덕흥동영산강둔치테니스장	서구	2009
120	광주	서구	광화계이트볼장	서구	2009
121	광주	서구	서창계이트볼장	서구	2009
122	광주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운동장	서구	2004
123	광주	서구	덕흥동영산강둔치축구장	서구	2009
124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	서구	2000
125	광주	서구	국민체육센터	서구	2004
126	인천	서구	서곶근린공원인조잔디축구장	서구	2004
127	인천	서구	검단4호공원	서구	2009
128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서구	2000
129	인천	서구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	2005
130	인천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	서구	2008
131	인천	서구	실내계이트볼경기장	서구	2007
132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실내수영장	서구	2001
133	인천	서구	서구청소년수련관실내수영장	서구	2005
134	인천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서구	2008
135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립인조잔디구장	서대문구	2004
136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테니스장	서대문구	1991
137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테니스장	서대문구	1991
138	서울	서대문구	가좌테니스장	서대문구	2000
139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체육회관	서대문구	1993
140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체육회관수영장	서대문구	1993
141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민체육회관골프연습장	서대문구	2009
142	서울	서초구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서초구	2005
143	서울	서초구	방배배수지축구장	서초구	2007
144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축구장	서초구	2005
145	서울	서초구	잠원스포츠파크테니스장	서초구	2006
146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서초구	2005
147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체육센터	서초구	1994
148	서울	서초구	잠원스포츠파크	서초구	2006
149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서초구	2008
150	서울	서초구	양재천수영장	서초구	2007
151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체육센터수영장	서초구	1994
152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서초구	2008
153	서울	성북구	월곡구민운동장	성북구	1993
154	서울	성북구	월곡인조잔디축구장	성북구	2002
155	서울	성북구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성북구	2001
156	서울	성북구	성북구민체육관	성북구	1993
157	서울	성북구	개운산스포츠타운	성북구	2000
158	서울	성북구	개운산스포츠타운수영장	성북구	2000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공년도
159	서울	성북구	성북종합레포츠타운수영장	성북구	2001
160	서울	성북구	북악골프연습장	성북구	1971
161	서울	성북구	성북종합레포츠타운골프연습장	성북구	2001
162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	수성구	1993
163	대구	수성구	화랑공원테니스장	수성구	2009
164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성구	1996
165	경기	시흥시	정왕동육상경기장	시흥시	2007
166	경기	시흥시	포동생활체육공원시민운동장	시흥시	2004
167	경기	시흥시	육구공원인조잔디구장	시흥시	2004
168	경기	시흥시	복지회관테니스장	시흥시	1997
169	경기	시흥시	시흥시민(포동)운동장테니스장	시흥시	2002
170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테니스장	시흥시	1997
171	경기	시흥시	계수동테니스장	시흥시	1992
172	경기	시흥시	매화동테니스장	시흥시	2007
173	경기	시흥시	희망공원테니스장	시흥시	1994
174	경기	시흥시	정왕동체육공원내테니스장	시흥시	2001
175	경기	시흥시	군자동테니스장	시흥시	1995
176	경기	시흥시	소망공원테니스장	시흥시	2008
177	경기	시흥시	시흥시체육관	시흥시	1996
178	경기	시흥시	정왕배드민턴장(실내체육관)	시흥시	2003
179	경기	시흥시	연성다목적체육관	시흥시	2004
180	경기	시흥시	시흥시국민체육센터	시흥시	2007
181	경기	시흥시	여성회관직영수영장	시흥시	2002
182	경기	시흥시	시흥시국민체육센터수영장	시흥시	2007
183	경기	시흥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수영장	시흥시	2007
184	경기	시흥시	시흥정	시흥시	2001
185	경기	시흥시	소래정	시흥시	2009
186	경기	시흥시	황현정	시흥시	1998
187	경기	시흥시	물왕정	시흥시	1992
188	서울	영등포구	영롱이역새1구장	영등포구	1996
189	서울	영등포구	영롱이역새2구장	영등포구	2002
190	서울	영등포구	영롱이갈대1구장	영등포구	1996
191	서울	영등포구	영롱이갈대2구장	영등포구	1996
192	서울	영등포구	영롱이역새3구장	영등포구	2006
193	서울	영등포구	영롱이갈대3구장	영등포구	2006
194	서울	영등포구	대림체육공원축구장	영등포구	1996
195	서울	영등포구	대림체육공원테니스장	영등포구	1996
19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영등포구	2004
197	서울	영등포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구	
19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민체육센터수영장	영등포구	2004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공년도
199	서울	영등포구	신길종합복지관수영장	영등포구	2003
2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민체육센터골프연습장	영등포구	2004
201	강원	원주시	원주종합경기장	원주시	1980
202	강원	원주시	시민공원내인조잔디축구장	원주시	2006
203	강원	원주시	야구장대체시설	원주시	2009
204	강원	원주시	북원테니스장	원주시	1984
205	강원	원주시	백운테니스장	원주시	1996
206	강원	원주시	동화테니스장	원주시	2006
207	강원	원주시	치악체육관	원주시	1980
208	강원	원주시	백운체육관	원주시	1994
209	강원	원주시	엘레트체육관	원주시	2009
210	강원	원주시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	원주시	2001
211	강원	원주시	원주국민체육센터	원주시	2006
212	강원	원주시	부론면실내게이트볼장	원주시	2003
213	강원	원주시	명륜동실내게이트볼장	원주시	2000
214	강원	원주시	소초면실내게이트볼장	원주시	2007
215	강원	원주시	태장2동실내게이트볼장	원주시	2008
216	강원	원주시	문막읍실내게이트볼장	원주시	2009
217	강원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수영장	원주시	1999
218	강원	원주시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원주시	2006
219	강원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수영장	원주시	2001
220	강원	원주시	학봉정	원주시	1983
221	강원	원주시	원주양궁장	원주시	1998
222	강원	원주시	원주양궁연습장	원주시	2008
223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축구장	은평구	2006
224	서울	은평구	은평구민체육센터테니스장	은평구	2003
225	서울	은평구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구	2003
226	서울	은평구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구	2003
227	서울	은평구	은평구민체육센터골프연습장	은평구	2003
22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종합운동장주경기장	의정부시	2002
229	경기	의정부시	근제축구장	의정부시	2006
230	경기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의정부시	2008
231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사이클경기장	의정부시	1989
232	경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테니스장	의정부시	1995
23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체육관	의정부시	1996
234	경기	의정부시	추동배드민턴장	의정부시	2007
235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의정부시	2003
236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실내수영장	의정부시	1993
237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의정부시	2003
238	경기	의정부시	용현정	의정부시	2005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소유주	준공년도
241	전북	익산시	익산종합경기장보조경기장	익산시	2008
242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축구장	익산시	2002
243	전북	익산시	영등시민공원축구장	익산시	2008
244	전북	익산시	팔봉3호근린공원축구장	익산시	2007
245	전북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축구장	익산시	2006
246	전북	익산시	함열아사달공원축구장	익산시	2009
247	전북	익산시	문화체육센터축구장	익산시	2009
248	전북	익산시	수도산체육공원	익산시	2009
249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공원테니스장	익산시	1998
250	전북	익산시	황등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익산시	2003
251	전북	익산시	배산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익산시	2006
252	전북	익산시	팔봉3호근린공원테니스장	익산시	2007
253	전북	익산시	문화체육센터테니스장	익산시	2009
254	전북	익산시	익산실내체육관	익산시	1997
255	전북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펜싱경기장	익산시	2,008
256	전북	익산시	함열올림픽스포츠클럽센터	익산시	2000
257	전북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익산시	1991
258	전북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	익산시	2002
259	전북	익산시	황등생활체육공원체육관	익산시	2004
260	전북	익산시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4
261	전북	익산시	함라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4
262	전북	익산시	용안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4
263	전북	익산시	오산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5
264	전북	익산시	웅포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5
265	전북	익산시	성당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5
266	전북	익산시	여산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5
267	전북	익산시	황등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9
268	전북	익산시	함라실내게이트볼장	익산시	2009
269	전북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	익산시	1991
270	전북	익산시	함열올림픽스포츠클럽센터수영장	익산시	2000
271	전북	익산시	문화체육센터수영장	익산시	2009
272	전북	익산시	송백정	익산시	2001
273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중랑구	2002
274	서울	중랑구	용마목포공원인조잔디축구장	중랑구	2007
275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구	1999
276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	2006
277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체육센터수영장	중랑구	1999
278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	2006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공년도
279	경남	진주시	진주공설운동장	진주시	1969
280	경남	진주시	진주공설운동장제1보조구장	진주시	95
281	경남	진주시	진주공설운동장제2보조구장	진주시	69
282	경남	진주시	모덕축구장	진주시	2005
283	경남	진주시	진주스포츠파크	진주시	2008
284	경남	진주시	진주공설테니스장	진주시	1982
285	경남	진주시	생활체육테니스장	진주시	1992
286	경남	진주시	모덕생활테니스장	진주시	2002
287	경남	진주시	상평생활체육관	진주시	1990
288	경남	진주시	문산실내체육관	진주시	1997
289	경남	진주시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시	2008
290	경남	진주시	하형주체육관	진주시	1986
291	경남	진주시	진주실내수영장	진주시	2008
292	경남	진주시	진주시 궁도장	진주시	2005
293	경기	파주시	파주스타디움(공설운동장)	파주시	2004
294	경기	파주시	내포리체육공원(제2공설운동장)	파주시	2003
295	경기	파주시	금촌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1997
296	경기	파주시	적성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2001
297	경기	파주시	방축리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2005
298	경기	파주시	파평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2005
299	경기	파주시	문산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2006
300	경기	파주시	파주스타디움(공설운동장)보조구장	파주시	2006
301	경기	파주시	월릉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2008
302	경기	파주시	향양리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2008
303	경기	파주시	교하체육공원축구장	파주시	2009
304	경기	파주시	교하체육공원 야구장	파주시	2009
305	경기	파주시	금촌체육공원테니스장	파주시	1997
306	경기	파주시	통일공원테니스장	파주시	2001
307	경기	파주시	적성체육공원테니스장	파주시	2001
308	경기	파주시	파주스타디움(공설운동장)테니스장	파주시	2001
309	경기	파주시	내포리체육공원(제2공설운동장)테니스장	파주시	2000
310	경기	파주시	연풍리체육공원테니스장	파주시	2003
311	경기	파주시	월릉체육공원테니스장	파주시	2008
312	경기	파주시	교하체육공원테니스장	파주시	2009
313	경기	파주시	광탄테니스장	파주시	2009
314	경기	파주시	파주시배드민턴경기장	파주시	2006
315	경기	파주시	문산체육공원실내체육관	파주시	2009
316	경기	파주시	파주시스포츠센터	파주시	2003
317	경기	파주시	파주스타디움(공설운동장)게이트블랑	파주시	2007

연번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소 유 주	준공년도
318	경기	파주시	파주스타디움공도장	파주시	2004
319	경기	파주시	교하체육공원공도장	파주시	2009
320	경기	평택시	평택합정종합운동장	평택시	1987
321	경기	평택시	평택서부 공설운동장	평택시	1994
322	경기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축구장	평택시	2001
323	경기	평택시	신대체육공원축구장	평택시	2002
324	경기	평택시	합정레포츠공원축구장	평택시	2004
325	경기	평택시	평성레포츠공원축구장	평택시	2005
326	경기	평택시	여술근린공원축구장	평택시	1998
327	경기	평택시	서탄축구장	평택시	2008
328	경기	평택시	합정레포츠하키장	평택시	2,007
329	경기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테니스장	평택시	2001
330	경기	평택시	신대체육공원테니스장	평택시	2002
331	경기	평택시	안정근린공원테니스장	평택시	2007
332	경기	평택시	북부문예회관실내체육관	평택시	1990
333	경기	평택시	서평택국민체육센터	평택시	2005
334	경기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	평택시	2003
335	경기	평택시	본정리게이트볼장	평택시	2008
336	경기	평택시	동부공원게이트볼장	평택시	2008
337	경기	평택시	신장게이트볼장	평택시	2009
338	경기	평택시	중앙동게이트볼장	평택시	2009
339	경기	평택시	현화게이트볼장	평택시	2008
340	경기	평택시	평택시실내수영장	평택시	1994
341	경기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실내수영장	평택시	2003
342	경기	평택시	서평택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평택시	2005
343	경기	평택시	신대체육공원	평택시	2002
344	경기	평택시	평택호호트훈련장	평택시	1986
345	부산	해운대구	장산공원운동장	해운대구	

3.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정당한 편의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수화통역	한국어 또는 그 이외의 언어를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에게 수화로 옮겨 주는 것
수화통역사	한국어 또는 그 이외의 언어를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에게 수화로 옮겨 주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
음성통역사	지적장애나 뇌병변장애등으로 언어에 장애가 있는 이의 말 등이나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상대방에게 언어로 옮겨 주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
자막	<p>영화나 연극 등 문화예술에 있어서 대사나 음향, 행사에 있어서 음성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내용을 청각장애인 등이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로서 오픈자막과 폐쇄자막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자막이 있으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요약자막은 권장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막(Open Caption :오픈자막) :장애인 등이 읽을 수 있도록 스크린이나 TV모니터 등에 나타나게 하는 자막 2. 폐쇄자막(Closed caption :폐쇄자막) : 대화자의 음성이나 오디오를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로 주로 TV에서만 사용되는 자막이며, 이 자막을 보기 위해서는 입력된 자막을 해독할 수 있는 반도체가 내장된 장치에서만 있어야만 함
보청기기	<p>청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이 소리를 증폭하거나 FM신호로 바꾸어 소리를 똑똑하게 듣게하기 위한 장치로 개인형과 집단형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형보청기 : 경우는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민원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보청기 2. 집단형보청기 : 행사장이나 문화예술의 공연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보청기로 종류가 다양하지만 현재 소리를 FM주파수로 바꾸어 청각장애인이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장치인 FM보청기를 권장하고 있음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는 화상을 통하여 수화 등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화기(화상전화기의 설치 위치는 청각장애인이 접근이 쉬운 휴게실이나 민원실 등이면 좋지만 시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용 어	설 명	
<p>통신중계 (통신중계서비스)</p>	<p>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p>	
<p>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p>	<p>통신중계용 전화기는 문자 전화기, 화상전화기, 인터넷을 통한 화상통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나 화상 등 다양한 도구가 있음</p>	
<p>이용체험프로그램 (법령의 사용설명 영상물 비치를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함)</p>	<p>청각장애인이 시설 이용이나 장비 이용, 운영하는 프로그램 과정 및 특성 등을 제작된 비디오를 시청하게 하거나 수화통역사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p>	
<p>자막TV</p>	<p>휴게실 등의 TV의 내용을 자막으로 알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신 기능이 있는 TV</p>	
<p>전광판</p>	<p>경기의 득점 상황이나 해설자의 말소리를 알 수 있도록 숫자나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p>	
<p>견광등 (일림표시)</p>	<p>경기의 시작이나 종료, 심판의 휘슬, 득점(농구 등에서 골이 바켓에 들어간 경우)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깜빡이는 빛 등을 발산하는 장치(수영장의 경우는 출발신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중에 여러 색깔의 견광장치를 하여야 함)</p>	
<p>화장실 내 알림표시</p>	<p>화장실 용무를 보는 공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문 등에 부착된 인식표시 장치</p>	
<p>화면해설</p>	<p>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영상물의 접근성보장수단으로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는 부분의 행동과 배경, 몸짓과 의상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상물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DVS(Descriptive Video Service)'라고도 함</p> <p>이러한 화면해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상으로 보여지는 액션, 배경, 몸짓, 자막과 그래픽 같은 내용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함</p>	
<p>대체자료</p>	<p>일반활자로 된 인쇄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확대 문자, 기계적으로 합성된 음성, 텍스트 등으로 된 자료</p>	



그림 137 통신중계서비스 개념